

정책보고서 2009-101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편방안 연구

최현수

김문길 박은영 박경희 윤필경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 출 문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부와 용역계약(2009.3.12)한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편방안 연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머리말

2009년 7월,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의 확대, 지원대상 계층구분의 단순화, 선정방식의 개편을 중심으로 보육료 지원제도는 그 동안의 발전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중요한 도약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지원대상 선정기준 확대와 선정방식 개편을 위해서 전체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위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액 산출과 이를 적용하기 위한 선정방식 사전 검토 및 확정을 통한 정책집행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및 선정기준 개편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 도출을 위한 정책 모의분석 수행과 보장단위, 자산조사 범위 및 기준을 중심으로 선정방식 개편 및 적용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편에 의한 정책집행 과정상의 실질적인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확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간소화 및 합리화에 의한 수요자 만족도 및 제도의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향후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선정방식의 다양화 등 새로운 선정기준 도출 및 선정방식의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기초보장연구실 최현수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김문길 선임 연구원, 박은영, 박경희, 윤필경 연구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지난 1년 동안 보육료 지원제도의 확대와 관련된 중요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와 더불어, 보육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권덕철 보육정책관, 보육료 지원제도 관련 정책수립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숙 보육사업기획과장, 박선옥 사무관, 신인식 사무관, 그리고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주신 보육사업기획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보육료 지원제도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귀중한 제안을 해주신 본 연구원의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선정기준 도출을 위한 분석자료를 제공해주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김인숙 과장, 박일수 부연구위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보고서를 검토하고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신현웅 부연구위원과 김태완 부연구위원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요 약.....	1
제1장 서 론.....	27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7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9
제2장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37
제1절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의 문제점.....	37
제2절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편방향 관련 쟁점 검토.....	50
제3장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추정 관련 영유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초분석.....	67
제1절 분석 DB: 건강보험공단 공적 행정자료.....	67
제2절 영유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보유실태 기초분석.....	77
제4장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추정 및 적용을 위한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	93
제1절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 및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추정을 위한 정책 모의분석.....	93
제2절 선정기준(안) 적용 시 기존 보육료 지원 수급가구의 자격변동 예측을 위한 모의분석.....	116
제3절 선정기준(안) 적용에 따른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및 예산규모 변화 관련 모의분석.....	119
제4절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결정 및 선정방식 개편 쟁점.....	123

제5장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편 및 시행방안.....	135
제1절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개편 및 시행방안.....	135
제2절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편 및 시행방안.....	142
제6장 보육료 지원체계 관련 정책과제: 보육료 지원체계 통합 및 맞벌이가구 등 보육료 지원 확대.....	163

요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 2009년 7월부터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확대 조정되고, 이에 따라 무상보육 대상(정부 보육료 단가 전액지원)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1층) 및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2층) 이하에서 전체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50% 이하인 가구로 확대됨
 - 또한, 기존의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중 전액지원 대상을 제외한 부분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설정 및 적용방법 역시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3층, 80% 지원), 50~70%(4층, 60% 지원), 70~100%(5층, 30% 지원)에 해당하는 가구에서 전체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50~60%(2층, 60% 지원), 60~70%(3층, 30% 지원)에 해당하는 가구로 변경됨
 - 요컨대, 2009년 7월 시행되는 보육료지원 개편방안은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의 확대, 지원대상의 계층구분의 단순화(5층→3층 체계)로 요약할 수 있음
- 이처럼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개편되고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전체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위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액 산출과 이를 적용하기 위한 선정방식(자산조사 범위 및 수행방법)의 사전 검토 및 잠정 확정을 통한 정책집행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가 필요함
 - 우선적으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인 소득인정액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가구규모별 선정기준액 산출이 필요함

-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 및 선정 시, 산출된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방안 검토 및 확정 필요
- 보육료 지원이 새롭게 확대되는 계층을 포함하여 소득인정액 하위 50%를 초과하는 부분지원 대상에 대한 선정방식 및 기준 검토 필요
 - 부분지원 대상 선정방식의 변경에 따라 전체 영유아 가구의 소득 인정액 하위 50%뿐만 아니라 60%, 70% 수준에 해당하는 선정 기준액 산출이 필요함
 - 또한, 향후 보육료 지원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소득인정액 하위 8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액 검토 필요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보육료 지원대상의 확대 및 선정기준 개편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 도출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신청 및 지원대상(전액, 부분) 여부의 판단 기준인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및 가구규모에 따른 선정기준액 사전 도출 및 적용 관련 정책 모의실험(policy simulation) 실시

□ 한편, 그 동안 기초생활보장 대상 선정 및 급여수준 결정 시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산출방식과 그에 따른 개별 소득 및 재산항목별 조사범위 및 기준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 시 준용함에 따라 국민의 불편과 자산 조사와 관련된 일선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함

- 소득인정액을 구성하는 다양한 소득 및 재산 항목과 기초생활보장 중심의 실사 원칙 등으로 보육료 지원 신청가구의 제출서류 과다 및 불만 민원 발생
- 보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직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간의 기초 생활보장 업무수행 경험 차이로 인한 자산조사 등 제도 운영 전반의 편차 발생
- 일시적인 신청 집중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산조사 방식 준용에 따른 복잡성으로 인한 업무 증가와 업무처리의 적시성 문제 발생

□ 이러한 상황에서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 개편과 동시에,

자산조사 범위 및 기준 등 대상 선정방식의 개편을 통한 국민의 편의성 제고 및 보육 담당 공무원의 업무효율성 및 일관성 제고가 필요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09년 7월부터 시행되는 보육료 지원대상의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 개편 및 소득인정액 산출과 함께, 보장단위, 자산조사 범위 및 기준을 중심으로 한 선정방식 개편 및 적용방안 제안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소득인정액 개념을 구성하는 다양한 소득 및 재산 항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고, 보장단위 및 자산조사 범위와 항목별 표준화, 자산조사 프로세스 등 선정방식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안함

□ 연구의 기대효과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편을 통한 정책집행 과정상의 실질적인 효율성 및 정확성 제고
- 보육료 지원의 확대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간소화 및 합리화를 통해 수요자의 체감만족도 및 제도 수용성 제고
- 향후 보육료 지원대상 추가 확대 및 선정방식 다양화를 위한 새로운 기준 도출 및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활용

2. 연구내용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및 선정기준 개편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 도출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영유아 가구 소득인정액 하위 50% 이하’의 개념 정립 및 부분지원을 위한 계층 구분
 - 이를 위해, 분석 DB 구축 및 정책 모의분석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쟁점에 대한 비교 검토 및 정책 결정이 선행되어야 함
 -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대표성 있는 선정기준 산출을 위해 건강보험, 보육료 수급통계 등을 기반으로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DB 구축방안(표본규모, 주요 소득 및 재산항목 관련 변수의 특성

등) 검토

- 분석 DB 구축에서 누락된 주요 소득 및 재산 항목에 대한 보정 여부 및 방식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도출을 위한 전체 영유아 가구 모집단 정의 및 범위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전환에 따른 개념 정립 및 도출 방안
 - 다양한 선정기준액 도출 근거 및 결과에 대한 비교 검토
 - 선정기준 도출 및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선정방식을 고려한 소득 인정액 구성 소득 및 재산 항목의 결정 및 모의분석(선정과정에서 보장단위 또는 자산조사 범위에 해당하는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항목의 구성 및 조사평가 기준)
 - 다양한 보장단위 및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에 따른 선정기준 비교 및 정책집행을 위한 적용 가능성 검토
-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의 선정기준으로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50%’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기준 도출 및 부분지원 대상의 기준으로써 하위 60%, 70%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산출
- 향후 단계적 보육료 지원 추가 확대를 위해 전체 영유아 가구의 80% 수준까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수준 도출
 - 보육료 지원체계 다양화를 통한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및 이와 관련된 잠정적 선정기준액 도출
- 자산조사 범위 및 기준 등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편방안 제시
- －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 및 선정절차 개편방향
 - － 자산조사 대상 가구원의 범위와 관련된 보장단위의 검토 및 결정
 -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준용한 자산조사 방식으로 인한 문제점 및 민원 해소 및 선정방식 간소화와 합리적 개편을 위해 소득인정액 개념에 포함되어야 할 소득 및 재산 항목의 검토 및 재구성
 -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자산조사 항목별 표준화, 자동화 방향에 적합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자산조사를 위한 소득 및 재산

항목별 평가범위 및 조사기준 마련

- 소득인정액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 결정방식(재산가액 산정기준, 기초 공제액, 환산율 등) 및 공제 항목 재검토, 개선방안 마련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편으로 인한 기존 수급가구 변동 규모 및 경향 예측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인정액 개념 및 선정방식 개편과 연계된 새로운 선정기준을 반영할 경우에 대한 정책 모의분석 실시
 - 보육료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수급가구 탈락 및 지원수준 저하 등 예상 민원발생 가능성 및 해소방안 등 사전 검토
 - 이를 통해 확대 개편된 보육료 지원정책의 연착륙 가능성 제고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편에 따른 수급 영유아 가구의 규모 및 재정변화 사전 예측

- 새로운 개념에 따라 도출된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편에 따른 전체 보육료 지원대상(전액지원 / 부분지원) 영유아 규모 추정
- 이에 따른 보육료 지원 관련 소요예산 변화 모의분석

□ 각 장별 연구내용의 구성

- 제2장에서는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및 선정방식(자산조사 방식)의 문제점을 검토
 - 이를 기초로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편의 기본방향 설정
- 제3장에서는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대상(전액 및 부분지원)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 도출 및 이와 관련된 모의분석을 위한 영유아 가구 모집단의 DB 구축과정 및 주요 변수 등 분석 DB 개요 소개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도출 및 선정방식 개편 관련 모의분석 관련 영유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보유실태에 관한 분석을 통해 기초통계 제시
- 제4장에서는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 도출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한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도출 및 보장된 선정기준(안) 비교 검토

- 정책 모의분석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보장단위(영유아 가구 전체 vs. 영유아 및 부모),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기초공제액 적용여부(기초공제 미적용 vs. 기초생활보장제도 수준 기초공제액 적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5% vs. 기초생활보장제도 1/3 수준에 해당하는 연 16.68%),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여부(미적용 vs. 현행 최저생계비 가구균등화 지수(PL) vs. OECD 상대빈곤 가구균등화 지수(RT)), 분석 DB에서 누락된 소득 & 재산 항목별 공적 행정 자료에 대한 보정여부 및 방법 등이 있음
- 제1절은 보장단위, 기초공제액 적용여부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에 따른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 모의분석 수행
- 제2절에서는 선정기준(안) 적용에 따른 기존 보육료 지원가구의 수급자격 변동에 관한 모의분석 수행
- 제3절에서는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안)(영유아 및 부모 기준, 기초공제액 적용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16.68%, PL/RT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률(2008년말 기준 보건복지가족부 통계) 적용에 따른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및 예산규모 변화를 추정
- 제4절에서는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편안이 지닌 쟁점 및 한계 논의
- 제5장에서는 앞선 제4장의 정책 모의분석을 통해 도출 및 결정된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액 및 자산조사 등 선정방식 개편 시행방안의 세부 내용을 제시
- 제6장에서는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 시 고려사항 및 향후 보육료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추가 확대 등 정책과제를 제시함

3.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요

□ 목적

-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나, 향후 이용하고자 하는 영유아가 있는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수준을 조사하여 보육료 지원대상 가구 및 지원수준을 결정함

□ 기본구조

-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영유아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항목별 자산 조사를 통해 산출된 소득인정액(선정방식)을 당해 연도에 적용되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액과 비교
- 지원유형(차등보육료, 두자녀, 만5세)과 지원계층(1~5층)을 구분하는 각각의 선정기준액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수준 결정

□ 보육료 지원대상 계층구분 및 차등보육료 지원수준

- 보육료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지원계층은 5개 층의 계단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원계층(구간)의 경계에 해당하는 선정기준액은 가구규모에 따라 각각 설정됨
- 1층 (전액지원-1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가구 영유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영유아 등, 법정 지원대상
- 2층 (전액지원-100%)
 -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차상위계층
- 3층 (부분지원-80%)
 -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상위계층 이상 연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통계청 가계조사 기준 발표자료)의 50% 이하
- 4층 (부분지원-60%)
 -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연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통계청 가계조사 기준 발표자료)의 50~70% 이하

- 5층 (부분지원-30%)
 -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연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통계청 가계조사 기준 발표자료)의 70~100% 이하
- 만 5세 무상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대상 최대 선정기준은 5층에 해당하는 선정기준과 동일하며 계층구분에 따라 지원수준이 상이하게 결정됨

□ 선정방식(자산조사 체계)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개념 및 자산조사 방식을 준용하고 있음
 - 보육료 지원제도는 보편성을 지향하면서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가운데 가장 선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이처럼 두 제도가 대상의 포괄성 측면에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지원제도가 선별적 공공부조의 자산조사 방식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은, 보육료 지원제도의 선정방식과 관련된 각종 민원과 문제점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4.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 보육료 지원계층별 선정기준

- 가구규모에 따른 지원계층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매년 조정되고 있으나,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전년도 9월1일 발표하는 당해 연도 최저생계비와 통계청이 전국가계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소득을 혼용하여 설정되고 있어 선정기준으로서 정합성과 일관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전액지원 대상인 1~2층은 최저생계비를, 부분지원 대상인 3~5층은 통계청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을 활용하여 선정기준액을 도출 및 적용함

- 특히, 선정기준액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통계청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인정액 산출방식이 아니므로,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방식과의 차이에 따라 해당가구의 실제 경제적 상황을 일관성 있게 반영함에 있어 한계가 있음

- 선정기준액(평균소득)과 선정방식에서의 소득인정액 산출방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예를 들어, 4인가구 대상 5층의 선정기준은 소득 398만원인 반면, 4인가구의 경제적인 상황을 근거로 보육료 지원대상 계층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 398만원을 초과하는지 적용하게 되는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함

- 그러므로,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중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하나의 선정기준 내에서 개념 및 도출과정이 이원화되어 있는 선정기준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일치시키는 것임

- 특히,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계획된 무상보육(전액 지원) 대상 선정기준인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50% 이하 가구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선정기준액 도출방식을 결정해야 함

- 또한, 무상보육뿐만 아니라 부분 지원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소득 인정액 하위 50~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역시 준보편적 복지 정책으로서 적합한 선정체계 구축을 위해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선 필요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조사는 이미 전산조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전산자료의 미비나 기준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전산조회자료가 불확실하여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일부 소득 및 재산항목, 생활실태,

동거가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 자료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이처럼, 영유아 가구의 70%에 대한 보육료 전액 또는 부분 지원을 통한 준보편적 제도로 확대를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복지정책 가운데 가장 선별적이고 엄격한 자산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방식을 준용하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더 이상 효율적인 정책집행 방식이 아니므로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함
 - 수요자인 보육료 지원 신청가구의 입장에서는 신청 시 제출 및 확인해야 할 서류가 많고 확인조사 등으로 인한 불편 초래
 - 일선 지자체의 보육관련 업무 담당 사회복지공무원에게는 집중 신청기간에 일시적인 민원 집중과 확인조사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자산조사 관련 업무부담 초래
- 이러한 문제는 자산조사 대상 소득 및 재산항목, 조사범위 및 기준 등 자산조사 방식과 관련된 원칙 또는 지침과 이를 적용하는 일선 지자체의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로 인한 선정방식 때문에 발생
- 특히, 감사원 감사 및 최근 국정감사 시 지적되었던 문제점과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역시 비현실적이고 적합하지 않은 선정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 관련 특례 조항
 - 일반재산 및 승용차 분류와 관련된 자동차 배기량 기준 (2000cc)
 - 전업주부에 대한 추정소득 부과문제
 - 사적이전소득의 포함 여부
- 준보편적인 보육료 지원제도로의 확대라는 정책목표를 우선적으로 견지하면서 선정방식이 지닌 문제와 관련된 주요 요인에 대한 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함
 - 기존 보육료 지원제도 가운데 추정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은 선정

과정에서 자산조사 대상 항목에서 제외해야 함

- 가장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이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재산의 소득환산 시 반영해야 함
- 보육료 지원제도가 선별적 공공부조 제도로서 엄격한 자산조사를 통한 수급대상 선정과 보충급여 방식의 급여수준을 결정해야만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정책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과 관련된 환산율은 현행 1/3만 반영하고 있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기초노령연금 수준(연간 5%)과 유사하게 보다 완화해야 함

5.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편방안 주요내용

□ 20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선정기준 개편

- 2009년 7월부터 전체 영유아가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까지 차등보육료 전액지원(무상보육)이 확대됨에 따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영유아가구의 공적 행정자료를 기초로 정책 모의실험을 수행하여 소득인정액 기준의 가구규모 및 분위별 선정기준액을 산출
 - 그 동안 통계청의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을 사용하여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계층을 구분하였으나, 2009년 7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분위별 선정기준액에 따라 보육료 지원계층이 구분됨
 - 영유아가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50%까지는 전액을 지원받고, 소득인정액 하위 50~70% 계층은 차등적으로 보육료를 지원
- 한편, 선정기준 개편과 함께 그 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준용함에 따라 발생하였던 자산조사 업무부담 및 각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 및 재산항목에 대한 자산조사 방식을

공적 행정자료 중심으로 간소화 및 합리화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편의 주요 내용은 제5장에서 요약 제시함

□ 가구규모 및 지원계층별 선정기준

- 전체 영유아가구의 소득 및 재산 관련 공적 행정자료를 기초로 모의 분석을 실시한 결과, 4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하위 50% 이하의 선정기준은 258만원, 소득인정액 하위 60%와 70%의 선정기준은 각각 339만원과 436만원으로 최종 결정함
- 보장단위는 영유아 및 그 부모와 영유아 기준 형제자매로, 이에 따라 가구원수가 결정됨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6인가구를 기준으로 1인 증가할 때마다 선정기준액을 30만원씩 상향 조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만원)	차등 보육료	소득하위 50%이하	224	258	289	316
		소득하위 60%이하	294	339	380	415
		소득하위 70%이하	378	436	488	534
		소득하위 70%초과	정부미지원시설이용 0~2세 아동 => 기본보육료 지원			
	만5세 (소득하위 70%이하)	378	436	488	534	
	두자녀 (소득하위 70%이하)	378	436	488	534	

□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선정기준 및 지원수준 변동

- 개편 전후 보육료 지원계층은 5층에서 3층으로 조정됨
- 지원수준(전액 또는 부분지원 비율)은 개편 전 지원계층에 따라 '100% - 100% - 80% - 60% - 30%'에서 개편 후 '100% - 60% - 30%'로 조정
- 정부 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영유아의 경우,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음
- 4인 가구 기준으로 전액지원(무상보육) 대상의 선정기준은 개편 전

차상위계층(약 159만원)에서 소득인정액 258만원으로 약 100만원 정도 상향 조정됨

- 선정방식 개편의 효과를 함께 고려하지 않을지라도, 이러한 선정 기준 확대는 기존 보육료 지원체계의 3층과 4층 사이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전액지원 대상의 대폭 확대를 의미함
- 4인가구를 기준으로 2009년 7월 개편 전후 지원계층별 선정기준액 및 지원수준을 비교하여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소득하위 50%		소득하위 60%		소득하위 70%		
지원규모 (90만명)		61만명 (만5세 전액지원 14만명 포함)		10만명	10만명	9만명		
개편 후 지원수준		100% 지원		60% 지원	30% 지원			
개편 전후 지원범위 변화		정부지원 1~2층 (100%) 3층 (80%)		4층 (60%)	5층 (30%)		부모 부담	
		정부지원 확대						
		기본보육료 (0~2세 정부 미지원시설 이용 영유아 지원)						
4인가구 선정기준 (만원) 변화		159	213	298	427			
		258		339	436			

- 부분지원 대상 선정기준 역시 크게 상향 조정됨
- 기존 보육료 지원체계의 4층에 해당하는 60% 지원계층의 경우, 213~298만원에서 258~339만원으로 선정기준이 약 40만원 정도 상향 조정되었음
- 정부의 차등보육료 지원 상한선으로 기존 보육료 지원체계 5층에 해당하는 30% 지원계층 선정기준은 298~427만원에서 339~436

만원으로 상승함

- 이러한 선정기준의 상향 조정에 따라, 정부지원은 추가적으로 확대 (하늘색 부분) 되었으며, 그만큼 영유아가구 부모의 부담은 감소함
-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가구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지원을 받게 되며, 실제 보육료 지원 영유아 규모는 보육시설 이용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편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일반 사항	
보장단위	(조사대상 가구의 범위) 아동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①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보수월액→국세청 종합소득→기타자료 순) • 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금액/12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② 승용차	= 자동차 가액×환산율(100% / 3) (2500cc이상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지 않은 자동차)
일반재산	③ 토지 = 공시지가×지역별 적용율×환산율(4.17% / 3) ④ 주택·건축물 = 공시가격(국토해양부 제공)+시가 보정율(0.9)×환산율(4.17% / 3) ⑤ 전월세보증금 = 보증금×환산율(4.17% / 3) ⑥ 2500cc미만 일반재산 = 자동차가액×환산율(4.17% / 3) ※ 차령6년초과차량·승합차·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분류하여 환산
⑦ 금융재산	= 금융재산 총액 × 환산율(6.26% / 3)
■ 공제	
⑧ 기초공제	대도시 5400만원 / 중소도시 3400만원 / 농어촌 2900만원
⑨ 부채	금융권 부채 전액
■ 소득인정액 산출식	
$= ① +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②$	
※ ③~⑦ 재산유형별 합산 후 ⑧과 ⑨를 순차적으로 공제한 후 각 재산유형별 환산율 적용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 ※ 공제는 일반재산→금융재산 순으로 이루어지며, 공제금액>재산가액인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주요 개편사항

항 목	현 행	변 경	사 유
조사대상 가구원 범위 (보장단위)	영유아 기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영유아 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 조부모 동거사실 확인불가에 따른 편법 성행 - 아동양육의 책임을 부모로 한정
소득 및 재산조사 원칙 및 조사방법	· 근로소득 : 소득증명서류 제출 · 사업소득 : 매출액 증명자료 제출	· 근로소득 : 건강보험보수월액 → 국민연금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 → 기타자료 순으로 적용 · 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사용	- 소득증명서류 제출 없이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조사수행 - 복수의 행정자료 존재 시 적용 우선순위 사전 설정으로 혼란 해소
사적이전 소득	적용	폐지(제외)	- 실질적인 확인 곤란으로 자산조사 항목에서 제외
추정소득	적용	폐지(제외)	- 전업주부 등 추정소득에 대한 각종 민원 발생 - 정확한 추정소득 계산 근거 미흡
자동차 재산유형 분류기준 및 소득환산 방식	- 2000cc미만 환산율 : 4.17%/3 - 2000cc이상 환산율 : 100%/3	- 2500cc미만 환산율 : 4.17%/3 - 2500cc이상 환산율 : 100%/3 - 3자녀 이상가구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분류	- 자동차의 일반재산 /승용차 분류기준인 배기량 2000cc를 경계로 적용되는 소득환산율 관련 각종 민원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보편적 보육료 지원제도 지향의 정책취지와 목표를 반영하여 기준 완화
부동산 재산가액 산정방식	주택·건축물 => 시가 파악 후 적용	주택·건축물 =>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적용	- 재산가액 평가기준 및 확인절차 간소화
금융재산 및 부채 조회 실시여부	금융재산 및 부채 조회 미실시 신고자료 반영	실시	- 정확한 금융재산 및 부채 조회결과 반영으로 대상 선정의 형평성 제고

6. 보육료 지원체계 관련 향후 정책과제

가. 보육료 지원체계 통합 조정 및 선정기준 재조정

- 현행 차등보육료 지원,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 등으로 구성된 복잡한 보육료 지원체계를 단일 보육료 지원체제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0~4세 영유아에 해당하는 차등보육료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 출생 순서에 상관없이 본 연구에서 도출한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계층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음
 -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70%가 지원대상 선정기준 상한이며, 전액 지원대상인 하위 50% 이하 가구의 영유아는 정부지원 기준단가 전액을, 하위 50~60%에 해당하는 가구의 영유아는 60%, 하위 60~70% 가구의 영유아는 30% 지원
 - 또한, 0~2세이면서 정부 미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 정부 지원시설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기본보육료 부분을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받고 있음
- 둘째 이상 영유아에 대해서는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체계에 의해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하나의 틀에서 통합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두 가지 제도로 운영함에 따라 정책 수요자인 영유아 가구가 이해하기 어렵고 운영 상 불편함 존재
 - 차등보육료에 의해 부분 지원을 받는 소득인정액 하위 50~70%인 영유아 가구의 출생 순서에 따라 두 번째 이상 아동이 지원대상임
 - 그러나, 두 번째 이상 영유아가 무조건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제한 조건으로 인해, 보육료 지원 신청과정에서 증빙서류 제출로 인한 불편함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존재
 - 특히,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제도는 차등보육료를 고려하여 지원

수준이 결정되므로 사실상 두 제도로부터 각각 지원받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적인 지원수준을 판단해야 하므로, 개별 제도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

- 소득인정액 하위 50~60% 이하로 차등보육료 60%를 지원 받는 가구의 영유아는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으로부터 40%를 추가 지원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액 지원을 받게 되며, 차등보육료에서 30%를 지원받는 하위 60~70%의 영유아는 50%를 추가 지원 받아 결과적으로 80%의 지원을 받는 것과 동일함

□ 한편, 만 5세 영유아의 경우에는 만 5세 무상보육료 지원제도에 의해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인 가구의 모든 영유아가 전액 지원대상임

- 만 5세인 경우 차등보육료 지원제도와 상관없이 하위 70%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정부로부터 전액 지원을 받거나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이미 각 제도가 소득인정액 분위에 따라 가구규모별로 동일한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만 명목과 유형을 구분함

- 차등보육료 지원과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제도의 경우 지원수준에 있어 분리 구성되어 있어, 두 자녀 보육료 지원제도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살펴볼 경우, 소득인정액 수준이 높은 하위 60~70% 계층에 대해서 오히려 지원수준이 더 높은 역진적 구조(하위 50~60% 가구 : 보육료의 40% 지원 / 하위 60~70% 가구 : 보육료의 50% 지원)로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수요자의 이해와 신청 등 편의성 제고, 제도 운영 및 예산구조 간소화 등을 위해 현행 차등보육료, 기본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만 5세 무상보육료 등 개별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제도를 하나의 통합 보육료 지원체계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통합 보육료 지원체계로의 개선방향

- 각 지원유형에 따른 지원계층별 최종적인 지원수준을 기준으로 단일 보육료 지원체계로 통합 필요

- 세 가지 전혀 다른 보육료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보육료 지원체계를 단일 체계로 통합하여 수요자인 영유아 부모의 이해를 제고하고 연령 및 출생순위에 따라 정부 보육료 지원수준과 부모의 부담비율을 각각 구성하여 체계화해야 함
- 하나의 보육료 지원체계로부터 외국의 이동수당 등에서 활용되는 연령 및 출생순위 또는 장애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보육시설의 유형(정부 지원시설, 정부 미지원시설)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 분위에 따라 몇 %의 보육료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 몇 %를 부모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지 간단명료하게 재구조화하여 운영해야 함
 - ‘차등보육료’란 용어 대신 ‘영유아 보육료 지원제도’로 통합 사용
 - 운영방식
 - 현행 차등보육료 지원을 위한 가구규모별 선정기준액과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지원계층을 우선 구분
 - 자녀의 연령 또는 출생 순위, 장애여부 등에 따라 전액 지원 및 이용시설 유형에 따른 정부 지원비율 등 지원수준 최종 결정
 - 이를 통해, 보육료 지원체계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고, 정부의 보육료 지원정책 확대 기초에 대한 체감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러한 과정에서 두 자녀 보육료 지원제도의 경우,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폐지하고, 지원수준도 만 5세 무상보육료 지원제도와 같이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인 영유아 가구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는 방향을 확대해야 함
 - 이를 통해,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모든 만 5세 영유아’와 ‘연령에 상관없이 출생순위가 두 번째 이상인 모든 영유아’는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일 경우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게 되는 지원체계로 구조화가 가능함
 - 한편, 출생순위가 첫 번째인 0~4세의 영유아만이 현행과 같이 소득

인정액 하위 50%, 50~60%, 60~70%의 구조로 지원계층에 따라 보육료를 일정한 비율로 지원받는 구조가 됨

- 향후, 보육료 지원대상의 단계적 확대 추진 시, 우선적으로 0~4세 영유아의 전액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소득인정액 하위 70%까지 확대하여 연령별, 출생순위별 무상보육료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이를 다시 하위 80% 또는 80% 이상의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 이후에는 이미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영유아는 기존과 같이 매년 2월경 다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지 않도록 신청 및 선정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해야 함

- 기 신청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새로운 선정기준과 업데이트 된 소득 및 재산 변동 상황을 사전에 적용하여 보육료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까지 자동 판정하여 영유아 부모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함

나. 2010년 이후 선정기준 조정 및 보정 관련 필요성

□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편 이후 보완해야 할 사항

- 2009년 7월 개편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방식을 준용했던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의 소득인정액 개념 및 선정방식을 공적 행정자료 중심으로 전환
- 선정기준 도출 과정에서 이와 같은 소득인정액 개념 및 선정방식의 개편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DB로부터 공적 행정자료를 중심으로 전체 영유아 가구 DB를 구축하였음
- 그러나, 사전에 DB에 구축 가능한 소득 및 재산항목 중심으로 구성되어, 실제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 및 소득인정액 산정 시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소득 및 재산항목 중 DB에서 고려될 수 없음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편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에 따른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출 시 포함 예정인 소득 및 재산항목 중,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외한 공적 이전소득(산재보험급여, 보훈연금 등)과 신청 시 동의서 제출이 필요한 금융재산, 임차보증금, 회원권 등 기타 재산, 자동차가액, 부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향후 선정기준 조정을 위한 모의분석 시 누락된 소득 및 재산항목(각종 공적이전소득, 금융재산, 부채, 전월세보증금 등)에 대한 보정여부 및 방법이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며,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선정기준을 조정해야 함

다. 보육료 전액지원(무상보육료) 대상 단계적 확대

-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및 선정방식 개편에 따라, 보육료 지원체계는 보건복지부 내에서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보편적 제도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위상을 제고함
 - 그러나, 현행 전액 지원대상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하위 50%는 2010년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80% 수준까지 확대되어야 함
 - 이를 통해, 소득인정액 상위 20%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제외한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해당하는 모든 영유아는 정부 지원시설 또는 정부 미지원시설 중 어떠한 유형의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더라도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보육료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 추진(안)
 - (2010년) 보육료 지원체계 통합 검토 및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 하위 70%까지 확대(영유아 두 명 이상 보육시설 이용 조건을 폐지하고, 출생순위 두 번째 이상 영유아가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 지원)

- (2011년) 보육료 지원체계 통합 실시, 0~4세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 하위 60%로 확대 및 부분 지원대상(하위 60~70%)에 대한 보육료 지원비율 60%로 확대
- (2012년) 0~4세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 하위 70% 확대
 - 연령 및 출생순위에 따른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수준 차이 없이 모든 0~5세 영유아 대상 단일한 체계로 전환 완료
- (2013년) 0~5세 전액 지원대상 80% 확대
 - 출생순위 두 번째 이상인 경우 소득인정액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에 대하여 무상보육 실시

□ 2010년 이후 보육료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에 따른 보육료 지원 영유아 및 예산규모 변화에 대한 모의분석 결과

구분		보육료 전액지원 영유아	보육료 전액 및 부분지원 영유아	연간 소요예산 국고기준(48%) (6개월)
2009년 7월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편(안)		52만 4천명	83만 5천명	1조 2,222억원 (6,111억원)
자동차 배기량 기준 완화	2009 지원단가 기준	59만 3천명	92만 2천명	1조 3,275억원 (6,638억원)
	2010 지원단가 기준	59만 3천명	92만 2천명	1조 3,730억원 (6,865억원)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0~60% 60~70% 70~80% & 2010 지원단가 기준	70만 6천명	103만명	1조 5,352억원 (7,676억원)
	0~80% 전액지원 & 2010 지원단가 기준	89만명	103만명	1조 6,903억원 (8,456억원)

라.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체계 확대

□ 2009년 개편 이후 지속적으로 검토 및 추진되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보육서비스 및 보육료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가 큰 맞벌이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임

－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방안으로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부부의 근로소득 중 다양한 방식으로 일정비율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했을 때 해당 가구의 소득 분위가 하향 이동하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게 됨
- 이를 통해, 가구규모에 따른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실질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와 보육료 지원이 더욱 필요한 맞벌이가구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의 EITC와 같이 근로소득공제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맞벌이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선정기준 등 보육료 지원체계를 별도로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 부모의 근로활동 형태(홀벌이/맞벌이)에 따라 별도 도출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 공제대상의 근로소득의 범위

－ 맞벌이가구 해당여부 및 근로소득공제 적용대상 근로소득의 범위를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맞벌이가구 여부 및 근로소득공제 대상으로 설정함

- 그러나, 사업소득 관련 소득과야 정도 및 공적 행정자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소득을 배제하고 (임금)근로소득만을 근로소득공제의 대상으로 적용할 수도 있음

- 근로소득공제 적용을 통한 맞벌이가구 확대 지원방안
 - (1안)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맞벌이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출 시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 중에 소득이 낮은 사람(2차 소득자)의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안
 - 2차 소득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에서 30~70%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모의분석함
 - (2안) 맞벌이 부부의 합산 근로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안
 - 부부의 근로소득 합산 총액에 따라 공제수준이 결정됨
 - 부부합산 근로 및 사업소득의 12.5%~25%까지 공제하는 방안에 대한 모의분석을 실시함
- 맞벌이가구 대상 근로소득공제 도입에 의한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보육료 지원 영유아 및 예산규모 변화 모의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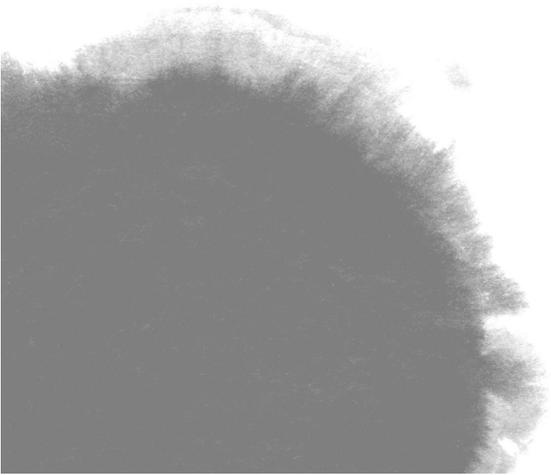
구분		보육료 전액지원 영유아	보육료 전액 및 부분지원 영유아	연간 소요예산 국고기준(48%)
2009년 7월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편(안)		52만 4천명	83만 5천명	1조 2,222억원
자동차 배가량 기준 완화 (10 자원단가 기준)		59만 3천명	92만 2천명	1조 3,730억원
(1안) 2차 소득자의 근로소득 일정비율 공제방식	30% 공제	59만 7천명	93만 1천명	1조 3,825억원 (+95억원)
	40% 공제	59만 9천명	93만 5천명	1조 3,864억원 (+134억원)
	50% 공제	60만 1천명	93만 9천명	1조 3,907억원 (+177억원)
	60% 공제	60만 3천명	94만 3천명	1조 3,956억원 (+226억원)
	70% 공제	60만 6천명	94만 8천명	1조 4,011억원 (+281억원)
(2안) 부부합산 근로소득 일정비율 공제방식	12.5% 공제	59만 9천명	93만 4천명	1조 3,861억원 (+131억원)
	25% 공제	60만 8천명	94만 8천명	1조 4,031억원 (+301억원)

- 부부합산 근로소득공제 방식이 2차 소득자에 대한 공제방식보다 맞벌이 가구 지원 확대에 있어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 2차 소득자(부부 중 낮은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더라도 영유아의 부모 간의 소득구성 상태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근로소득공제의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임
 - 다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과약, 일시적인 근로활동에 의한 맞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편법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도입 초기 2차 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방식을 시행한 후 부부합산 근로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 또한, 공적 행정자료에 의한 선정과정에서 사업소득 자료의 신뢰성 및 수용성, 이로 인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시행 초기에 근로소득공제의 범위를 근로 및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제한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 및 근로소득공제 대상 소득을 향후 개통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상의 공적 행정자료를 기준으로 영유아의 부모 모두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와 2차 소득자(낮은 소득)의 근로소득으로 제한할 수 있음

01

K
I
H
A
S
A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2009년 7월부터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확대 조정되고, 이에 따라 무상보육 대상(정부 보육료 단가 전액지원)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1층) 및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2층) 이하에서 전체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50% 이하인 가구로 확대됨
 - 또한, 기존의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중 전액지원 대상을 제외한 부분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설정 및 적용방법 역시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3층, 80% 지원), 50~70%(4층, 60% 지원), 70~100%(5층, 30% 지원)에 해당하는 가구에서 전체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50~60%(2층, 60% 지원), 60~70%(3층, 30% 지원)에 해당하는 가구로 변경됨
 - 요컨대, 2009년 7월 시행되는 보육료지원 개편방안은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의 확대, 지원대상의 계층구분의 단순화(5층→3층 체계)로 요약할 수 있음
- 이처럼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개편되고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전체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위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액 산출과 이를 적용하기 위한 선정방식(자산조사 범위 및 수행방법)의 사전 검토 및 잠정 확정을 통한 정책집행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가 필요함
 - 우선적으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인 소득인정액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가구규모별 선정기준액 산출이 필요함

-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 및 선정 시, 산출된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방안 검토 및 확정 필요
- 보육료 지원이 새롭게 확대되는 계층을 포함하여 소득인정액 하위 50%를 초과하는 부분지원 대상에 대한 선정방식 및 기준 검토 필요
 - 부분지원 대상 선정방식의 변경에 따라 전체 영유아 가구의 소득 인정액 하위 50%뿐만 아니라 60%, 70% 수준에 해당하는 선정 기준액 산출이 필요함
 - 또한, 향후 보육료 지원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소득인정액 하위 8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액 검토 필요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보육료 지원대상의 확대 및 선정기준 개편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 도출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신청 및 지원대상(전액, 부분) 여부의 판단 기준인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및 가구규모에 따른 선정기준액 사전 도출 및 적용 관련 정책 모의실험(policy simulation) 실시

□ 한편, 그 동안 기초생활보장 대상 선정 및 급여수준 결정 시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산출방식과 그에 따른 개별 소득 및 재산항목별 조사범위 및 기준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 시 준용함에 따라 국민의 불편과 자산 조사와 관련된 일선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함

- 소득인정액을 구성하는 다양한 소득 및 재산 항목과 기초생활보장 중심의 실사 원칙 등으로 보육료 지원 신청가구의 제출서류 과다 및 불만 민원 발생
- 보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직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간의 기초 생활보장 업무수행 경험 차이로 인한 자산조사 등 제도 운영 전반의 편차 발생
- 일시적인 신청 집중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산조사 방식 준용에 따른 복잡성으로 인한 업무 부담의 증가와 업무처리의 적시성 문제 발생

- 이러한 상황에서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 개편과 동시에, 자산조사 범위 및 기준 등 대상 선정방식의 개편을 통한 국민의 편의성 제고 및 보육 담당 공무원의 업무효율성 및 일관성 제고가 필요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09년 7월부터 시행되는 보육료 지원대상의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 개편 및 소득인정액 산출과 함께, 보장단위, 자산조사 범위 및 기준을 중심으로 한 선정방식 개편 및 적용방안 제안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소득인정액 개념을 구성하는 다양한 소득 및 재산 항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고, 보장단위 및 자산조사 범위와 항목별 표준화, 자산조사 프로세스 등 선정방식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안함
- 연구의 기대효과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편을 통한 정책집행 과정상의 실질적인 효율성 및 정확성 제고
 - 보육료 지원의 확대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간소화 및 합리화를 통해 수요자의 체감만족도 및 제도 수용성 제고
 - 향후 보육료 지원대상 추가 확대 및 선정방식 다양화를 위한 새로운 기준 도출 및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활용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및 선정기준 개편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 도출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영유아 가구 소득인정액 하위 50% 이하’의 개념 정립 및 부분지원을 위한 계층 구분
 - 이를 위해, 분석 DB 구축 및 정책 모의분석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쟁점에 대한 비교 검토 및 정책 결정이 선행되어야 함

-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대표성 있는 선정기준 산출을 위해 건강보험, 보육료 수급통계 등을 기반으로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DB 구축방안(표본규모, 주요 소득 및 재산항목 관련 변수의 특성 등) 검토
 - 분석 DB 구축에서 누락된 주요 소득 및 재산 항목에 대한 보정 여부 및 방식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도출을 위한 전체 영유아 가구 모집단 정의 및 범위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전환에 따른 개념 정립 및 도출 방안
 - 다양한 선정기준액 도출 근거 및 결과에 대한 비교 검토
 - 선정기준 도출 및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선정방식을 고려한 소득 인정액 구성 소득 및 재산 항목의 결정 및 모의분석(선정과정에서 보장단위 또는 자산조사 범위에 해당하는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항목의 구성 및 조사평가 기준)
 - 다양한 보장단위 및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에 따른 선정기준 비교 및 정책집행을 위한 적용 가능성 검토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의 선정기준으로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50%’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기준 도출 및 부분지원 대상의 기준으로써 하위 60%, 70%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산출
- 향후 단계적 보육료 지원 추가 확대를 위해 전체 영유아 가구의 80% 수준까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수준 도출
 - 보육료 지원체계 다양화를 통한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및 이와 관련된 잠정적 선정기준액 도출
- 자산조사 범위 및 기준 등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편방안 제시
-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 및 선정절차 개편방향
 - 자산조사 대상 가구원의 범위와 관련된 보장단위의 검토 및 결정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준용한 자산조사 방식으로 인한 문제점 및 민원

- 해소 및 선정방식 간소화와 합리적 개편을 위해 소득인정액 개념에 포함되어야 할 소득 및 재산 항목의 검토 및 재구성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자산조사 항목별 표준화, 자동화 방향에 적합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자산조사를 위한 소득 및 재산 항목별 평가범위 및 조사기준 마련
 - 소득인정액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 결정방식(재산가액 산정기준, 기초 공제액, 환산율 등) 및 공제 항목 재검토, 개선방안 마련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편으로 인한 기존 수급가구 변동 규모 및 경향 예측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인정액 개념 및 선정방식 개편과 연계된 새로운 선정기준을 반영할 경우에 대한 정책 모의분석 실시
 - 보육료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수급가구 탈락 및 지원수준 저하 등 예상 민원발생 가능성 및 해소방안 등 사전 검토
 - 이를 통해 확대 개편된 보육료 지원정책의 연착륙 가능성 제고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편에 따른 수급 영유아 가구의 규모 및 재정변화 사전 예측
- 새로운 개념에 따라 도출된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편에 따른 전체 보육료 지원대상(전액지원 / 부분지원) 영유아 규모 추정
 - 이에 따른 보육료 지원 관련 소요예산 변화 모의분석
- 각 장별 연구내용의 구성
- 제2장에서는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및 선정방식(자산조사 방식)의 문제점을 검토
 - 이를 기초로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편의 기본방향 설정
 - 제3장에서는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대상(전액 및 부분지원)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 도출 및 이와 관련된 모의분석을 위한 영유아 가구 모집단의 DB 구축과정 및 주요 변수 등 분석 DB 개요 소개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도출 및 선정방식 개편 모의분석 관련 영유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보유실태에 관한 분석을 통해 기초 통계 제시
- 제4장에서는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 도출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한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을 실시 하고, 이에 따라 도출 및 보정된 선정기준(안) 비교 검토
 - 정책 모의분석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보장단위(영유아 가구 전체 vs. 영유아 및 부모),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기초공제액 적용여부(기초공제 미적용 vs. 기초생활보장제도 수준 기초공제액 적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5% vs. 기초생활보장제도 1/3 수준에 해당하는 연 16.68%),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여부(미적용 vs. 현행 최저생계비 가구균등화 지수(PL) vs. OECD 상대빈곤 가구균등화 지수(RT)), 분석 DB에서 누락된 소득 & 재산 항목별 공적 행정 자료에 대한 보정여부 및 방법 등이 있음
 - 제1절은 보장단위, 기초공제액 적용여부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에 따른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 모의분석 수행
 - 제2절에서는 선정기준(안) 적용에 따른 기존 보육료 지원가구의 수급자격 변동에 관한 모의분석 수행
 - 제3절에서는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안)(영유아 및 부모 기준, 기초공제액 적용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16.68%, PL/RT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률(2008년말 기준 보건복지가족부 통계) 적용에 따른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및 예산규모 변화를 추정
 - 제4절에서는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편안이 지닌 쟁점 및 한계 논의
- 제5장에서는 앞선 제4장의 정책 모의분석을 통해 도출 및 결정된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액 및 자산조사 등 선정방식 개편 시행방안의 세부 내용을 제시

- 제6장에서는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 시 고려사항 및 향후 보육료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추가 확대 등 정책과제를 제시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선행연구 정리 및 정책현황 분석
 - 보육료 지원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관련 운영사례 조사

□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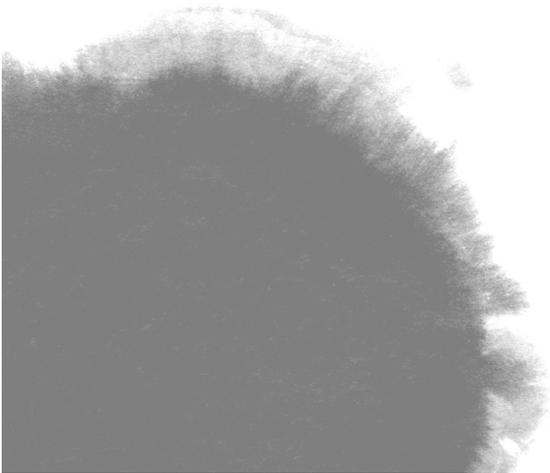
-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중심으로 보육료 선정과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자산조사 범위 및 기준 등 선정방식 관련 개선방안을 도출함

□ 심층 통계분석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관련 정책 모의분석 틀(policy simulation frame) 구성
 - 소득인정액 개념, 개별 소득 및 재산 항목 재구성, 자산조사 범위 및 기준, 보장단위 등 선정방식 관련 개편안 검토 및 확정
- 정책 모의분석을 위한 DB 구성안(layout) 확정 및 구축
 - 선정기준 및 자산조사 방식, 정보 인프라 개편 후 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정책 시뮬레이션의 정확성 제고
- 전체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구축된 공적 행정자료 기준 소득 및 재산 DB를 바탕으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도출 및 선정방식 개편을 위한 정책 모의분석 실시
 - 선정기준 도출을 위한 각종 기초통계 생산 및 비교 검토
 - 정책 모의분석 결과에 기초한 소득 및 재산 보유분포, 소득인정액 수준 등 정책 결정을 위한 다양한 선정기준액 제시 및 비교 검토

- 기존 보육료 수급가구에 대한 복지 DB를 기초로 선정기준 및 선정 방식 개편에 따른 모의적용 분석 실시
 - 선정기준 개편 및 적용에 따른 기존 보육료 지원가구의 계층별 탈락 및 지원수준 감소가구 예상 규모 등 수급자격 변동에 대한 모의분석 및 사전 검토
- 보육료 지원 추가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 도출 및 이에 따른 잠재적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규모 변동과 소요예산 변화 추정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2장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여기서는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선정기준 및 자산조사 등 선정 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를 기초로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편의 기본방향을 도출함

제1 절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의 문제점

1.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요

- 목적
 -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나, 향후 이용하고자 하는 영유아가 있는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수준을 조사하여 보육료 지원대상 가구 및 지원수준을 결정함
- 기본구조
 -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영유아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항목별 자산 조사를 통해 산출된 소득인정액(선정방식)을 당해 연도에 적용되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액과 비교
 - 지원유형(차등보육료, 두자녀, 만 5세)과 지원계층(1~5층)을 구분하는 각각의 선정기준액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수준 결정
- 보육료 지원대상 계층구분 및 차등보육료 지원수준

- 보육료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지원계층은 5개 층의 계단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원계층(구간)의 경계에 해당하는 선정기준액은 가구규모에 따라 각각 설정됨
- 1층 (전액지원-1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가구 영유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영유아 등, 법정 지원대상
- 2층 (전액지원-100%)
 -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차상위계층
- 3층 (부분지원-80%)
 -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상위계층 이상 연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통계청 가계조사 기준 발표자료)의 50% 이하
- 4층 (부분지원-60%)
 -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연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통계청 가계조사 기준 발표자료)의 50~70% 이하
- 5층 (부분지원-30%)
 -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연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통계청 가계조사 기준 발표자료)의 70~100% 이하
- 만 5세 무상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대상 최대 선정기준은 5층에 해당하는 선정기준과 동일하며 계층구분에 따라 지원수준이 상이하게 결정됨

□ 보육료 지원계층별 선정기준

- 가구규모에 따른 계층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액은 매년 조정
 -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전년도 9월 1일 발표하는 당해 연도 최저생계비와 통계청이 전국가계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수준을 혼용하여 설정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1층과 2층은 최저생계비를, 3~5층은 통계청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을 활용하여 선정기준액 도출 및 적용

지원 대상	선정기준 구분	지원 비율	2008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단위: 만원/월)			
			3인이하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전액 (100%)	-	-	-	-
2층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 이하		123	151	178	205
3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부분 (80%)	178	199	210	230
4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	부분 (60%)	250	278	294	322
5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100% 이하	부분 (30%)	357	398	420	460

지원 대상	선정기준 구분	지원 비율	2007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단위: 만원/월)			
			3인이하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전액 (100%)	-	-	-	-
2층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 이하		116	144	168	193
3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부분 (80%)	165	184	197	217
4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	부분 (60%)	231	258	269	288
5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100% 이하	부분 (30%)	334	369	384	411

주: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 선정기준 30만원 상향 조정

□ 선정방식(자산조사 체계)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개념 및 자산조사 방식을 준용하고 있음
 - 보육료 지원제도는 보편성을 지향하면서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가운데 가장 선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이처럼 두 제도가 대상의 포괄성 측면에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지원제도가 선별적 공공부조의 자산조사 방식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은, 보육료 지원제도의 선정방식과 관련된 각종 민원과 문제점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1/3)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주거비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종류별 가액(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 기초공제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 다만,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 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한 방식에 의해 산출된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1/3을 적용하는데,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의 1/3만을 적용하는 방식에 해당함

–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주거비(월세)에 대한 공제를 차감하여 산출
- 실제소득은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파악하며, 최근 1년 동안의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 실직자 등 연간소득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산출
- 공제액(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주거비 공제) 산정방식은 월평균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 소득평가액을 구성하는 항목은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 및 이자소득), 기타소득(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및 추정소득임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법

- 현재시점의 시가(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 시 포함되는 일반재산의 항목은 지방세법에 의한 건축물(제180조제2호) 및 토지(제234조의8),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항공기(제180조제4호 및 제5호),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 동산,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 금융재산은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임
- 자동차의 경우,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차량을 제외

－ 기초공제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 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한 수준의 지역별 기초공제액(2008년 기준 대도시 3,8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2009년 기준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적용
- 기초공제액 공제는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

2.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

□ 소득평가액 산출

보육료 지원	<p>○ 소득평가액=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사적/공적이전소득), 추정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주거비에 대한 특별공제</p> <p>※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이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한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재활보조금 -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 입양촉진및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양육보조금 <p>※ 주거비에 대한 특별공제 : 임대보증금이 3,800만원 이하, 월 3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금액 공제</p> <p>※ 보육료 지원사업에서는 자활소득공제 미적용</p>
--------	--

기초 생활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사적/공적이전소득), 추정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중 보육료 지원제도 이외 기초생활보장에서 추가되는 항목 -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분 연금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포함(보육료 지원에서는 08년부터 삭제) - 회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한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산소호흡기 대여료 및 간병비 - 장애인올림픽에서 입상한 자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부터 받는 연금 ※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자활소득공제(자활소득 공제 금액의 지급은 자활장려금 명목으로 별도 지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공제대상소득</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자활근로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body> </table>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30%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30%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30%	자활근로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30%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30%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30%									
자활근로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30%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은 유사
- 기타소득(사적/공적이전소득)
 - 보육료 지원과 달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에 부양비 포함하며, 이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부양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생활비(부양비)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함
-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 부분과 관련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자활소득공제가, 보육료 지원의 경우 주거비(월세) 공제가 적용됨
- 소득과약 곤란자에 대한 조사 및 추정소득 부과

보육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당사자가 소득확인을 거부·기피하거나 소득확인이 곤란한 경우 포함)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 ○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으로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도 추정소득 부과 가능 ○ 전업주부의 경우 추정소득 부과 제외대상이 아닌 경우 추정소득을 부과 <추정소득 부과제외> ○ 가구원에 포함되는 아동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미이용 자녀 또는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간병·보호하기 위해 근로가 어려운 재(가)구별 1인) ○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간 ○ 등록장애인 ○ 임신부 ○ 입영예정 ○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

기초 생활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당사자가 소득 확인을 거부·기피하거나 소득확인이 곤란한 경우 포함)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 ○ 생업용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된 자 ○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으로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도 추정소득 부과 가능 ○ 취업알선의 조건을 부여받아 구직등록을 한 취업대상자의 경우 구직활동 사실만 증명하면 조건이행으로 판정되어 상당수가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소득 파악을 철저히 하고 필요시 추정소득 적극 부과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 주 3일 이상 근로활동 종사로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소득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주거 및 생활실태를 감안하여 추정소득 부과하되, 조건불이행의 특수한 사정을 소명한 경우 사실확인서 징구후 추정소득 부과를 면제할 수 있음 <부과제외> ○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근로활동이 곤란하거나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	---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에 있어 최근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은 추정소득 부과이며, 특히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추정 소득 부과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방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
 - [재산의 종류별 가액(일반재산(건축물, 토지, 선박, 일반재산 분류 자동차 등), 금융재산, 승용차) - 기초공제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가액 산정기준은 조사일 현재 시점의 ‘시가(실거래가)’이며, 이러한 기준은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산조사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임
- 지역별 기초공제액 적용수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준용하고 있음

2008년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3,800	3,100	2,900
2009년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5,400	3,400	2,900

- 부채의 경우, 의료비부채, 학비부채, 주거부채 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경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
 - 일반재산,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이후에도 나머지 부채가 있을지라도 승용차 가액에서는 더 이상 차감하지 않음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환산율 차이에 따른 환산액 산출 수준임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기준을 준용하지만, 각 유형별 재산의 소득환산율의 1/3만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수준의 1/3에 해당하는 금액만 적용하고 있음

기초생활보장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소득환산율	월 4.17%	월 6.26%	월 100%

보육료 지원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소득환산율	월 4.17% / 3	월 6.26% / 3	월 100% / 3

- 가구별, 지역별 부채 인정 상한액은 보육료 지원제도와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상이함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사용처가 명백히 입증된 부채는 전액 공제하되 사채의 경우 공증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일반재산 기준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고재산액까지 공제
 - 보육료 지원 부채 인정 상한액

지역 가구	2008년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3인 이하	320,000,000	330,000,000	370,000,000
4인	350,000,000	360,000,000	410,000,000
5인	380,000,000	390,000,000	440,000,000
6인	410,000,000	420,000,000	460,000,000

• 기초생활보장 일반재산 기준 최고재산액

지역 가구	2008년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1인	40,104,245	42,104,245	49,104,245
2인	47,808,609	49,808,609	56,808,609
3인	53,618,777	55,618,777	62,618,777
4인	59,356,067	61,356,067	68,356,067
5인	64,680,528	66,680,528	73,680,528
6인	70,059,616	72,059,616	79,059,616

지역 가구	2009년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1인	40,770,863	45,770,863	65,770,863
2인	49,042,278	54,042,278	74,042,278
3인	54,927,722	59,927,722	79,927,722
4인	60,813,165	65,813,165	85,813,165
5인	66,698,585	71,698,585	91,698,585
6인	72,584,029	77,584,029	97,584,029

□ 일반재산 항목의 조사범위 및 기준

–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재산에는 다음의 항목이 공통적으로 포함됨

- 지방세법에 의한 건축물 및 토지, 선박, 항공기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전세금 포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 중 일부
- 기타 가축, 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최근 다음의 항목을 추가로 포함하여 조사

- 지방세법에 의한 골프장,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회원권
-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 금융재산 항목의 조사범위 및 기준

– 보육료 지원제도와 달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금융조회를 통해 금융재산을 가능한

정확한 수준으로 파악하여 선정 및 급여에 반영

□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자동차 기준

- 보육료 지원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동차가액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을 적용을 위하여 재산의 종류(일반재산과 승용차)를 구분할 경우, 배기량 기준에 있어 가장 큰 차이가 있음
- 보육료 지원(2,000cc) vs. 기초생활보장제도(1,600cc)

보육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cc 미만의 모든 차량 (외제 승용차 제외) - 2000cc 이상의 개인택시 - 6~10인승 차량으로서 생업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 승합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업용 차량 - 2000cc미만 차량 ○ 이륜자동차중 50cc이상 260cc미만 차량 ○ 화물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 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포함), 콘크리트믹서트럭 - 벤형 화물자동차로서 생업용 또는 2000cc미만의 차량 ○ 특수자동차(건설·구난용 등) ○ 차령 7년(84개월) 초과 모든 차량
--------	---

기초 생활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의 차량 1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기량 16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특수자동차(건설·구난용 등) ○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1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 이륜자동차중 50cc이상 260cc미만 차량 ○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차량으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차량으로써,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	--

□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방식 차이점 (요약)

구 분	기초생활보장	보육료 지원
소득평가액 산출	자활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	주거비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환산특례 미적용	환산특례 1/3 적용
승용차 기준	배기량 1,600cc 기준	배기량 2,000cc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미적용

3.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 보육료 지원계층별 선정기준

- 가구규모에 따른 지원계층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매년 조정되고 있으나,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전년도 9월 1일 발표하는 당해 연도 최저생계비와 통계청이 전국가계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소득을 혼용하여 설정되고 있어 선정기준으로서 적합성과 일관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전액지원 대상인 1~2층은 최저생계비를, 부분지원 대상인 3~5층은 통계청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을 활용하여 선정기준액 도출 및 적용함
- 특히, 선정기준액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통계청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인정액 산출방식이 아니므로,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방식과의 차이에 따라 해당가구의 실제 경제적 상황을 일관성 있게 반영함에 있어 한계가 있음
 - 선정기준액(평균소득)과 선정방식에서의 소득인정액 산출방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예를 들어, 4인가구 대상 5층의 선정기준은 소득 398만원인 반면, 4인가구의 경제적인 상황을 근거로 보육료 지원대상 계층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 398만원을 초과하는지 적용하게 되는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함
- 그러므로,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중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하나의 선정기준 내에서 개념 및 도출과정이 이원화되어 있는 선정기준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일치시키는 것임
- 특히,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계획된 무상보육(전액 지원) 대상 선정기준인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50% 이하 가구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선정기준액 도출방식을 결정해야 함

- 또한, 무상보육뿐만 아니라 부분 지원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소득 인정액 하위 50~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역시 준보편적 복지 정책으로서 적합한 선정체계 구축을 위해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선 필요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조사는 이미 전산조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전산자료의 미비나 기준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전산조회자료가 불확실하여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일부 소득 및 재산항목, 생활실태, 동거가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 자료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이처럼, 영유아 가구의 70%에 대한 보육료 전액 또는 부분 지원을 통한 준보편적 제도로 확대를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복지정책 가운데 가장 선별적이고 엄격한 자산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방식을 준용하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더 이상 효율적인 정책집행 방식이 아니므로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함
 - 수요자인 보육료 지원 신청가구의 입장에서는 신청 시 제출 및 확인해야 할 서류가 많고 확인조사 등으로 인한 불편 초래
 - 일선 지자체의 보육관련 업무 담당 사회복지공무원에게는 집중 신청기간에 일시적인 민원 집중과 확인조사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자산조사 관련 업무부담 초래
- 이러한 문제는 자산조사 대상 소득 및 재산항목, 조사범위 및 기준 등 자산조사 방식과 관련된 원칙 또는 지침과 이를 적용하는 일선 지자체의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로 인한 선정방식 때문에 발생

- 특히, 감사원 감사 및 최근 국정감사 시 지적되었던 문제점과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역시 비현실적이고 적합하지 않은 선정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 관련 특례 조항
 - 일반재산 및 승용차 분류와 관련된 자동차 배기량 기준 (2000cc)
 - 전업주부에 대한 추정소득 부과문제
 - 사적이전소득의 포함 여부
- 준보편적인 보육료 지원제도로의 확대라는 정책목표를 우선적으로 견지하면서 선정방식이 지닌 문제와 관련된 주요 요인에 대한 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함
 - 기존 보육료 지원제도 가운데 추정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은 선정 과정에서 자산조사 대상 항목에서 제외해야 함
 - 가장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이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재산의 소득환산 시 반영해야 함
 - 보육료 지원제도가 선별적 공공부조 제도로서 엄격한 자산조사를 통한 수급대상 선정과 보충급여 방식의 급여수준을 결정해야만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정책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과 관련된 환산율은 현행 1/3만 반영하고 있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기초노령연금 수준(연간 5%)과 유사하게 보다 완화해야 함

제2절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편방향 관련 쟁점 검토

1. 선정기준 관련 쟁점

가. 소득인정액 하위 50%에 대한 개념 정의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일정한 수준(분위)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09년 7월부터 전환됨에 따라, 소득인정액 분위 설정방식에 대한 개념 정립이 선행되어야 함
 - 특히, 2009년 7월 소득인정액 하위 50% 이하를 전액 지원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하위 50%를 설정하기 위한 전체 대상(모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50% 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전체 대상(모수)의 개념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전체 가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50%
 - 영유아가 있는 전체 가구(전체 영유아가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50%
 -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가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50%
- 세 가지 방안 중 보육료 지원제도의 직접적인 정책대상이 영유아 및 그 부모임을 고려하여 영유아가 1인 이상 있는 전 가구(전체 영유아가구)를 모집단으로 소득인정액 분위기를 설정 및 도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함
 - 전체 가구로 설정할 경우 영유아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장년층 및 노인층의 소득인정액 수준이 고려되며, 특히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 역시 반영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역시 정책대상인 65세 이상 전체 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분위기를 설정하여 70% 이하에 해당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급여대상 선정
 - 세 번째 고려사항인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가구를 모집단으로 설정할

경우, 전체 영유아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정 기준액 수준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음

- 당초 보육료 지원 확대방안과 관련된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기획재정부는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가구를, 보건복지가족부는 전체 영유아 가구를 모집단으로 설정하는 입장 차이를 보였음
- 또한,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 확대와 더불어 시행될 양육수당 제도 역시 보육료 지원제도와 일관성 있는 선정체계가 구축 및 적용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가 있는 가구가 아닌 전체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액을 도출하는 것이 정책의 통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함
 - 전체 영유아가구를 대상으로 전액 지원 또는 부분 지원, 양육수당 해당 소득계층에 대하여 보육시설 이용여부에 따라 보육료 지원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이루어지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분위를 설정하고 선정기준을 도출하는 방법론 상으로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며, 보육시설 이용여부는 전체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설정한 이후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나. 선정기준과 선정방식에서의 소득인정액 개념 일치

- 기존 보육료 선정체계의 선정기준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으로부터 도출되는 반면, 실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가구별로 산출·적용되는 것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반영된 소득인정액 개념으로, 선정기준과 선정방식에서 가구의 경제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준거가 되는 개념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함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과정에서 변화와 이로 인한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선정체계를 유지할 수 있으나, 이는 제도의 내적 정합성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개념적으로 일치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따라, 선정기준 도출방식 및 선정과정에서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계층 결정에 있어서 적용되는 개념으로 소득인정액을 동일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타당함
 - 이러한 개편은 선정기준 도출 시 계획한 보육료 지원대상의 수준에 따라 실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수준 결정 시에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소득인정액 개념에 따른 선정기준 도출 결과가 기존보다 크게 낮아진다면 보육료 지원제도가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보이는 착시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나,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소득인정액 방식에 의하여 도출된 선정기준액 수준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큼

다.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50% 선정기준액(전액 지원대상) 산출

- 앞서 소득인정액 개념으로의 일치에 따라 기존과 같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영유아 가구의 하위 50% 수준에 해당하는 선정기준액을 도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통계청 전국가계조사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재산항목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활용하기 어렵고, 전체 조사표본 가운데 영유아 가구의 규모가 작다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전체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의 분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가구 전체에 대한 소득 및 재산항목별 자료가 구축된 DB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그러나, 시간 및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별도의 실태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자료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여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5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액을 도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하지만, 실태조사에 의해 이러한 자료를 구축한다고 할지라도,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선정방식 개편방향을 고려한다면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선정기준 도출은 실제 집행과정에서 괴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매년 선정기준액 조정 시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선정기준을 도출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따라,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선정방식 개편 및 적용을 고려한 선정기준액 도출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일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자료의 활용이 용이한 건강보험료의 경우, 소득인정액 개념의 하위 50% 선정기준 설정원칙과 부합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차이와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을 적절하게 대신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할 수 없음
- 건강보험공단 및 국세청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 행정자료를 중심으로 전체 또는 일부 표본을 대상으로 영유아 가구 DB를 구축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결과적으로, 전체 영유아 가구에 대한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DB 구축 가능성에 대한 검토 결과,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 및 재산 항목별 원자료를 중심으로 보육료 지원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있는 모든 가구에 대한 DB 구축이 가능한 상황이었음

- 소득인정액 산출과정에서 필요한 소득 및 재산항목 중 일부 누락된 항목이 존재한다는 한계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나, 별도 실태조사 없이 필요에 따라 전체 영유아 가구 또는 표본추출을 통한 DB 구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또한, 매년 선정기준액 조정 시 일관성 있는 선정기준 도출방법을 활용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음
- 따라서, 전액 지원대상(무상보육)을 판별하는 소득인정액 개념 기준

전체 영유아 가구의 하위 50% 선정기준액 도출은 공적 행정자료를 중심으로 영유아 가구 DB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실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을 준용한 정책 모의분석에 따라 전체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가구규모를 고려하여 하위 5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액을 도출하는 방안을 적용함

라. 하위 50% 이상 계층에 대한 부분 지원대상 선정기준액 산출

□ 한편, 전액 지원대상(무상보육) 선정기준 이외에 기존 보육료 지원제도에서 3~5층에 해당하는 부분 지원대상 선정을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선정기준액을 마련해야 함

- 기존의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중 전액지원 대상을 제외한 부분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설정 및 적용방법 역시 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의 50% 이하(3층, 80% 지원), 50~70%(4층, 60% 지원), 70~100%(5층, 30% 지원)에 해당하는 가구에서 전체 영유아가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50~60%(2층, 60% 지원), 60~70%(3층, 30% 지원)에 해당하는 가구로 변경됨

□ 이러한 선정기준은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계획에 따라 앞서 논의된 전액 지원대상 선정기준액(하위 50%) 도출방안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일한 전체 영유아 가구의 DB를 활용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도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계층을 구분하는 선정기준액 도출 방식은, 행정자료 중심의 전체 영유아 가구 DB로부터 지원계층에 따른 분위기를 설정하고 가구별 소득인정액 모의분석을 통해 가구규모 별로 지원계층에 해당하는 선정기준액을 도출하여 적용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의 선정기준으로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50%’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분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으로써 하위 60%, 70%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산출

- 또한, 향후 단계적인 보육료 지원대상 추가 확대를 위하여 전체 영유아 가구의 80%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수준 도출

2. 선정방식(자산조사 체계) 관련 쟁점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가운데 신청 및 자산조사를 통한 선정방식의 개편과 관련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선정기준과 선정방식에서 소득인정액 개념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 보육료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계층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그 동안 지적되어 왔던 불합리한 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영유아 가구의 신청과정 및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자산조사 항목 조정과 조사 및 자료 반영원칙의 개선을 통해 공적 행정자료 중심으로 자산조사 업무를 표준화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가. 보육료 지원 신청 및 선정 프로세스 개선

- 현행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방식은 기존 보육시설 이용 및 지원을 받는 가구와 신규 신청가구의 구분 없이 매년 2월경 1년 단위로 신청·선정 프로세스 반복
 - 그러나, 이처럼 매년 2월 보육료 지원대상을 신청하기 위하여 많은 가구가 일시에 집중적으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 있어, 자산조사 등 선정을 위한 과도한 업무부담 집중, 이로 인해 보육료 지원대상 여부 확정통지에 1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업무처리의 적시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최초 보육료 지원 신청 및 선정 후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하게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지원대상의 수급자격을 관리

- 공적 행정자료 중심으로 자산조사 원칙을 개선하여 보육료 지원 신청가구의 제출서류에 의존하던 기존의 방식을 보완하고, 복지전산망(기존 새올행정시스템 / 향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확인된 공적 행정자료를 근거로 자산조사 실시
- 향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이후에는 보육료 지원 신규 신청가구에 대한 처리뿐만 아니라 기존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및 재산사항 변동이 발생할 경우 DB에서 자동적으로 반영된 결과에 따라 산출된 소득인정액 변동여부에 의해 수급자격 관리 및 이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임

□ 2009년 7월부터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계층 변경, 선정방식의 개편 등이 추진되므로 2009년 2월경 이루어져야 하는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 및 선정은 4~6월 중 실시

- 매년 실시되어 왔던 보육료 지원 신청시점과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계층 변경 시점의 불일치로 인한 검토 필요
 - 또한, 바우처 카드 도입, 양육수당 도입 시점과 연계하여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시점 조정 필요
- 이를 통해, 기존에 지원받던 영유아는 2009년 6월까지 지원기간이 연장되며, 신규 보육시설 이용으로 인한 신청가구에 대해서 전년도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선정
 -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 시점의 연장으로 일선 지자체의 불필요한 선정 업무(2009년 2~3월과 4~6월에 유사한 신청 및 선정과정을 반복)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료 지원 신청가구의 불편함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나. 보장단위 개편

- 보장단위는 선정 및 급여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되는 가구원의 범위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자산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출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범위가 결정되므로 중요한 영향을 미침
 - 기존 보육료 지원제도 역시 지원계층별 선정기준은 가구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보장단위에 해당하는 자산조사 대상 가구원의 범위는 ‘영유아를 기준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 존속(조부모, 부모) 및 형제·자매’로 규정됨
 - 아동의 부모 및 형제는 비동거시에도 가구원에 포함됨
 - 그러나, 3세대 동거 여부 확인이 불가능함에 따라 편법이 성행하고 동거 조부모의 재산 및 소득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
 -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없는 조부모의 주민등록만 이전하여 동일 세대로 구성함으로써 가구원을 증가시켜 보다 높은 선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사례도 존재함
 - 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편 과정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제도의 취지(부모의 자녀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를 고려하여 자녀의 양육 의무자를 부모로 한정하고, 보장단위 및 자산조사 대상에서 조부모를 제외하는 것이 적절함
 - 보육료 지원제도의 새로운 보장단위 및 자산조사 대상 가구원의 범위를 ‘영유아및 영유아 기준 부모와 형제·자매’로 한정
 - 이 경우, 가구원 인정 여부로 인해 그 동안 발생되었던 민원이 감소하고, 보장단위로 축소로 인한 자산조사 대상 축소로 자산조사 업무 부담이 경감됨
 - 반면,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조부모가 제외되는 일부 영유아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은 동일하나 가구원수 감소로 인한 선정기준액 하향으로 불이익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응 필요

다. 소득항목별 자산조사 방식 개선

□ 근로소득

- 생산기관 및 소득개념
 - 국세청(연간 근로소득금액) / 건강보험(표준보수월액) / 국민연금(소득월액)
- 제공주기
 - 국세청(연 1회, 매년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신고 종료 후 10월경 자료 입수 및 적용가능) / 건강보험(매월) / 국민연금(매월)
-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에서는 근로소득 관련하여 신청자가 별도의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은 새울 행정시스템을 통해 소득관련 자료를 재확인하는 불편함이 존재
 - 또한, 국세청,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소득자료 존재 시 반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자체 및 담당자별로 상이하게 적용
- 따라서, 근로소득 산정 및 반영 시 행정자료 중심으로 전국 단위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우선순위를 설정
 - 근로소득 자료 유무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보수월액 → 국민연금 보수월액 → 국세청 근로소득 순으로 적용
 - 국세청 자료의 시차 문제(전년도 귀속분) 및 소득 개념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국민연금, 고용 및 산재보험, 기초노령연금에 제공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자료를 근로소득 원자료로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단,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상태로 노출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근로활동을 할 경우 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에 근로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한계를 고려해야 함
- 일용근로자 등의 근로소득의 경우 현행과 같이 근로소득확인서 및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필요

□ 사업소득

- 생산기관 : 국세청
- 제공주기 : 연간 1회 종합소득세 신고(5월) 후 약 10월경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 고소득자영자 및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과약률이 제고되고 있으나, 여전히 자료의 시차 문제와 낮은 소득자료 보유율로 인해 활용에 제약이 따름
 - 그러나, 현 상황에서 일선 보육담당 공무원에게 파악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만 가중시킬 뿐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려움
- 따라서, 행정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국세청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반영하는 방안 필요

□ 추정소득

-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의 소득인정액 산출 시 무직·실직자 등 공공기관을 통해 소득과약이 불가한 자에 대해 생활실태 조사를 통한 소득을 추정하도록 하고 추정소득을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 추정소득 부과방식을 준용함에 따라 소득추정금액이 주관적으로 평가됨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까지 실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추정소득을 무리하게 부과하고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 따라서,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및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선정방식의 개편에 따라 추정소득을 소득인정액 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적이전소득

- 보육료 지원 신청가구가 친족·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금품을 지원받는 경우 사적이전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합산
- 그러나, 사적이전소득 역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산조사 방식을 준용함에 따라 포함된 항목으로, 실제 사적이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파악이 곤란하여 적용이 어려우며 실효성이 낮음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사적이전소득을 폐지하며, 보육료 신청

가구가 친지 등의 주택에 무료 거주하는 경우에도 사적이전소득 부과대상에서 제외

□ 공적이전소득

- 기존 보육료 지원제도에서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모든 종류의 급여, 보조금을 공적이전소득으로 합산하고 있으나, 이들 중 대부분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으로 공제함에 따라 지침 복잡
- 이에 따라, 공적이전소득 산정 대상을 실질적인 범위로 축소하고, 관련 지침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항목 조정

- 기존 보육료 지원제도에서 소득평가액 산정 시, 임대보증금이 3,800만원 이하면서 월 30만원 이하의 월세를 지출하는 가구의 월세 전액을 공제하였음
- 그러나,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선정방식 적용과 앞서 추정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등의 폐지에 따라 주거비(월세) 공제를 폐지하고 자산조사 방식을 표준화 및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존 공제적용 대상의 경우 주거비 공제 폐지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정 시 30만원 이내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보육료 지원제도는 기초보장제도와 같은 보충급여 방식이 아니며 추정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폐지,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라. 재산항목별 자산조사 방식 개선

□ 재산가액 산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사 원칙을 준용함에 따라 부동산 등 일반재산의 경우 시가(실거래가)를 파악하여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아파트 : 국민은행 제공 아파트 거래가
 - 토지 : 공시지가/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0.7~0.9)

- 다세대·다가구 주택 : 인근 부동산에서 확인한 거래가격
- 그러나, 관내 부동산의 협조가 어렵고 관외의 경우 더욱 어려워 일선 지자체에서 정확한 실거래가 확인이 곤란하며 현실적으로 부동산 관련 홈페이지나 국토해양부, 국세청 등의 가격을 임의로 적용
- 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선정방식 개편 시 재산가액 산정기준 역시 전산망을 통해 공적 행정자료(정부 및 공공기관 발표 공시가격) 중심으로 파악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러한 재산가액 산정 표준화를 통해 객관적인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적용에 따른 민원감소 및 자산조사 업무부담 경감
 - 시가에 비해 공시가격이 낮게 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감소할 수 있으나, 이것은 선정기준 도출 시 동일한 방식으로 반영하여 사전에 고려하거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조정계수를 적용함으로써 보완 가능

□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기초공제액 수준 조정

- 기존 보육료 지원제도의 기초공제액 수준은 기초보장제도의 기준을 준용하여 대도시 3,8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을 공제함
- 그러나, 주거비 및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2009년부터 상향 조정된 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 부채 공제 간소화

- 기존 보육료 지원제도에서는 부채의 용도를 주거비, 의료비, 학비, 사업자금 등으로 한정하고, 사채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부채를 인정
- 그러나, 부채의 용도 제한으로 인해 용도 증빙을 위한 별도 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며, 부채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생활비 부채 등은 부채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민원이 발생함
- 보육료 지원대상의 확대 및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선정방식으로서의 개편에 따라, 부채의 용도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공식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금융권 부채를 금융재산 조회와 연계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통해 부채 용도 입증을 위한 별도 자료의 제출이 불필요하며, 자산조사 업무 간소화 가능
 - 부채 용도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부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반대로 금융권 부채만 인정하는 것은 부채 인정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옴

□ 일반재산과 승용차로 분류되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 완화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배기량에 따른 재산 유형 분류방식을 준용하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1,600cc를, 보육료 지원제도에서는 배기량 2,000cc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승용차로 분류하고 환산율 100%의 1/3을 적용함
- 이로 인해 영유아 가구가 2,000cc 전후의 중형 자동차를 보유할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이나 금융재산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환산율(자동차가액 100%의 1/3)이 적용됨에 따라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 일선 지자체에서 이로 인한 민원발생 빈도가 상당히 높은 편임
- 그러나,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및 자동차 소유 보편화에 따라 자동차의 재산가액 평가기준 완화가 필요한 시점임
 - 승용차 분류를 위한 배기량 2,000cc 기준을 폐지하여 자동차를 일반재산 수준으로 환산하여 반영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함
 - 국민의 수용성이나 정서를 감안하여 완전한 폐지가 어려울 경우, 최소 2,500cc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검토 필요(단, 외제 차량은 국민정서 제외 필요)

□ 금융재산 조회 실시

- 금융재산 및 부채에 대한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소득파악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기존 보육료 지원제도에서 실시하지 않았던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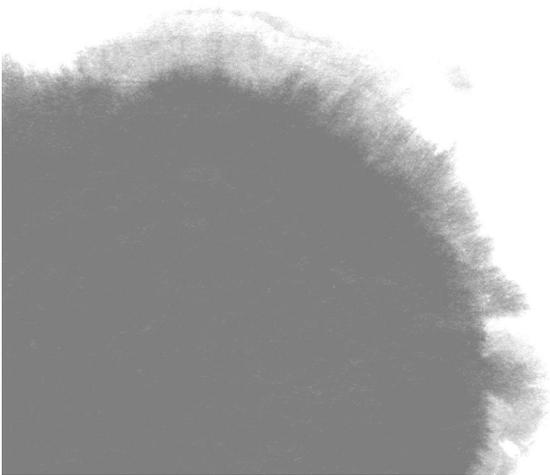
– 최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서 활용하는 금융재산정보 조회시스템이 개선되어 금융재산을 조회하여 소득인정액 산출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함

- 금융재산정보 조회를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기구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추가되어야 함

□ 회원권, 분양권 등 기타 재산항목에 대한 자산조사 추가

– 최근 공적 행정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해진 회원권, 분양권 등 기타 재산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조사 없이 공적 행정자료에서 확인된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추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추정 관련 영유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초분석



제3장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추정 관련 영유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초분석

제1절 분석 DB: 건강보험공단 공적 행정자료

1. 분석 DB 추출 및 분석대상 영유아의 분포

□ 분석목적

- 주민등록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대상 연령의 영유아가 1인 이상 있는 전체 가구의 가구원 정보를 추출하고, 영유아의 부모를 포함한 해당 가구원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소득 및 재산자료를 건강보험공단 공적 행정자료에서 추출하여 새로운 소득인정액 개념 및 선정방식에 따른 보육료 전액지원 또는 부분지원 대상 선정기준액 도출 및 수급규모 변동 예측

□ 분석자료 : 건강보험 DB

- 2009. 1(자료추출 시점)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공적 행정자료 DB 중 보육료 지원대상인 ‘만 0세 ~ 6세 미만 영유아(☞ ‘03.1.1 이후 출생한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기준 영유아가 속한 가구의 전체 가구원 정보를 추출하여 분석 DB의 개인별 자료 구축
- 분석대상 전체 가구원 규모
 - 최초 추출 8,484,493명 → (ID 중복 제외)
 - 1차 수정 8,484,274명 → (건강보험자료 부재 case 삭제)
 - 최종 추출 8,476,137명

－ 분석대상 전체 영유아 규모

- 최초 추출 2,806,905명 (33.1%) → (ID 중복 제외)
- 1차 수정 2,806,744명 (33.1%) → (건강보험자료 부재 사례 삭제)
- 최종 추출 영유아 규모 2,804,825명(33.1%)

－ 영유아 규모 비교

- 2007년말 보건복지가족부 길잡이통계 상 제시된 보육료 지원대상 : 약 2,832천명
- 2005년 인구센서스에 의한 통계청 추계인구 : 약 2,718천명¹⁾

연령	2008 (연앙인구)			2009 (연앙인구)		
	추계인구	추계인구(남)	추계인구(여)	추계인구	추계인구(남)	추계인구(여)
합계	2,744,597 (100.0%)	1,424,869 (51.92%)	1,319,728 (48.08%)	2,691,497 (100.0%)	1,395,886 (51.86%)	1,295,611 (48.14%)
0세	446,738 (16.28%)	231,719	215,019	443,017 (16.46%)	229,620	213,397
1세	445,796 (16.24%)	231,349	214,447	443,528 (16.48%)	229,999	213,529
2세	438,576 (15.98%)	227,279	211,297	444,718 (16.52%)	230,779	213,939
3세	448,625 (16.35%)	232,459	216,166	437,813 (16.27%)	226,873	210,940
4세	475,449 (17.32%)	247,039	228,410	447,843 (16.64%)	232,029	215,814
5세	489,413 (17.83%)	255,024	234,389	474,578 (17.63%)	246,586	227,992

－ 분석대상 영유아의 성별 분포

- 분석 DB 구축을 위한 전체 영유아의 성별 분포는 아래와 같음

구분	인원 (명)	비율
합계	2,804,825	100.0%
남	1,450,689	51.72%
여	1,354,136	48.28%

- 전체 영유아 약 280여만명 가운데 남성은 약 51.72%를 차지하여 여성보다 약 3%p 높게 나타남

1) 2008년과 2009년 추계 연앙인구의 평균치임

- 이러한 성별 구성비를 통계청 추계인구와 비교해보면, 2008년 연안인구 기준으로 남성이 약 51.92%, 2009년 연안인구 기준으로 약 51.86%로 불과 0.14~0.20%p 낮게 나타남

구분	2008 (연안인구)		
	추계인구	추계인구(남)	추계인구(여)
전체	2,744,597 (100.0%)	1,424,869 (51.92%)	1,319,728 (48.08%)

구분	2009 (연안인구)		
	추계인구	추계인구(남)	추계인구(여)
전체	2,691,497 (100.0%)	1,395,886 (51.86%)	1,295,611 (48.14%)

－ 분석대상 영유아의 연령별 분포

- 분석 DB 구축을 위하여 추출된 전체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대상 연령집단 구분에 따른 연령별 분포는 통계청 추계인구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음
- 다만,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출생아동 수가 증가했었던 2007년생 (1세) 영유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구분	인원 (명)	비율
합계	2,804,825	100.0%
0세	469,693	16.75%
1세	490,864	17.50%
2세	446,319	15.91%
3세	433,656	15.46%
4세	472,198	16.84%
5세	492,095	17.54%

구분	통계청 추계인구	
	2008 (연안인구)	2009 (연안인구)
합계	2,744,597 (100.0%)	2,691,497 (100.0%)
0세	446,738 (16.28%)	443,017 (16.46%)
1세	445,796 (16.24%)	443,528 (16.48%)
2세	438,576 (15.98%)	444,718 (16.52%)
3세	448,625 (16.35%)	437,813 (16.27%)
4세	475,449 (17.32%)	447,843 (16.64%)
5세	489,413 (17.83%)	474,578 (17.63%)

－ 분석대상 영유아의 세대주와의 관계 분포

- 분석 DB 구축을 위해 추출된 전체 영유아의 세대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가 세대주이면서 세대주의 자녀인 경우가 91.4%로 대부분을 차지함
- 다음으로 손자녀 또는 외손자녀인 영유아는 약 7.6%로 나타났음
- 그밖에, 조카인 경우가 0.6%,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0.3%, 나머지 0.1%는 증손자녀 등 기타 세대주와의 관계에 해당하는 영유아로 나타났음

구분	비율
합 계	100.0%
자녀	91.4%
손자녀	6.5%
외손자녀	1.1%
조카	0.6%
동거인	0.3%
증손자녀	0.07%
기 타	0.03%

2. 영유아 가구 DB 구축

□ 건강보험 공적 행정자료로부터 앞서 추출된 전체 영유아 및 영유아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으로 구성된 개인 DB 기준으로, 이를 변환하여 영유아 가구 DB구축

－ 2009. 1(자료추출 시점)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DB 중 보육료 지원대상인 ‘만 0세 ~ 6세 미만 영유아(’03.1.1 이후 출생아동)’를 중심으로, 주민등록 기준 전체 가구원을 포함한 개인 DB 추출

- 가구 DB 변환용 개인 8,476,137명
- 가구 DB 변환용 영유아 2,804,825명 (33.1%)

□ 가구 DB 1차 변환

－ 가구 ID(세대주) 기준 최초 변환 가구 DB 사례 : 2,208,721가구

□ 가구 DB 1차 수정 (2,208,721가구 => 2,196,615가구)

- 영유아가 없는 가구(데이터 추출 시 오류), 영유아 1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아동복지시설(영유아가 5인 이상) 등으로 추정되는 가구 등을 검토하여 이에 해당하는 가구(약 0.56%)를 제외

구분	비율 (%)
합계	100.0%
영유아 0명	0.5%
영유아 1명	73.4%
영유아 2명	24.8%
영유아 3명	1.2%
영유아 4명	0.04%
영유아 5명 이상	0.06%

- 영유아 수 1~4인 가구만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가구 제외 (11,200가구 제외)
 - 영유아 0인 경우(11,005가구) : 데이터 추출 시 오류 추정
 - 영유아 5인 이상인 경우(195가구) :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추정
- 영유아 1인 단독가구(906가구) 제외
 - 데이터 추출 오류 또는 세대 분리 이후 타 가구 편입 사례 추정

□ 가구 DB 2차 수정 (2,196,615가구 => 2,196,247가구)

- 세대주 없는 가구(255가구) 제외
- 세대주 확인 시 2인으로 확인된 가구(113가구) 제외
 - 데이터 추출 시 오류(행정전산망의 세대주와의 관계 오류) 또는 특수한 형태 세대합가 가구 추정

□ 가구 DB 3차 수정 (2,196,247가구 => 2,195,401가구)

- 세대주 연령을 기준으로, 18세 미만 세대주 가구(846가구) 제외
 - 소년소녀가장 세대 또는 행정전산망 세대주와의 관계 오류 추정

□ 가구 DB 4차 수정 (2,195,401가구 => 2,193,826가구)

- 가구원수 기준 - 10인 이상 가구(1,575가구) 제외
 - 아동복지시설 또는 특수 형태의 대가족 추정

□ 가구 DB 5차 수정 (2,193,826가구 => 2,193,679가구)

- 가구별 소득인정액 산출 시 지역별 기초공제액 반영에 필요한 행정 구역 코드가 누락된 가구(147가구) 제외

□ 최종 분석대상 가구 DB : 2,193,679가구

- 최종 분석대상 가구 DB에 포함된 개인 : 8,408,215명
- 최종 분석대상 가구 DB에 포함된 영유아 : 2,796,243명
 - 성별 분포 : 남 1,446,107명 / 여 1,350,136명
 - 연령별 분포 : 0세 468,457명 / 1세 489,751명 / 2세 445,121명
3세 432,312명 / 4세 470,456명 / 5세 490,146명

가구원수	비율
2인	6.3%
3인	33.7%
4인	39.3%
5인	14.3%
6인 이상	6.4%
전체	100.0%

3. 영유아 및 부모 DB 구축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중 보장단위 개편과 관련된 선정기준 추정을 위하여 영유아 및 부모(영유아 기준 형제자매 포함) DB를 구축함
- 앞서 가구 DB 구축시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공적 행정자료에서 추출된 전체 영유아 및 영유아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으로 구성된 개인 DB 기준으로, 이를 변환하여 영유아 및 부모 DB구축
 - 영유아 및 부모 DB 변환 시, 개인 DB에 포함된 변수 중 주민등록 기준 행정전산망에 등록된 세대주와의 관계만을 기준으로 변환해야 하므로 이러한 한계 내에서 최대한 추출 가능한 방식으로 ‘영유아, 부모, 영유아 이외 자녀’만으로 구성된 DB를 구축하여 분석
 - 3세대 가구를 제외한 추출 가능한 ‘영유아 - 부모’ 관계
 - 세대주의 관계가 ‘자녀’인 전체 영유아의 약 91.4%

- 영유아 & 부모 DB 1차 변환 : 2,008,053가구
 - 세대주와의 관계는 자녀 등에 해당하나, 영유아가 아닌 경우 제외
- 영유아 & 부모 DB 1차 수정 (2,008,053가구 => 2,008,035가구)
 - 가구 DB 구축 시와 마찬가지로 영유아 수 1~4인 가구만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삭제(영유아 5인 이상인 18가구)
- 영유아 & 부모 DB 2차 수정 (2,008,035가구 => 2,007,330가구)
 - 세대주 없는 가구(601가구)와 세대주 확인 시 2인으로 확인된 가구(104가구) 제외
 - 데이터 추출 시 오류(행정전산망의 세대주와의 관계 오류) 또는 특수한 형태의 세대합가 가구 추정
- 영유아 & 부모 DB 3차 수정 (2,007,330가구 => 2,006,431가구)
 - 세대주 연령 기준 - 18세 미만 세대주 가구 또는 60세 이상 세대주 가구(899가구) 제외
 - 소년소녀가장 세대 또는 데이터 추출 시 오류 추정
- 영유아 & 부모 DB 4차 수정 (2,006,431가구 => 2,006,360가구)
 - 가구원수 기준으로 10인 이상 가구(이동시설 추정 71가구) 제외
- 영유아 & 부모 DB 5차 수정 (2,006,360가구 => 2,006,313가구)
 - 배우자 2인 가구 등 세대주와의 관계 오류 추정 가구(47가구) 제외
- 영유아 & 부모 DB 6차 수정 (2,006,313가구 => 2,006,234가구)
 - 행정구역 코드 누락 가구(79가구) 제외
- 최종 분석대상 영유아 & 부모 DB : 2,006,234가구
 - 영유아 & 부모 DB 기준 영유아 연령별 구성여부

구분	0세 영유아가 있는 가구	1세 영유아가 있는 가구	2세 영유아가 있는 가구	3세 영유아가 있는 가구	4세 영유아가 있는 가구	5세 영유아가 있는 가구
비율	20.7%	21.8%	20.1%	19.7%	21.5%	22.4%

－ 영유아 & 부모, 영유아의 형제자매 기준 가구원수 분포

가구원수	비율
2인	7.6%
3인	39.6%
4인	43.0%
5인	8.9%
6인 이상	0.9%
전 체	100.0%

－ 영유아 & 부모 DB에 포함된 분석대상 영유아 : 2,559,879명

• 영유아 성별 분포

구분	남	여
영유아(명)	1,324,003	1,235,876

• 영유아 연령별 분포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영유아(명)	420,391	443,511	407,846	398,907	435,699	453,525

4. 분석 DB 구축 시 포함된 소득 및 재산 관련 변수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도출을 위한 모의분석 시, 소득인정액 산출에 포함되는 소득 및 재산항목과 분석 DB에 제공된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소득 및 재산항목은 아래와 같음

종류	소득 및 재산 항목	건강보험 DB			비고		
		제공된 항목	원자료 제공	기준 연도			
소득	근로소득 (종합소득자)	근로소득(원/연간)	국세청	'07	소득금액		
	사업소득 (종합소득자)	사업소득(원/연간)			소득금액		
	임대소득 (종합소득자)	임대소득(원/연간)			소득금액		
	이자소득 (종합소득자)	이자소득(원/연간)			총 수입금액		
	배당소득 (종합소득자)	배당소득(원/연간)			총 수입금액		
	기타소득 (종합소득자)	기타소득(원/연간)			소득금액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연금급여액(원/연간)	각 연금공단	'08.11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우체국		
	근로소득 (근로자)	건강보험보수월액(원/월)	건강보험공단	'09.1	직장가입자만 해당		
	기타 공적이전소득	-					
	재산	일반재산(건축물)	건물(원/과세표준액)	해당 지자체	'08	과세표준액=0.65=시가표준액	
일반재산(주택)		주택(원/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0.55=시가표준액				
일반재산(토지)		토지(원/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0.65=시가표준액				
일반재산(선박/항공기)		선박/항공기(원/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시가표준액				
자동차		자동차 연간세액(원/연간)	자동차가액 자료 확보불가				
		자동차 자료건수	자동차 소득환산액의 대리변수로 활용				
전월세보증금		-					
금융재산		-					
골프장회원권		-					
부동산 취득 권리	-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부채	부채	-					

- 분석 DB에 포함된 소득 및 재산항목을 활용하여 영유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보유실태에 대한 기초분석을 실시함
- 공적 행정자료 중심으로 일부 항목을 제외한 선정방식 개편에 따른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도출을 위한 모의분석 시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해 분석 DB에 구축된 원자료를 활용
 - 소득평가액 = 국세청 종합소득 월평균 + 월평균 공적연금 급여액 + 건강보험 보수월액
 - 재산의 소득환산월액 = [{ (일반재산 시가표준액 - 기초공제액) × 환산율 } + 자동차 연간세액²⁾] ÷ 12
 - 시가표준액 환산 : 과세표준액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적용비율 기준 역산
 - 주택(2008년 기준 55%) : 과세표준액 ÷ 0.55
 - 토지 및 건물(2008년 기준 65%) : 과세표준액 ÷ 0.65
 - 선박/항공기 : 과세표준액 = 시가표준액
- 건강보험 공적 행정자료에 기초한 분석 DB의 한계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편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에 따른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출 시 포함 예정인 소득 및 재산항목 중,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외한 공적이전소득(산재보험급여, 보훈연금 등)과 신청 시 동의서 제출이 필요한 금융재산, 임차보증금, 회원권 등 기타 재산, 자동차가액, 부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 누락된 소득 및 재산항목에 대한 보장여부 및 방법은 선정기준 모의분석 시 별도로 검토해야 함

2) 원래 자동차가액에 환산율을 적용하여 환산해야 하나, 자동차가액 원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연간 자동차세액 자료를 대리변수로 사용

제2절 영유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보유실태 기초분석

- 앞서 구축한 두 가지 분석 DB인 영유아 가구 DB 및 영유아 & 부모 DB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보유실태 관련 기초통계를 분석함
 - 특히, 선정체계 개편사항과 관련하여 보장단위의 차이에 따른 소득 및 재산 보유실태를 비교함
- 소득 및 재산항목별 보유실태 기초분석과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가구별 소득인정액 모의분석 시 소득인정액 산출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국세청 종합소득 월평균 + 월평균 공적연금
급여액 + 건강보험 보수월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시가표준액 - 기초공제액) × 환산율] + 자동차 연간세액 / 12

1. 영유아 가구 DB 기준 소득 및 재산 보유실태

가. 기초공제 미적용 & 환산율 연 5%

- 가구원 전체가 포함된 영유아가구 DB를 기초로 소득인정액 산출 시, 기초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보다 완화하여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게 재산의 유형에 상관없이 연 5%를 적용할 경우의 소득 및 재산, 소득인정액 보유실태를 먼저 살펴봄

□ 소득평가액 및 소득항목별 보유실태

구분	이자소득 (연간)	배당소득 (연간)	임대소득 (연간)	사업소득 (연간)	근로소득 (연간)	기타소득 (연간)
전체 평균 (단위: 천원)	70	148	205	2,287	18	60
보유 비율 (단위: %)	0.1	0.1	1.7	16.1	0.3	2.0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55,212	131,807	11,744	14,202	5,752	3,024

구분	국세청 종합소득 (연간)	국세청 종합소득 (월평균)	연금 급여액 (연간)	공적연금 월평균 급여액	건강보험 표준보수 월액	소득 평가액
전체 평균 (단위: 천원)	2,788	232	217	18	2,238	2,488
보유 비율 (단위: %)	19.2	19.2	4.8	4.8	64.5	74.2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14,547	1,212	4,482	373	3,470	3,355

- 소득평가액 및 소득항목별 보유실태를 살펴보면, 국세청의 종합소득 자료에 기초한 보유비율은 사업소득이 16.1%로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소득 유형은 2% 이내로 낮았음
 - 이로 인해, 종합소득 합계의 전체적인 평균은 연간 약 2,788천원으로 매우 낮았으며, 보유가구 평균은 월평균 약 121만원임
- 반면,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 자료인 건강보험 표준보수월액은 보유가구의 비율이 64.5%에 이르렀으며 전체 가구의 평균은 약 2,238천원, 보유가구의 평균은 약 347만원으로 나타남
 - 가구 DB 기준 공적연금 보유비율은 가구 내 노인이 포함되므로 약 4.8%로 나타났으나,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높은 수준은 아니었음
- 소득항목을 합산한 소득평가액 자료를 보유한 영유아 가구 비율은 약 74.2%로, 전체의 약 1/4은 소득이 0인 것으로 나타남

- 소득평가액의 전체적인 평균은 약 2,488천원이었으며, 보유가구의 평균은 3,355천원으로 나타남

□ 재산의 소득환산액 및 재산항목별 보유실태

구분	주택 시가표준액	토지 시가표준액	건물 시가표준액	선박항공기 시가표준액	일반재산 시가표준액
전체 평균 (단위: 천원)	72,755	28,921	6,573	5	108,254
보유 비율 (단위: %)	47.4	19.4	7.1	0.1	53.8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153,395	149,008	92,945	4,887	201,272

구분	일반재산 연 5% 소득환산액	자동차가액 연간 소득환산액	연 5% 기준 연간 소득환산액	연 5% 기준 소득환산월액
전체 평균 (단위: 천원)	5,413	501	5,914	493
보유 비율 (단위: %)	53.8	71.5	79.5	79.5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10,064	701	7,443	620

- 영유아 가구의 재산항목별 보유실태를 살펴보면, 주택의 경우 보유비율은 47.4%였으며 토지와 건물은 각각 19.4%와 7.1%로 나타남
 -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주택 보유가구의 평균은 약 1억 5,300만원, 전체 평균은 약 7,300만원으로 나타남
- 주택, 토지, 건물을 합산한 일반재산의 보유비율은 53.8%였으며, 일반재산 시가표준액의 전체 평균은 약 1억 8백만원, 보유가구 평균은 약 2억원으로 나타남
 - 이를 기준으로 연 5%의 환산율을 적용한 일반재산의 연간 소득 환산액의 전체 평균은 5,413천원, 보유가구 평균은 약 1천만원, 여기에 자동차가액에 대한 소득환산액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연간 자동차세액을 반영한 연간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전체적으로 약

- 5,914천원, 79.5%에 이르는 보유가구의 평균은 약 7,443천원임
- 이를 기초로 환산한 연 5% 환산율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전체 평균은 49만 3천원, 보유가구 평균은 약 62만원으로 분석됨

□ 소득인정액 보유실태

구분	연 5% 기준 소득인정액	연 5% 기준 PL 균등조정 소득인정액	연 5% 기준 RT 균등조정 소득인정액
전체 평균 (단위: 천원)	2,981	1,142	1,527
보유 비율 (단위: %)	86.5	86.5	86.5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3,446	1,321	1,765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영유아 가구의 연 5% 환산율 기준 소득인정액 전체 평균은 약 2,981천원이었음
 - 소득인정액 값이 0이 아닌 보유가구 비율은 86.5%로 나타나, 전체의 약 13.5%는 공적 행정자료를 중심으로 소득 및 재산항목 중 어떠한 항목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인정액이 0인 가구를 제외한 보유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약 3,446천원으로 나타남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액 도출을 위한 모의분석 시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PL, RT) OECD 가구 균등화지수³⁾를 고려한 소득인정액 보유가구의 평균은 각각 약 1,321천원과 1,765천원으로 나타났음

3) OECD 가구 균등화지수 두 가지(PL, RT)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4장 참조

나. 기초공제 적용 & 환산율 연 5%

- 가구원 전체가 포함된 영유아가구 DB를 기초로 소득인정액 산출 시, 기초보장제도의 2009년 조정된 기초공제 수준을 적용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현행보다 완화하여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게 재산의 유형에 상관없이 연 5%를 적용할 경우의 소득 및 재산, 소득인정액 보유실태를 살펴봄
 - 기초공제액 수준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5,400	3,400	2,900

- 소득항목 및 소득평가액은 기초공제액 적용여부와 관계가 없으므로 앞서 살펴본 기초분석 결과와 동일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및 재산항목별 보유실태

구분	주택 시가표준액	토지 시가표준액	건물 시가표준액	선박항공기 시가표준액	일반재산 시가표준액
전체 평균 (단위: 천원)	72,755	28,921	6,573	5	108,254
보유 비율 (단위: %)	47.4	19.4	7.1	0.1	53.8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153,395	149,008	92,945	4,887	201,272

구분	기초공제 후 일반재산 시가표준액	기초공제 후 일반재산 연 5% 소득환산액	기초공제 후 연 5% 기준 연간 소득환산액	기초공제 후 연 5% 기준 소득환산월액
전체 평균 (단위: 천원)	87,114	4,356	4,857	405
보유 비율 (단위: %)	45.1	45.1	77.7	77.7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193,119	9,656	6,254	521

- 첫 번째 모의분석 모형과 달리, 환산대상 재산가액 산정 시 지역별 기초공제액을 적용하였으므로, 두 번째 분석모형에서의 기초공제 후 재산의 소득환산월액은 기초공제로 인해 약 20% 낮게 나타났음
 - 영유아 가구의 재산항목별 보유실태 및 평균은 기초공제액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
 - 일반재산가액 보유비율은 공제 전 53.8%에서 기초공제 적용 후 45.1%로 감소하여 약 8.7%p는 기초공제에 의해 일반재산가액이 모두 차감되었음을 알 수 있음
 - 기초공제 후 환산을 적용 전 일반재산 시가표준액의 전체 평균은 약 1억 8백만원에서 약 8천7백만원으로 기초공제에 의해 평균적으로 약 2,100만원 감소함
 - 기초공제 후 연 5%의 환산율을 적용한 일반재산의 연간 소득환산액의 전체 평균은 4,356천원으로 낮아졌으나, 보유가구 평균은 약 9,656천원으로 감소폭이 크지 않았음
 - 기초공제를 적용한 이후 자동차가액에 대한 소득환산액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연간 자동차세액을 반영하여 산출한 재산의 소득환산월액의 전체 평균은 40만 5천원, 보유가구 평균은 약 52만 1천원으로 나타남

□ 소득인정액 보유실태

구분	기초공제 후 연 5% 기준 소득인정액	기초공제 후 연 5% 기준 PL 균등조정 소득인정액	기초공제 후 연 5% 기준 RT 균등조정 소득인정액
전체 평균 (단위: 천원)	2,893	1,108	1,482
보유 비율 (단위: %)	85.7	85.7	85.7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3,374	1,293	1,728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전체 영유아 가구의 기초공제 후 연 5% 환산율 기준 소득인정액 평균은 약 2,893천원이었음
 - 소득인정액 값이 0이 아닌 보유가구 비율은 85.7%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보유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약 3,374천원임
 - 두 가지(PL, RT) OECD 가구 균등화지수를 고려한 소득인정액 보유가구의 평균은 각각 약 1,293천원과 1,728천원으로 나타났고, 전체 평균은 1,108천원과 1,482천원으로 분석되었음

다. 기초공제 적용 & 환산율 연 16.68%

- 다음으로 가구원 전체가 포함된 영유아 가구의 DB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 산출 시, 기초공제액 적용 수준은 두 번째 모의분석 모형과 동일하게,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기존 보육료 지원제도에서 적용했던 수준(기초생활보장제도 환산율의 1/3, 일반재산의 경우 월 1.39%, 연 16.68%)을 적용한 소득 및 재산, 소득인정액 보유실태를 살펴봄
- 보육료 지원제도의 재산의 소득환산율
 - 보육료 지원제도의 소득환산율은 선별적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1/3 수준이나, 준보편적인 기초노령연금의 선정과정에서 적용되는 소득환산율 연 5%보다는 약 3배 이상 높은 수준임

□ 재산의 소득환산액 및 재산항목별 보유실태

구분	주택 시가표준액	토지 시가표준액	건물 시가표준액	선박항공기 시가표준액	일반재산 시가표준액
전체 평균 (단위: 천원)	72,755	28,921	6,573	5	108,254
보유 비율 (단위: %)	47.4	19.4	7.1	0.1	53.8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153,395	149,008	92,945	4,887	201,272

구분	기초공제 후 일반재산 시가표준액	기초공제 후 일반재산 연 16.68% 기준 소득환산액	기초공제 후 연 16.68% 기준 연간 소득환산액	기초공제 후 연 16.68% 기준 소득환산월액
전체 평균 (단위: 천원)	87,114	14,531	15,032	1,253
보유 비율 (단위: %)	45.1	45.1	77.7	77.7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193,119	32,212	19,356	1,613

- 영유아 가구의 소득 및 재산항목별 보유실태 및 평균은 기초공제액 적용여부 및 환산을 상향 조정과 상관없이 동일함
 - 일반재산가액 보유비율은 역시 기초공제에 의해 공제 전 53.8%에서 공제 후 45.1%로 동일하게 감소하였음
- 두 번째 모의분석 모형과 비교해볼 때,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 재산가액 산정 시 지역별 기초공제액을 적용한 후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연 5%가 아닌 현행 보육료 지원제도 수준인 연 16.68%를 적용함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월액은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 기초공제 후 환산을 적용 전 일반재산 시가표준액의 전체 평균은 약 1억 8백만원에서 약 8천 7백만원으로 약 2,100만원 감소하였으며, 보유가구의 기초공제 후 일반재산 시가표준액은 2억원에서 1억 9천3백만원으로 소폭 감소함
 - 기초공제 후 연 16.68%의 환산율을 적용한 연간 소득환산액의 전체 평균은 약 1천 5백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재산의 소득환산월액의 역시 전체 평균이 40만 5천원에서 125만 3천원으로, 보유가구 평균은 52만 1천원에서 161만 3천원으로 증가함

□ 소득인정액 보유실태

- 소득평가액과 연 16.68%의 환산율을 적용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전체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약 2,893천원에서 약 3,741천원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 증가분(약 85만원)만

큼 상승하였음

- 소득인정액 값이 0이 아닌 보유가구 비율은 85.7%로 동일했으며, 보유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 역시 약 4,363천원으로 증가함
- 두 가지(PL, RT) OECD 가구 균등화지수를 고려한 소득인정액 보유가구의 평균은 1,655천원과 2,219천원으로, 전체 영유아가구 평균은 1,420천원과 1,903천원으로 상승함

구분	기초공제 후 연 16.68% 기준 소득인정액	기초공제 후 연 16.68% 기준 PL 균등조정 소득인정액	기초공제 후 연 16.68% 기준 RT 균등조정 소득인정액
전체 평균 (단위: 천원)	3,741	1,420	1,903
보유 비율 (단위: %)	85.7	85.7	85.7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4,363	1,655	2,219

2. 영유아 및 부모 DB 기준 소득 및 재산 보유실태

: 기초공제 적용 & 환산율 연 16.68%

- 다음으로 보장단위를 영유아 및 부모 중심으로 개편할 경우의 선정 기준 도출을 위한 사전 분석으로, 앞서 구축한 영유아 및 부모 DB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함
 - 특히, 보장단위의 차이에 따른 소득 및 재산 보유실태의 비교를 위해 앞서 영유아 가구 DB를 기초로 세 가지 모의분석 모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중에서, 기초공제액을 적용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기존 보육료 지원제도에서 적용했던 수준(기초생활보장제도 환산율의 1/3, 일반재산의 경우 월 1.39%, 연 16.68%)을 적용한 세 번째 모의분석 모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살펴봄

□ 소득평가액 및 소득항목별 보유실태 비교

구분		이자소득 (연간)	배당소득 (연간)	임대소득 (연간)	사업소득 (연간)	근로소득 (연간)	기타소득 (연간)
영유아 & 부모 DB 기준	전체 평균 (단위: 천원)	53	126	146	2,225	16	58
	보유 비율 (단위: %)	0.1	0.1	1.3	15.1	0.3	2.0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49,647	125,363	11,254	14,749	5,866	2,933
영유아 가구 DB 기준	전체 평균 (단위: 천원)	70	148	205	2,287	18	60
	보유 비율 (단위: %)	0.1	0.1	1.7	16.1	0.3	2.0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55,212	131,807	11,744	14,202	5,752	3,024

구분		국세청 종합소득 (연간)	국세청 종합소득 (월평균)	연금 급여액 (연간)	공적연금 월평균 급여액	건강보험 표준보수 월액	소득 평가액
영유아 & 부모 DB 기준	전체 평균 (단위: 천원)	2,625	219	7	0.6	2,249	2,469
	보유 비율 (단위: %)	17.9	17.9	0.2	0.2	64.6	73.2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14,684	1,224	3,688	307	3,480	3,374
영유아 가구 DB 기준	전체 평균 (단위: 천원)	2,788	232	217	18	2,238	2,488
	보유 비율 (단위: %)	19.2	19.2	4.8	4.8	64.5	74.2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14,547	1,212	4,482	373	3,470	3,355

- 영유아와 부모 기준으로 보장단위를 개편을 가정할 경우 소득평가액 및 소득항목별 보유실태를 살펴보면, 먼저 국세청의 종합소득자료에 기초한 보유비율은 영유아 가구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남
 - 사업소득 비율은 15.1%로 1%p 감소하였으며, 임대소득 보유가구 비율도 낮게 나타났음

- 이로 인해 국세청 종합소득 합계의 전체 평균은 다소 낮아졌으나, 보유가구의 월평균 종합소득은 1,224천원으로 다소 높았음
- 한편, 영유아 및 부모로 구성된 보장단위로 개편할 경우 3세대 가구에서의 노인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 자료인 건강보험 표준보수월액은 보유가구 및 전체 평균 모두 다소 높아졌음
 - 반면에, 공적연금 보유비율은 영유아 가구 DB 4.8%에서 영유아 및 부모 DB에서는 0.2%로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전체 평균 역시 영유아 가구 DB 기준 분석결과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음
- 다양한 소득 유형을 합산한 소득평가액 보유비율은 73.2%로 약 1%p 낮게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 소득평가액 수준은 2,469천원으로 다소 높았으나, 보유가구의 평균은 3,374천원으로 영유아 가구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음

□ 재산의 소득환산액 및 재산항목별 보유실태 비교

구분		주택 시가표준액	토지 시가표준액	건물 시가표준액	선박항공기 시가표준액	일반재산 시가표준액
영유아 & 부모 DB 기준	전체 평균 (단위: 천원)	67,326	18,786	4,828	4	90,944
	보유 비율 (단위: %)	44.2	15.4	5.2	0.1	50.3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152,408	122,189	92,434	6,556	180,737
영유아 가구 DB 기준	전체 평균 (단위: 천원)	72,755	28,921	6,573	5	108,254
	보유 비율 (단위: %)	47.4	19.4	7.1	0.1	53.8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153,395	149,008	92,945	4,887	201,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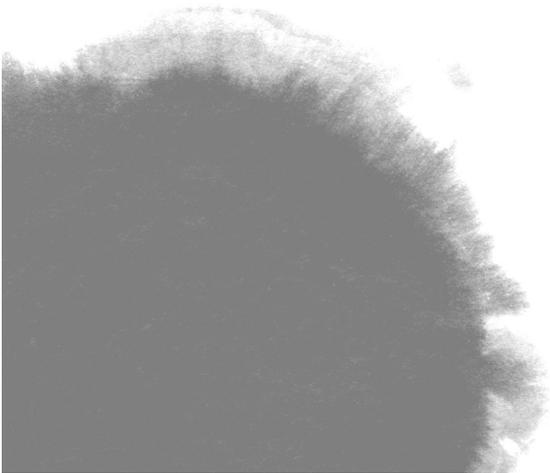
구분		기초공제 후 일반재산 시가표준액	기초공제 후 일반재산 연 16.68% 기준 소득환산액	기초공제 후 연 16.68% 기준 연간 소득환산액	기초공제 후 연 16.68% 기준 소득환산월액
영유아 & 부모 DB 기준	전체 평균 (단위: 천원)	71,023	11,847	12,320	1,027
	보유 비율 (단위: %)	42.1	42.1	76.4	76.4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168,564	28,116	16,119	1,343
영유아 가구 DB 기준	전체 평균 (단위: 천원)	87,114	14,531	15,032	1,253
	보유 비율 (단위: %)	45.1	45.1	77.7	77.7
	보유가구 평균 (단위: 천원)	193,119	32,212	19,356	1,613

- 영유아 및 부모 DB를 기준으로 분석한 재산항목 보유실태는 영유아 가구 기준 분석결과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낮게 나타났음
 - 이것은 영유아 및 부모 기준으로 보장단위 개편에 따른 가구원수 감소의 영향과 영유아의 부모에 비해 연령대가 높아 재산 보유 가능성이 높은 노인 및 기타 가구원 제외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음
 - 영유아 및 부모 기준 DB에서의 재산항목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관련 보유비율은 전체 가구원을 포함한 영유아 가구 DB에 비해 약 3%p 내외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를 고려한 환산액 보유비율은 감소폭이 약 1%p로 다소 줄었음
- 기초공제 후 일반재산 시가표준액의 전체 평균은 약 9천 1백만원에서 약 7천 1백만원으로 약 2천만원 감소하였으며, 보유가구의 기초공제 후 일반재산 시가표준액은 1억 8천1백만원에서 1억 6천9백만원으로 약 1천2백만원으로 감소함
 - 영유아 가구 DB에 대한 분석결과에 비해 영유아 및 부모 기준 DB에서 기초공제액 적용에 따른 일반재산가액 평균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구 평균의 경우 영유아 및 부모 기준 분석결과가 영유아 가구의 약 94.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두 가지(PL, RT) OECD 가구 균등화지수를 고려하여 산출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보유가구의 평균은 각각 1,656천원과 2,180천원으로 다소 낮았으나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가구 균등화지수를 고려한 전체 평균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이것은 보장단위를 개편하여 자산조사 대상 범위를 축소할 경우 전체적인 소득 및 재산항목별 보유수준이나 소득인정액은 감소하지만, 가구원 수를 고려한 소득인정액 수준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결과임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추정 및 적용을 위한 정책 모의분석



제4장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추정 및 적용을 위한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

제1절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 및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추정을 위한 정책 모의분석

1. 소득인정액 산정 및 선정기준 추정을 위한 모의분석 시 쟁점

가. 보장단위 : 영유아 가구 vs. 영유아 & 부모

- 영유아 가구의 가구원 전체를 보장단위(자산조사 대상 가구원 범위)로 설정하는 것은 기존 보육료 지원체계에 해당함
- 2009년 보육료 지원체계 및 선정방식 개편방안 마련 시,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부모로 한정하고 조부모를 제외한 ‘영유아와 부모’를 중심으로 보장단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함
 -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출 및 분포 모의분석 시 보장단위와 관련해 두 가지 유형을 동시에 고려함
 -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분석 DB 구축과 소득 및 재산 보유실태 기초분석부터 두 가지 보장단위를 사전에 고려하여 비교 분석함

나. 재산의 소득환산율 : 연 5% vs. 연 16.68%

- 현행 보육료 지원체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방식과 차이를 보이는 중요한 부분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 시 적용되는 환산율의 차이임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을 준용하지만, 각 유형별 재산의 소득환산율의 1/3만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수준의 1/3에 해당하는 금액만 적용하고 있음

구분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기초생활보장	월 4.17%	월 6.26%	월 100%
보육료 지원	월 4.17% / 3	월 6.26% / 3	월 100% / 3
기초노령연금	연 5% (월 0.41%)		

- 반면에, 2008년 시행되어 전체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준 보편적인 제도로서, 급여대상 선정 시 소득인정액 개념을 동일하게 사용하면서도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 시 시장이자율 수준과 유사하게 연 5%의 환산율을 재산의 유형에 상관없이 적용하고 있음

- 이러한 환산율은 현행 보육료 지원체계의 환산율 연 16.68%의 1/3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소득인정액 산출 시 보유재산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이 전체 영유아 가구의 50%로 확대되고 부분 지원대상이 전체 영유아 가구의 70% 수준까지 확대되는 등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하게 보편적 보육료 지원체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중요하게 고려함

- 현행 환산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과 재산 유형에 상관없이 기초노령연금 수준(연 5%)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함
- 환산율을 하향 조정할 경우 영유아 가구의 재산 보유부분이 소득인정액 산출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게 되고, 분위별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 도출 시 기준을 오히려 낮출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결정함

다. 기초공제 적용여부 : 기초공제 미적용 vs. 현행 기초공제액 적용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 시 지역별 기초공제액 적용수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준용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2009년에는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2008년에 비해 다소 상향 조정되었음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8년 (만원)	3,800	3,100	2,900
2009년 (만원)	5,400	3,400	2,900

-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 모의분석 시 재산의 소득환산율 조정과 연계하여 기초공제액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와 2009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조정된 지역별 기초공제액 수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함

라.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 균등화 지수 미적용 vs. PL 균등화 지수 vs. RT 균등화 지수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를 ‘전체 영유아 가구 중 소득인정액 일정비율 이하의 가구’로 개편함에 따라, 소득인정액 분위별 분포로부터 하위 50%, 60%, 70%의 선정기준액을 각각 도출하기 위하여 가구균등화 지수의 적용을 고려함

- 본 연구에서는 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구규모에 상관없이 전체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를 통해 선정기준을 도출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함
- 다음으로 두 가지 유형의 OECD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가구 규모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는 소득인정액 수준을 균등하게 조정

하여 소득인정액의 분포를 통해 선정기준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두 가지 유형의 가구균등화 지수는, 먼저 가구원별 생활비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에서 적용하고 있는 가구균등화 지수(이하, 'PL 가구균등화 지수')와 빈곤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가구원수의 제공근 방식의 가구균등화 지수(이하, 'RT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분석함

□ OECD 가구균등화 지수의 기본모형

$$S^e = (A + \alpha B + \beta C)^e = (1 + \alpha(N-1) + \beta C)^e$$

(S: 조정된 가구규모, A: 가구주, B: 가구주 이외의 성인 수, C: 아동 수, N: 성인 수, α: 가구주 이외 성인의 생계비 비율 β: 아동의 생계비 비율, e: 균등 탄력성)

○ 가구원별 생활비 차이를 반영한 OECD 가구균등화 지수의 기본모형

$$S^e = (1 + 0.7(N-1) + 0.5C)^1$$

- 가구주 이외 성인의 생활비 비율(α)을 가구주의 70%, 아동의 생활비 비율(β)을 가구주의 50%로 조정하고, 균등탄력성(e)을 1로 반영한 모형에 해당함

- 1986년 발표된 OECD 보고서 『Living Conditions in OECD Countries: A Compendium of Social Indicators』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이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가구균등화 지수 (Mitchell, 1991)

- 가구원별 생활비 차이를 반영한 OECD 가구균등화 지수

가구규모	1인가구 (성인1)	2인가구 (성인2)	3인가구 (성인2+아동1)	4인가구 (성인2+아동2)
S^e	1	1.7	2.2	2.7
균등화지수	0.3704	0.6296	0.8148	1

주: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구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 및 발표 시에 적용되고 있는 가구 균등화 지수로,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 이후 이러한 균등화지수에 맞추기 위해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2009년부터 동일한 가구균등화 지수가 적용되고 있음
 -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아동 1인(성인의 50%)이 추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균등화 지수를 산출하여 적용하므로, 매년 9월 1일 최저생계비 발표 시 1인~6인 가구까지 발표하고 7인 이상인 가구의 경우 1인 추가 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50%가 증가됨
 - 본 연구의 소득인정액 모의분석에서는 'PL 가구균등화 지수'로 구분하여 적용함

○ 가구원별 생활비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OECD 가구균등화 지수

$$S^e = (N + C)^{0.5}$$

- 가구원별 생활비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alpha, \beta = 1.0$), 단순히 전체 가구원 수에 균등탄력성(e) 0.5를 적용한 모형

- 가구원별 생활비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OECD 가구균등화 지수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S^e	1	1.4142	1.7320	2	2.2361	2.4495	2.6458
균등화 지수	0.5000	0.7071	0.8660	1	1.1180	1.2247	1.3229

- Buhmann 외(1988)의 연구에서는 미국과 유럽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34개 가구균등화 지수를 요약하였으며, 아동과 성인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가구원 수만을 고려하였음(김환준, 2002)
- 1990년대 이후 다음과 같은 OECD 각종 보고서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 가구균등화 지수임
 - Anthony B. Atkinson, Lee Rainwater, Timothy M. Smeeding,

1996,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OECD.

- Jean-Marc Burniaux, Michael F. Foster, Howard Oxley 외, 1998,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selected OECD Country,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 No.189, OECD.
- Michael F. Foster, 2000, Trends and Driving Factors in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the OECD Area, Labo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 No.42, OECD.

등 다수

- 국내 빈곤 및 불평등 연구이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구 균등화 지수로, 본 연구의 소득인정액 모의분석에서는 ‘RT 가구균등화 지수’로 분류하여 적용함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및 모의분석 모형

□ 보장단위 개편에 따라 구축된 두 가지 분석 DB(전체 가구를 포함한 가구 DB / 영유아와 부모로 구성된 DB)를 바탕으로 각 DB에 포함된 소득 및 재산항목별 공적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보장단위에 따른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후, 전체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위별 경계 및 분포를 모의분석함

□ 가구별 소득인정액 모의분석 시 소득인정액 산출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국세청 종합소득 월평균 + 월평균 공적연금 급여액 + 건강보험 보수월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시가표준액 - 기초공제액) × 환산율] + 자동차 연간세액 / 12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도출을 위한 소득인정액 분포 모의분석 시,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는 공적 행정자료의 소득 및 재산항목

종류	소득 및 재산 항목	건강보험 DB			비고		
		제공된 항목	원자료 제공	기준 연도			
소득	근로소득 (종합소득자)	근로소득(원/연간)	국세청	'07	소득금액		
	사업소득 (종합소득자)	사업소득(원/연간)			소득금액		
	임대소득 (종합소득자)	임대소득(원/연간)			소득금액		
	이자소득 (종합소득자)	이자소득(원/연간)			총 수입금액		
	배당소득 (종합소득자)	배당소득(원/연간)			총 수입금액		
	기타소득 (종합소득자)	기타소득(원/연간)	소득금액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연금급여액(원/연간)	각 연금공단	'08.11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우체국		
	근로소득 (근로자)	건강보험보수월액(원/월)	건강보험공단	'09.1	직장가입자만 해당		
기타 공적이전소득	-						
재산	일반재산(건축물)	건물(원/과세표준액)	해당 지자체	'08	과세표준액=0.65=시가표준액		
	일반재산(주택)	주택(원/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0.55=시가표준액		
	일반재산(토지)	토지(원/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0.65=시가표준액		
	일반재산(선박/항공기)	선박/항공기(원/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시가표준액		
	자동차	자동차 연간세액(원/연간)			자동차가액 자료 확보불가		
		자동차 자료건수			자동차 소득환산액의 대리변수로 활용		
	전월세보증금	-					
	금융재산	-					
골프장회원권	-						
부동산 취득 권리	-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부채	부 채	-					

□ 주요 쟁점을 고려한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 모의분석 모형
 - 앞서 살펴본 주요 쟁점별 비교를 통하여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도출을 위한 소득인정액 분포 모의분석 모형으로 4개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쟁점에 대한 결정에 따라 모형 A로부터 모형 D까지 순차적

으로 검토하였음

- 보장단위의 경우, 기존과 같이 영유아 가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분석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조사대상 가구원 범위의 축소 개편을 전제로 조부모를 제외한 영유아 및 부모를 기준으로 모의 분석을 실시(모형 D)하여 선정기준을 도출함
 - 기초공제액 적용여부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기초노령연금 수준인 연 5%로 하향 조정하는 것과 연계하여 기초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모형 A)을 분석하였으나,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기초공제액을 적용하는 방안(모형 B~D)을 중심으로 모의분석함
 - 재산의 소득환산율의 경우 연 5%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모형 A~B)을 분석하였으나,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선정방식 개편으로 재산 부분이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함에 따라 분위별 선정기준액이 2008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보다 낮아지는 문제로 인해 최종적으로 현행 환산율을 적용하는 방안(모형 C~D)을 중심으로 모의분석을 통해 선정기준을 도출함
 - 각 모형별로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와 PL 균등화 지수 / RT 균등화 지수를 적용한 경우를 모두 분석함
 - 이처럼, 현행과 같은 수준의 기초공제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선정기준을 도출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보장단위가 상이한 모형 C와 모형 D를 상호 비교하였음
 - 최종적으로 자산조사 대상 가구원의 범위(보장단위)를 영유아 가구의 전 가구원에서 '영유아 및 부모' 중심으로 개편함에 따라, 이에 적합하게 구축된 영유아 & 부모 DB를 모의분석한 모형 D를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액(분위별 소득인정액 경계값)을 도출함
- 모형 A
- (보장단위) 영유아 가구 DB 기준
 - (기초공제액) 미적용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5% 적용

- 가구균등화 지수
 - 가구균등화 지수 미적용
 - PL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 RT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 모형 B
 - (보장단위) 영유아 가구 DB 기준
 - (기초공제액) 적용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5% 적용
 - 가구균등화 지수
 - 가구균등화 지수 미적용
 - PL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 RT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 모형 C
 - (보장단위) 영유아 가구 DB 기준
 - (기초공제액) 적용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현행 보육료 지원 환산율 적용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유형별 소득환산율의 1/3 적용
 - 일반재산의 경우 월 4.17%의 1/3인 월 1.39%(연 16.68%)
 - 가구균등화 지수
 - 가구균등화 지수 미적용
 - PL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 RT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 모형 D
 - (보장단위) 영유아 및 부모 DB 기준
 - (기초공제액) 적용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현행 보육료 지원 환산율 적용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유형별 소득환산율의 1/3 적용
 - 일반재산의 경우 월 4.17%의 1/3인 월 1.39%(연 16.68%)
- 가구균등화 지수
 - 가구균등화 지수 미적용
 - PL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 RT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3. 선정기준 도출을 위한 소득인정액 분포 모의분석 결과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도출을 위하여 4가지 모형별로 소득인정액 분포에 대한 모의분석 결과를 검토하기에 앞서, 보장단위(자산조사 대상 가구원의 범위) 개편과 관련하여 영유아 가구 단위와 영유아 및 부모 단위에 따른 가구원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구원수	영유아 가구 단위 (N=2,193,826)	영유아 및 부모 단위 (N=2,006,234)
2인	6.3	7.6
3인	33.7	39.6
4인	39.3	43.0
5인	14.3	8.9
6인	4.5	0.8
7인 이상	1.9	0.1
합계	100.0	100.0

- 공통적으로 4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4인 가구가 각각 전체의 73%와 82.6%를 차지함
- 그러나, 보장단위를 축소 개편할 경우, 4인 이하 가구가 전체의 약 90.2%를 차지하여, 영유아 가구 전체 가구원을 대상으로 할 경우 (79.3%)에 비해 약 11%p 높아짐
 - 반면에, 5인 이상 가구는 20.7%에서 9.8%로 낮아짐

□ 모형 A (영유아 가구 단위 / 기초공제 미적용 / 환산율 연 5%)

구분	가구균등화 지수 미적용	PL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RT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보장단위	영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분석가구수	2,193,826	2,193,826	2,193,826
평균(천원)	2,981	1,142	1,526
중위(천원)	2,247	869	1,166
최빈(천원)	0	0	0
표준편차	4,355	1,624	2,175
최소(천원)	0	0	0
최대(천원)	1,032,620	322,694	461,802
5%	0	0	0
10%	0	0	0
15%	17	6	8
20%	110	43	58
25%	388	148	200
30%	809	303	412
35%	1,184	451	606
40%	1,545	592	800
45%	1,901	733	986
50%	2,247	869	1,166
55%	2,594	1,002	1,346
60%	2,950	1,139	1,526
65%	3,317	1,280	1,716
70%	3,723	1,436	1,921
75%	4,187	1,614	2,156
80%	4,747	1,830	2,440
85%	5,475	2,105	2,806
90%	6,510	2,499	3,327
95%	8,370	3,217	4,268

- 영유아 가구 단위 DB를 바탕으로 현행 기초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환산율 연 5%를 적용하여 모의분석된 소득인정액 분포에 따르면
 - 공적 행정자료를 중심으로 가구규모를 균등하게 조정하지 않고 산출한 전체 영유아 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2,981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액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이 되는 하위 50% 수준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의 중위값은 2,247천원으로 나타났음

□ 모형 B (영유아 가구 단위 / 기초공제 적용 / 환산율 연 5%)

구분	가구균등화 지수 미적용	PL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RT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보장단위	영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분석가구수	2,193,679	2,193,679	2,193,679
평균(천원)	2,893	1,108	1,481
중위(천원)	2,162	836	1,123
최빈(천원)	0	0	0
표준편차	4,327	1,612	2,161
최소(천원)	0	0	0
최대(천원)	1,032,395	322,623	461,701
5%	0	0	0
10%	0	0	0
15%	5	2	2
20%	65	25	34
25%	275	104	141
30%	728	270	368
35%	1,100	419	567
40%	1,474	562	758
45%	1,821	703	944
50%	2,162	836	1,123
55%	2,506	968	1,299
60%	2,852	1,102	1,478
65%	3,214	1,241	1,663
70%	3,609	1,394	1,863
75%	4,066	1,569	2,095
80%	4,618	1,782	2,375
85%	5,341	2,054	2,738
90%	6,365	2,445	3,255
95%	8,213	3,156	4,188

— 한편, 모형 A와 유사하지만, 영유아 가구 단위 DB를 바탕으로 현행 기초공제액 수준을 적용하여 모의분석을 실시한 모형 B의 소득인정액 분포를 살펴보면,

- 전체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균등화 지수를 반영하지 않고 산출한 소득인정액의 평균은 2,893천원으로 나타나, 기초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모형 A(2,981천원)에 비해 88천원 낮았으며, 전액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중위값 역시 2,162천

원으로 모형 A(2,247천원)보다 85천원 낮게 나타났음

- 선정기준 도출을 위한 가구균등화 지수의 적용 필요성
 - 현행 보육료 지원체계의 선정기준이 소득인정액 개념 중에 재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3인 이상의 가구부터 가구규모별로 선정기준이 각각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전체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위별 분포가 아니라 PL 또는 RT 가구균등화 지수에 의해 균등 조정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기준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모형 A와 B에 의해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개편을 위한 선정기준을 도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절하지 않음
 - PL 또는 RT 가구균등화 지수에 의해 균등화된 소득인정액 분포로부터 도출된 선정기준이 2009년 7월 개편 전의 부분 지원대상 (3~5층) 선정기준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 이것은 기존 수급대상 변동, 특히 수급탈락이나 지원수준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의 긍정적인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음
 - 예를 들어, 4인가구 기준으로 30%의 보육료를 지원받았던 5층의 선정기준은 2008년까지 398만원이었으나, 2009년 7월 확대 개편 이후 동일한 수준의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되는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의 선정기준은, 모형 B의 모의분석 결과 PL 또는 RT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시 각각 376만원과 373만원으로 오히려 낮아짐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 상황의 변화가 없는 특정 가구가 보육료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탈락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함

• PL 가구균등화 지수 (2009년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4인가구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0.370	0.630	0.815	1.000	1.185	1.370
1인가구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1.0	1.7	2.2	2.7	3.2	3.7

• RT 가구균등화 지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4인가구 기준	0.500	0.707	0.866	1.000	1.118	1.225
1인가구 기준	1.000	1.414	1.732	2.000	2.236	2.449

• 기존 보육료 지원체계에 의한 2008년 선정기준

지원대상	선정기준 구분	지원 비율	2008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만원)			
			3인이하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전액 (100%)	-	-	-	-
2층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 이하		123	151	178	205
3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부분 (80%)	178	199	210	230
4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	부분 (60%)	250	278	294	322
5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100% 이하	부분 (30%)	357	398	420	460

□ 결과적으로, PL 또는 RT 가구균등화 지수를 반영하더라도 영유아 가구 단위로 연 5%의 환산율을 공통적으로 적용한 모형 A 또는 B에 의해 선정기준을 도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보육료 지원제도가 지향하고 있는 보편성의 확대 측면에서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수준(연 5%)으로 보육료 지원 체계의 환산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였으나 이것은 기존 보육료 지원체계의 선정기준액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못함
-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2008년에 처음으로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시장이자율 수준으로

적용하여 선정기준을 도출한 반면, 보육료 지원제도는 기존에 적용된 지원체계 및 선정기준액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 모형 C (영유아 가구 단위 / 기초공제 적용 / 환산율 연 16.68%)

구분	가구균등화 지수 미적용	PL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RT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보장단위	영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분석가구수	2,193,679	2,193,679	2,193,679
평균(천원)	3,741	1,419	1,902
중위(천원)	2,491	966	1,294
최빈(천원)	0	0	0
표준편차	6,794	2,469	3,335
최소(천원)	0	0	0
최대(천원)	1,226,792	457,055	580,538
5%	0	0	0
10%	0	0	0
15%	5	2	3
20%	71	28	37
25%	442	169	227
30%	950	365	493
35%	1,357	523	702
40%	1,742	677	907
45%	2,115	822	1,102
50%	2,491	966	1,294
55%	2,871	1,114	1,491
60%	3,273	1,269	1,698
65%	3,725	1,442	1,927
70%	4,245	1,640	2,191
75%	4,871	1,873	2,504
80%	5,646	2,162	2,891
85%	6,657	2,541	3,397
90%	8,174	3,107	4,152
95%	11,208	4,236	5,664

— 재산의 소득환산율과 관련된 모형 A와 B의 모의분석 결과에 따라, 모형 C와 D에서는 환산율을 현행 보육료 지원체계와 동일한 수준(기초생활보장제도의 1/3)으로 적용하여 분석함

- 그러나,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도출 및 선정방식 개편으로 인해 이처럼 환산율을 하향 조정하지 않는 것이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는 영유아 가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님
 - 기존 선정기준의 경우, 전체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 및 수준과 상관없이 통계청 가계조사자료에 의해 외생적으로 결정된 것이므로 환산율이 낮아질수록 유리함
 - 반면, 개편된 선정기준은 전체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위별 분포로부터 도출되므로 환산율의 조정은 선정기준의 변화를 가져 오지만 지원대상 규모의 감소를 가져오지는 않으며, 소득과 재산 가운데 상대적으로 재산 비중이 높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높게 산정함으로써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형평성이나 지원가구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현행 보장단위(영유아 가구 단위 DB)와 기초공제액, 환산율 수준을 유지하여 모의분석을 실시한 모형 C의 소득인정액 분포를 살펴보면,
 - 전체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지 않고 산출한 소득인정액 평균은 3,741천원으로, 환산율(연 5%) 이외에 동일한 조건에서 모의분석한 모형 B(2,893천원)에 비해 848천원 높게 나타났음
 - 전액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중위값(하위 50%) 역시 2,491천원으로 모형 B의 2,162천원보다 329천원 높아졌음
- PL 가구균등화 지수와 RT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모의분석한 균등조정 소득인정액의 분포를 살펴보면,
 - PL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한 소득인정액 평균과 중위값(하위 50%)은 각각 1,419천원과 966천원이었으며, 부분 지원대상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하위 60%와 70%의 소득인정액은 1,269천원과 1,640천원으로 나타남
 - RT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소득인정액 평균과 중위값(하위 50%)은 1,902천원과 1,294천원, 하위 60%와 70%

역시 1,698천원과 2,191천원으로 나타나 PL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한 결과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음

□ 모형 D (영유아 및 부모 단위 / 기초공제 적용 / 환산율 연 16.68%)

– 다음으로,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사항 중 보장단위(조사대상 가구의 범위) 축소를 고려한 모형 D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봄

- 모형 D는 보장단위를 제외한 기초공제 및 환산율 적용에 있어서 모형 C와 동일하게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함

구분	가구균등화 지수 미적용	PL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RT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보장단위	영유아&부모	영유아&부모	영유아&부모
분석가구수	2,006,234	2,006,234	2,006,234
평균(천원)	3,495	1,406	1,851
중위(천원)	2,408	981	1,291
최빈(천원)	0	0	0
표준편차	5,862	2,304	3,044
최소(천원)	0	0	0
최대(천원)	1,226,792	383,372	548,638
5%	0	0	0
10%	0	0	0
15%	0	0	0
20%	52	21	28
25%	328	131	174
30%	880	351	465
35%	1,284	519	689
40%	1,673	681	898
45%	2,041	833	1,098
50%	2,408	981	1,291
55%	2,777	1,132	1,490
60%	3,162	1,289	1,696
65%	3,586	1,462	1,922
70%	4,079	1,660	2,181
75%	4,665	1,893	2,487
80%	5,394	2,180	2,868
85%	6,339	2,558	3,363
90%	7,728	3,112	4,088
95%	10,458	4,193	5,514

- 영유아와 부모를 기준으로 가구원수를 고려하지 않고 산출한 결과, 평균 소득인정액은 3,495천원으로 모형 C(3,741천원)와 비교할 경우 246천원 낮아졌으며 이러한 결과는 보장단위 개편에 따른 가구원의 범위 축소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전액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중위값(하위 50%) 역시 2,408천원으로 모형 C(2,491천원)에 비해 83천원 낮았으나 그 차이는 평균에 비해 크지 않았음
- PL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모의분석한 균등조정 소득인정액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PL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한 소득인정액 평균과 중위값(하위 50%)은 각각 1,406천원과 981천원으로 보장단위 개편 전인 모형 C(1,419천원, 966천원)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평균은 다소 낮게 중위값은 다소 높아졌음 981천원(966천원)이었음
 - 부분 지원대상 선정기준인 하위 60%와 70%의 소득인정액은 1,289천원과 1,660천원으로 모형 C(1,269천원, 1,640천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음
- RT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모의분석한 균등조정 소득인정액의 분포를 살펴보면,
 - RT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소득인정액 평균과 중위값은 1,851천원과 1,291천원으로 앞서 PL 균등화 지수 적용 결과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모형 C(1,902천원, 1,294천원)보다 약간 낮거나 유사하게 나타났음
 - 하위 60%와 70%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역시 1,696천원과 2,181천원으로 모형 C(1,698천원, 2,191천원)와 유사하였음

4.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안) 도출

- 분석 모형 중 공적 행정자료를 중심으로 구축된 전체 ‘영유아 가구’ 및 ‘영유아와 부모’ DB⁴⁾를 대상으로 현행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에서 적용된 지역별 기초공제(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및 환산율(연 16.68%, 월 1.39%)을 적용
 -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다양한 방식(가구규모 미반영 방식,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에 의한 가구규모 반영 방식)에 의해 소득인정액 하위 50%, 60%,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도출
 - 본 연구에서는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에 의해 가구규모를 반영하는 방안을 선택하였으며, 최종 선정기준으로서 PL 및 RT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한 결과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2절과 3절에서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의 개편에 따른 기존 보육료 지원 수급가구의 변동에 대한 모의분석 및 지원대상 영유아 규모와 이에 따른 예산 추정결과를 검토하여 결정함
 - 두 가지 방식의 OECD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균등 조정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소득 하위 50%, 60%,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을 확인한 후, 이를 다시 각 가구균등화 지수에 따라 가구원수별로 환산하여 최종 보육료 선정기준을 도출하게 됨
 - 이를 통해,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중 전액 지원대상(무상보육)의 선정기준 이외에도 기존 보육료 지원제도에서 3~5층에 해당하는 부분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도출하며, 각각의 선정기준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됨
 - 또한, 향후 단계적인 보육료 지원대상 추가 확대를 위하여 전체 영유아 가구의 80%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수준까지 도출 가능

4) 건강보험 공적 행정자료 특성 상 DB 구축 시 누락된 금융재산, 전월세보증금, 부채 등은 2010년 이후 선정기준 재조정을 위한 모의분석 시 보완되어야 할 과제임

□ 보장단위 개편에 따른 소득인정액 분포 모의분석 결과 비교

- (현행) 모형 C : 영유아 가구 ⇄ (개편) 모형 D : 영유아 및 부모
- 보장단위(조사대상 가구원의 범위) 축소에 따라, 모형 D를 중심으로 가구균등화 지수(PL/RT)를 적용결과를 비교하여 선정기준(안) 도출

구분	가구균등화 지수 미적용		PL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RT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영유아&부모	영유아 가구	영유아&부모	영유아 가구	영유아&부모	영유아 가구
분식가구수	2,006,234	2,193,679	2,006,234	2,193,679	2,006,234	2,193,679
평균(천원)	3,495	3,741	1,406	1,419	1,851	1,902
중위(천원)	2,408	2,491	981	966	1,291	1,294
최빈(천원)	0	0	0	0	0	0
표준편차	5,862	6,794	2,304	2,469	3,044	3,335
최소(천원)	0	0	0	0	0	0
최대(천원)	1,226,792	1,226,792	383,372	457,055	548,638	580,538
5%	0	0	0	0	0	0
10%	0	0	0	0	0	0
15%	0	5	0	2	0	3
20%	52	71	21	28	28	37
25%	328	442	131	169	174	227
30%	880	950	351	365	465	493
35%	1,284	1,357	519	523	689	702
40%	1,673	1,742	681	677	898	907
45%	2,041	2,115	833	822	1,098	1,102
50%	2,408	2,491	981	966	1,291	1,294
55%	2,777	2,871	1,132	1,114	1,490	1,491
60%	3,162	3,273	1,289	1,269	1,696	1,698
65%	3,586	3,725	1,462	1,442	1,922	1,927
70%	4,079	4,245	1,660	1,640	2,181	2,191
75%	4,665	4,871	1,893	1,873	2,487	2,504
80%	5,394	5,646	2,180	2,162	2,868	2,891
85%	6,339	6,657	2,558	2,541	3,363	3,397
90%	7,728	8,174	3,112	3,107	4,088	4,152
95%	10,458	11,208	4,193	4,236	5,514	5,664

□ PL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에 따른 선정기준(안)

－ PL 균등화 지수에 의한 소득인정액 하위 50%, 60%, 70%

구분	모형 C (영유아 가구 단위)	모형 D (영유아 및 부모 단위)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하위 50%	966,000	981,000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하위 60%	1,269,000	1,289,000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하위 70%	1,640,000	1,660,000

－ PL 가구균등화 지수 (2009년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원)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4인가구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0.370	0.630	0.815	1.000	1.185	1.370
1인가구 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1.0	1.7	2.2	2.7	3.2	3.7

－ 모형 C(영유아 가구 단위) : PL 균등화지수에 의한 선정기준(안)

50%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인정액	1,642,200	2,125,200	2,608,200	3,091,200	3,574,200	4,057,200
60%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인정액	2,157,300	2,791,800	3,426,300	4,060,800	4,695,300	5,329,800
70%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인정액	2,788,000	3,608,000	4,428,000	5,248,000	6,068,000	6,888,000

－ 모형 D(영유아 및 부모 단위) : PL 균등화지수에 의한 선정기준(안)

50%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인정액	1,667,700	2,158,200	2,648,700	3,139,200	3,629,700	4,120,200
60%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인정액	2,191,300	2,835,800	3,480,300	4,124,800	4,769,300	5,413,800
70%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인정액	2,822,000	3,652,000	4,482,000	5,312,000	6,142,000	6,972,000

□ RT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에 따른 선정기준(안)

－ RT 균등화 지수에 의한 소득인정액 하위 50%, 60%, 70%

구분	모형 C (영유아 가구 단위)	모형 D (영유아 및 부모 단위)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하위 50%	1,294,000	1,291,000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하위 60%	1,698,000	1,696,000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하위 70%	2,191,000	2,181,000

－ RT 가구균등화 지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4인가구 기준	0.500	0.707	0.866	1.000	1.118	1.225
1인가구 기준	1.000	1.414	1.732	2.000	2.236	2.449

－ 모형 C(영유아 가구 단위) : RT 균등화지수에 의한 선정기준(안)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50% 소득인정액	1,829,992	2,241,274	2,588,000	2,893,472	3,169,640	3,423,602
60% 소득인정액	2,401,335	2,941,022	3,396,000	3,796,843	4,159,234	4,492,486
70% 소득인정액	3,098,542	3,794,923	4,382,000	4,899,225	5,366,832	5,796,841

－ 모형 D(영유아 및 부모 단위) : RT 균등화지수에 의한 선정기준(안)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50% 소득인정액	1,825,750	2,236,078	2,582,000	2,886,764	3,162,291	3,415,665
60% 소득인정액	2,398,506	2,937,558	3,392,000	3,792,371	4,154,335	4,487,194
70% 소득인정액	3,084,400	3,777,603	4,362,000	4,876,864	5,342,337	5,770,384

□ 2008년 선정기준과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선정기준(안) 비교

－ 2008년 선정기준 : 영유아 가구 단위

지원 대상	지원계층 구분	지원 비율	2008년 선정기준 (단위: 만원)			
			3인이하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전액 (100%)	-	-	-	-
2층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 이하		123	151	178	205
3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부분 (80%)	178	199	210	230
4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	부분 (60%)	250	278	294	322
5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100% 이하	부분 (30%)	357	398	420	460

－ 2009년 선정기준(안) : 영유아 및 부모 단위 / PL 가구균등화 지수

지원 대상	선정기준 구분	지원 비율	2009년 선정기준(안) (단위: 만원)			
			3인이하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층	전체 영유아 가구 소득인정액 하위 50%	전액 (100%)	216	265	314	363
2층	전체 영유아 가구 소득인정액 하위 50~60%	부분 (60%)	284	348	412	477
3층	전체 영유아 가구 소득인정액 하위 60~70%	부분 (30%)	365	448	531	614

－ 2009년 선정기준(안) : 영유아 및 부모 단위 / RT 가구균등화 지수

지원 대상	선정기준 구분	지원 비율	2009년 선정기준(안) (단위: 만원)			
			3인이하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층	전체 영유아 가구 소득인정액 하위 50%	전액 (100%)	224	258	289	316
2층	전체 영유아 가구 소득인정액 하위 50~60%	부분 (60%)	294	339	379	415
3층	전체 영유아 가구 소득인정액 하위 60~70%	부분 (30%)	378	436	488	534

제2절 선정기준(안) 적용 시 기존 보육료 지원 수급가구의 자격변동 예측을 위한 모의분석

□ 여기서는 앞서 보장단위 개편을 고려하여 영유아 및 부모 단위 DB를 기초로 모의분석한 결과(모형 D)에 의해 도출된 선정기준(안)을 적용할 경우, 기존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가구 변동에 대한 모의분석을 실시하였음

- 보육료 지원체계 확대 개편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수급탈락 또는 지원수준의 감소 규모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 각종 민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 분석방법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안)과 선정방식 개편사항에 따라 기존 보육료 지원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하여 모의 적용을 실시하였음

- 새ول행정시스템과 e-보육 상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수급가구(약 52만8천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함
- 차등보육료 수급가구(1~5층, 404,530가구)를 대상으로 선정방식 개편 및 선정기준(안) 모의적용에 따른 지원계층을 구분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함

구분	차등보육료 1층	차등보육료 2층	차등보육료 3층	차등보육료 4층	차등보육료 5층
가구	28,741	131,436	80,010	89,431	74,912

- 특히,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급자격 및 지원수준과 비교하여 오히려 탈락하거나 지원수준이 감소하는 가구의 규모를 예측

- 현재 수급가구 정보만 구축된 복지DB와 e-보육 시스템 상, 신규 신청 및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될 가구의 분석은 어려운 상황임

□ PL 균등화지수에 의한 선정기준(안) 모의적용에 따른 기존 보육료 지원

수급가구의 자격변동 모의분석 결과

- 현행 차등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30.2%가 전액지원 대상으로 지원수준이 증가할 만큼,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보장단위 및 선정방식 개편에 따라 보육료 지원 수급가구에서 탈락 가능한 가구는 전체의 2.2%이며, 지원수준 감소가 예상되는 가구를 포함할 경우 현행 보육료 지원 수급가구의 3.3%가 다양한 형태로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

구분 기준	PL 균등화지수 적용 선정기준(안)에 따른 기준 수급가구 모의적용				전체 (가구)
	개편 70% 초과 (수급탈락)	60~70% (30%지원)	50~60% (60%지원)	50%이하 (전액지원)	
차등보육료 1층 (전액지원)	7	17	71	28,646	28,741
차등보육료 2층 (전액지원)	58	146	484	130,748	131,436
차등보육료 3층 (80%지원)	62	169	1,291	78,488	80,010
차등보육료 4층 (60%지원)	238	2,109	45,496	41,588	89,431
차등보육료 5층 (30%지원)	8,647	42,679	21,575	2,011	74,912

- 수급탈락 가구를 포함한 지원수준 감소 : 총 13,299가구 (3.3%)
 - 수급탈락 : 9,012가구 (2.2%)
 - 지원수준 감소 : 4,287가구 (1.1%)
- 전액지원 가구를 포함한 지원수준 증가 : 총 143,662가구 (35.5%)
 - 전액지원으로 증가 : 122,087가구 (30.2%)
 - 지원수준 증가 : 21,575가구 (5.3%)
- 지원수준 유지 : 247,569가구 (61.2%)

□ RT 균등화지수에 의한 선정기준(안) 모의적용에 따른 기존 보육료 지원
수급가구의 자격변동 모의분석 결과

구분 기준	개편	RT 균등화지수 적용 선정기준(안)에 따른 기존 수급가구 모의적용				전체 (가구)
		70% 초과 (수급탈락)	60~70% (30%지원)	50~60% (60%지원)	50%이하 (전액지원)	
차등보육료 1층 (전액지원)	8	18	62	28,653	28,741	
차등보육료 2층 (전액지원)	47	138	432	130,819	131,436	
차등보육료 3층 (80%지원)	53	155	827	78,975	80,010	
차등보육료 4층 (60%지원)	202	1,155	41,295	46,779	89,431	
차등보육료 5층 (30%지원)	5,452	42,308	25,197	1,955	74,912	

- 수급탈락 가구를 포함한 지원수준 감소 : 총 8,549가구 (2.1%)
 - 수급탈락 : 5,762가구 (1.4%)
 - 지원수준 감소 : 2,787가구 (0.7%)
- 전액지원 가구를 포함한 지원수준 증가 : 총 152,906가구 (37.8%)
 - 전액지원으로 증가 : 127,709가구 (31.6%)
 - 지원수준 증가 : 25,197가구 (6.2%)
- 지원수준 유지 : 243,075가구 (60.1%)

□ 가구균등화 지수에 따른 모의적용 결과 비교

구분	합계 (가구)	현행 보육료 지원계층별 수급탈락 예상가구				
		1층	2층	3층	4층	5층
PL 균등화지수 적용 선정기준(안)	9,012	7	58	62	238	8,647
RT 균등화지수 적용 선정기준(안)	5,762	8	47	53	202	5,452

- 선정기준 확대 및 선정방식 개편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육료 지원의
수급가구 가운데 수급탈락이 예상되는 가구는, RT 균등화 지수 적
용 시 5,762가구(1.4%)로 PL 균등화 지수 적용 시(9,012가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수급탈락 가구의 거의 대부분이 기존 차등보육료 5층에 해당하는 가구로 나타났으며, 선정방식 개편으로 인한 금융재산조회에 따라 금융재산 보유분이 확인될 경우 추가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수급탈락 뿐만 아니라, 지원수준 감소가구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RT 균등화 지수 적용 시 8,549가구로 약 2.1%에 불과한 반면, PL 균등화 지수 적용 시에는 3.3%(13,299가구)까지 증가함
 - 따라서, 기존 보육료 지원 수급가구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히 수급탈락 등 민원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RT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한 선정기준(안)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보장단위(조사대상 가구의 범위 축소) 개편으로 인해 보유한 소득 및 재산이 없는 조부모가 제외됨에 따라 가구원수 축소 효과로 인해 선정기준이 낮아져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지원수준이 감소하게 될 가구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이처럼 보장단위 개편과 관련하여 탈락하거나 지원수준이 감소할 수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등의 조치가 필요함

제3절 선정기준(안) 적용에 따른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및 예산규모 변화 관련 모의분석

- 다음으로 앞서 가구균등화 지수(PL/RT)에 따라 제시한 선정기준(안)이 적용될 경우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의 규모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 관련 예산규모는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모의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함

1.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률 가정

- 앞서 도출된 선정기준(안)을 적용하여 개별 가구마다 산출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모의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전체 영유아 가구 중 전액 및 부분 지원대상 가구와 영유아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유아 규모 및 이에 따른 예산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연령별 & 소득계층별 보육시설 이용률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보육료 지원계층별 보육시설 이용률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여, 보건복지가족부가 2008년말 기준으로 작성한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률을 반영하여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규모와 예산을 분석함

2008년말	0세	1세	2세	0~2세	3세	4세	5세	0~5세
영유아 수	459,207	484,462	445,504	1,389,173	435,740	475,929	495,401	2,796,243
이용 영유아수	99,547	160,739	242,908	503,194	230,381	193,719	176,122	1,103,416
지원 영유아수	53,072	99,423	152,076	304,571	144,917	123,015	122,857	695,360
이용률	21.68%	33.18%	54.52%	36.22%	52.87%	40.70%	35.55%	39.46%
지원율	11.56%	20.52%	34.14%	21.92%	33.26%	25.85%	24.80%	24.87%

2.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보육료 수급 영유아 규모 및 예산 추정

-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및 선정방식 개편 이후 보육료 지원 대상 영유아 규모 및 2009년 하반기 소요예산(안)

보육료 전액지원 영유아	보육료 전액 및 부분지원 전체 영유아	소요예산 (국고기준 / 6개월)
59만명	87만명	6,063억원

□ 선정기준(안)에 따른 보육료 지원 영유아 및 예산 규모 종합검토

－ PL 균등화 지수에 의한 선정기준(안) 모의적용 결과

- 자동차 배기량 기준 완화(여부5)에 따라 보육료 전액지원 영유아 규모는 48만~59만명, 전체 지원대상 영유아 규모는 77만6천명~92만7천명으로 추정됨
- 이에 따른 2009년 하반기 소요예산은 기존 자동차 배기량 기준(2000cc) 유지 시 5,764억원, 선정방식 개편내용과 같이 2,500cc로 완화할 경우 6,130억원, 배기량 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6,66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구분	보육료 전액지원 영유아	보육료 전액 및 부분지원 영유아	소요예산 (국고기준 / 6개월)
배기량 기준 폐지	59만 7천명	92만 7천명	6,662억원
2500cc 기준 완화	52만 8천명	83만 8천명	6,130억원
2000cc 기준 유지	48만 2천명	77만 6천명	5,764억원

－ RT 균등화 지수에 의한 선정기준(안) 모의적용 결과

- 자동차 배기량 기준 완화 여부에 따라 보육료 전액지원 영유아 규모는 48만~59만명, 전체 지원대상 영유아 규모는 77만3천명~92만2천명으로 약간 적은 것으로 추정됨
- 이에 따른 2009년 하반기 소요예산은 기존 자동차 배기량 기준(2000cc) 유지 시 5,749억원, 2,500cc로 완화 시 6,111억원, 배기량 기준 폐지 시 6,638억원으로 추정됨

구분	보육료 전액지원 영유아	보육료 전액 및 부분지원 영유아	소요예산 (국고기준 / 6개월)
배기량 기준 폐지	59만 3천명	92만 2천명	6,638억원
2500cc 기준 완화	52만 4천명	83만 5천명	6,111억원
2000cc 기준 유지	47만 9천명	77만 3천명	5,749억원

5) 전체 영유아가구의 84.9%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가구의 약 26.3%가 2000cc 이상 자동차를, 15.4%가 2500cc 자동차를 보유함

-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률 증가 가정 시 모의분석 결과
- 전체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도출한 선정기준에 따라 전액지원 및 부분지원의 대상이 되는 영유아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제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되는 영유아의 규모와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보육시설 이용률의 증감에 영향을 받게 됨
 - 보육시설 이용률은 각종 사회복지정책에서 수급률(take-up rate) 또는 신청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 앞서, 2008년말 기준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산출한 보육시설 이용률 가정을 반영하여 분석하였으나,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전액지원 대상 확대 및 선정방식 간소화 등으로 인해 보육시설 이용률은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폐지된 상황을 기준으로 보육시설 이용률이 현재 수준보다 10%와 20% 상승할 경우, 보육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유아 규모 및 예산을 추정함
 -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률이 10% 상향 조정될 경우 전액 지원대상 영유아 규모는 약 6만명 정도 증가하며, 국고 기준 6개월분 소요 예산은 약 660억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가 상향 조정된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음

구분		보육료 전액지원 영유아	보육료 전액 및 부분지원 영유아	소요예산 (국고기준 / 6개월)
10% 증가	PL 균등화지수 선정기준(안)	65만 7천명	100만 6천명	7,328억원
	RT 균등화지수 선정기준(안)	65만 2천명	100만 1천명	7,302억원
20% 증가	PL 균등화지수 선정기준(안)	71만 7천명	108만 5천명	7,994억원
	RT 균등화지수 선정기준(안)	71만 1천명	107만 9천명	7,965억원

□ 최종 검토결과

- PL 균등화 지수 및 RT 균등화 지수를 사용한 선정기준(안)과 함께 선정방식 중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2000cc → 2500cc)에도 당초 계획된 보육료 지원 영유아 및 소요 예산의 규모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및 지원대상 확대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앞서, 선정기준(안)에 따른 기존 보육료 수급가구의 변동 관련 모의 분석 결과에서, RT 균등화 지수에 의한 선정기준 모의적용 시 수급 탈락이나 지원수준 감소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결과를 고려하면, RT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도출했던 선정기준을 최종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제4절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결정 및 선정방식 개편 쟁점

1.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안) 비교 및 결정

- 선정기준 도출과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인 보장단위 개편여부, 기초공제 적용여부, 재산의 소득환산율,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모의분석 모형(A~D)을 설정하였음
- 이를 통해,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등 운영체계 개편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모형 D의 소득인정액 분포 모의분석 결과 중 OECD 가구균등화 지수의 두 가지 유형(PL 가구균등화 지수 / RT 가구균등화 지수)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분포로부터 하위 50~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안)을 도출하였음
 - 보장단위(자산조사 대상 가구의 범위) : 영유아 및 부모
 - 기초공제 : 현행 보육료 지원체계의 지역별 기초공제액 적용

- 재산의 소득환산율 : 현행 보육료 지원체계의 환산율 적용 (기초 생활보장제도 재산유형별 환산율의 1/3)

□ 선정기준(안) 비교 및 최종 결정

– (1안) 모형 D & PL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구 분 (만원)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하위 50%	219	265	314	363
소득인정액 하위 60%	284	348	412	477
소득인정액 하위 70%	365	448	531	614

- 전액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하위 50%의 선정기준은 265만원으로 기존 보육료 지원체계 선정기준의 3층(80%지원)과 4층(60%지원) 사이에 위치
- 부분 지원대상 중 60%를 지원받는 하위 60% 선정기준은 348만원으로 4층(60%지원)과 5층(30%지원) 사이에 위치
- 부분 지원대상 중 30%를 지원받는 하위 70%(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상한)는 448만원으로 기존의 5층(30%지원) 선정기준인 427만원보다 21만원 상향 조정되는 수준

– (2안) 모형 D & RT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구 분 (만원)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하위 50%	224	258	289	316
소득인정액 하위 60%	294	339	380	415
소득인정액 하위 70%	378	436	488	534

- 전액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하위 50%의 선정기준은 258만원으로 역시 기존 선정기준의 3층과 4층 사이에 위치
- 부분 지원대상 중 60%를 지원받는 하위 60% 선정기준은 339만원으로 기존 4층과 5층 사이에 위치
- 부분 지원대상 중 30%를 지원받는 하위 70%(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상한)는 436만원으로 기존의 5층 선정기준보다 9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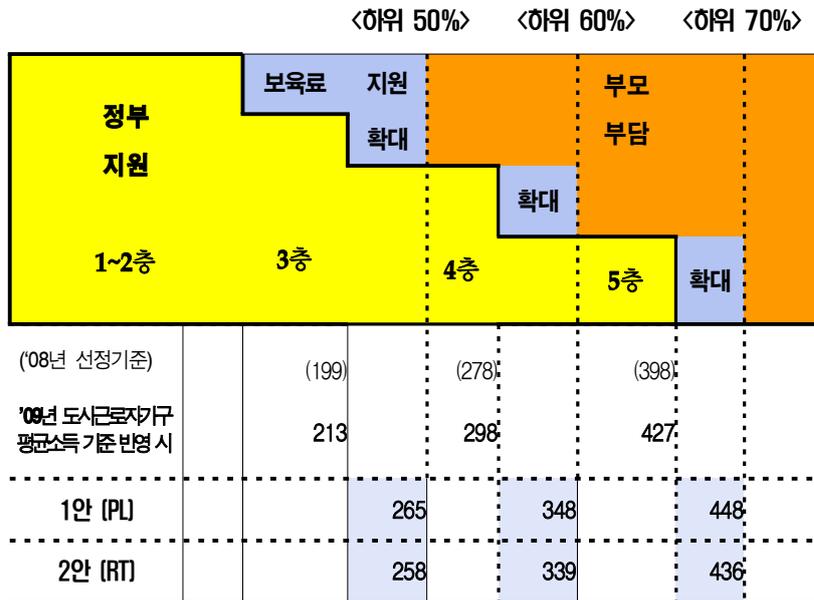
정도 상향 조정됨

－ 선정기준(안) 비교 검토

- 기존 선정기준과 비교할 때 두 선정기준(안) 모두 지원계층별로 상향 조정되므로 보육료 지원 확대의 정책목표를 구현할 수 있음
- 각각의 선정기준(안)은 두 가지 가구균등화 지수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1안(PL 균등화 지수)의 선정기준(안)의 소득인정액 수준은 4인 이상인 가구에서는 2안(RT 균등화 지수)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반면, 3인 이하의 경우에는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한편, 1안(PL)의 경우 현행 최저생계비의 가구균등화 지수를 그대로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5인 이상인 가구(전체 9.8%)의 하위 70% 선정기준에서 급격하게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는 반면, 보육료 지원 신청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3인 이하의 가구(47.2%)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반면, 2안(RT) 선정기준의 경우 3인 이하 가구에 유리하며, 5인 이상인 가구에서 1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여 선정 기준으로 보다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구분 (만 원)	3인	4인	5인	6인
(1안) 하위 70%	365	448	531	614
(2안) 하위 70%	378	436	488	534
'09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적용 시	377	436	438	518

□ 기존 보육료 지원체계(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기준)와 비교 (4인가구)



□ 선정기준 최종 결정 : 2안 (RT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 PL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한 1안의 경우, 5인 이상 가구에서 소득 인정액 하위 70%(보육료 30% 지원대상 선정기준 상한) 선정기준이 지나치게 높아지므로 선정기준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반면, 2안(RT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의 경우 전체 영유아 가구 중 비중이 높은 3인 이하 가구의 선정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오히려 유리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이 완만하게 상승하여 선정기준으로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장단위 등 선정방식의 개편에 따라 기존 보육료 지원 수급가구 가운데 수급탈락이나 지원수준 감소 등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격변동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가구규모가 8,549가구(2.1%)로 1안의 13,299가구(3.3%)보다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선정기준으로서 보다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규모 확대와 제도 개편이후 나타날 수 있는 보육시설 이용률 상승으로 인한 예산부족 현상을 고려할 때, 계획된 예산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2인(RT 가구균등화 지수)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2.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편 관련 쟁점

□ 보장단위 개편 : 조사대상 가구원 범위에서 조부모 제외

- 기존 보육료 지원체계에서는 가구원의 범위를 영유아 기준 2촌 이내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규정하여 조부모가 조사대상에 포함되므로 조부모의 소득 및 재산이 선정과정에 반영됨
 - 그러나, 이러한 보장단위의 적용 과정에서 조부모 동거사실 확인이 불가능함에 따라 편법으로 보육료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조부모의 주민등록 이전으로 가구원수 부풀리기,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거주자의 경우 별도 세대로 구성하여 조사 회피
 - 반면, 조부모의 소득 및 재산으로 인해 탈락되는 사례도 발생
 - 특히 실직, 폐업 등으로 조부모와 동거 시 조부모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해 탈락되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 존재
- 보장단위 개편을 통해 조사대상 가구원에서 조부모를 제외하고 영유아 및 부모를 중심으로 구성
 - 보육료 지원제도의 보편성 제고의 정책방향 속에 아동양육의 책임을 부모로 한정하고, 각종 편법과 불합리한 탈락 사례와 관련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음
 - 반면,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조부모가 가구원수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보장단위 개편 시점에서 민원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보장단위 개편으로 인한 탈락의 경우

유예기간 적용 등 민원 해소방안 필요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편내용 중 금융재산조회 실시 등의 요인으로 인해 단순히 보장단위 개편으로 조부모가 가구원수에서 제외되어 탈락하는 사례라고 단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

□ 자동차 배기량 기준 완화 : 2,000cc ⇄ 2,500cc

- 기존 보육료 체계에서 자동차 배기량 2,000cc 기준으로 재산유형이 승용차와 일반재산으로 구분되어 적용되는 소득환산율이 크게 달라져 수급탈락 및 형평성 문제 등 그 동안 다양한 민원들이 제기되었으며, 보편적 보육료 지원제도의 취지를 훼손
-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현재 영유아 가구의 자동차 보유실태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2,000cc에서 2,500cc로 완화
 - 향후, 보육료 지원대상 추가 확대과정에서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환산율(4.17% × 1/3)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 전체 영유아 가구의 85%가 자동차 보유(2,000cc 이상 보유가구 비율 22.3%, 2,500cc 이상 보유비율 13.1%)하고 있으며, 보편적 보육료 지원의 취지를 반영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자동차 배기량 기준 완화가 필요함
 - 또한, 다자녀(자녀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배기량 기준 폐지
 - 이를 통해, 자동차가액의 소득환산 과정에 대한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되, 배기량은 낮더라도 외제 차량이나 고가 차량 보유자가 보육료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오히려 제도의 수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함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인한 재정영향에 대한 사전분석 필요
- 재정영향 분석 : 자동차 배기량 기준에 따른 재정소요 비교
 - RT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한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자동차 배기량 2000cc 기준을 유지할 경우에 비해, 배기량 기준 폐지 시 2009년 하반기 동안 약 580억원(연간 약 1,160억원) 추가 소요

- 배기량 기준을 2,000cc에서 2,500cc로 완화할 경우 추가적으로 보육료 지원대상 약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약 360억원(연간 약 720억원) 추가 지원 가능

구분	2000cc 기준 유지 시	2500cc 기준 완화 시	배기량 기준 폐지 시
소득환산율 적용방안	2000cc 이상 자동차 : 100%×1/3 적용 2000cc 이상 자동차 : 4.17%×1/3 적용	2500cc 이상 자동차 : 100%×1/3 적용 2500cc 미만 자동차 : 4.17%×1/3 적용	모든 자동차 : 4.17%×1/3 적용
보육료지원 영유아 수	77만명	83만명	92만명
소요예산	5,749억원 소요 (6개월분)	6,111억원 소요 (6개월분)	6,637억원 소요 (6개월분)

□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선정방식 개편에 따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형평성 문제

-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선정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은 사업소득 관련 소득과약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임
- 일선 현장의 자산조사 및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업무 간소화를 위해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을 실사 중심에서 공적 행정자료 활용 중심으로 전환함
-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보수월액 자료가 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사업소득자의 경우 국세청이 제공하는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활용될 것임
 - 그러나, 과세에 있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소득과약을 차이,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국세청 사업소득 자료의 차이로 인해, 소득 인정액 하위 50%(전액지원 대상) 및 하위 50~70%(부분지원 대상) 선정 시, 소득이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노출되고 필요경비가 반영되지 않은 건강보험보수월액을 기초로 소득인정액이 산정되는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자에 비해 불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사업소득자 가구의 경우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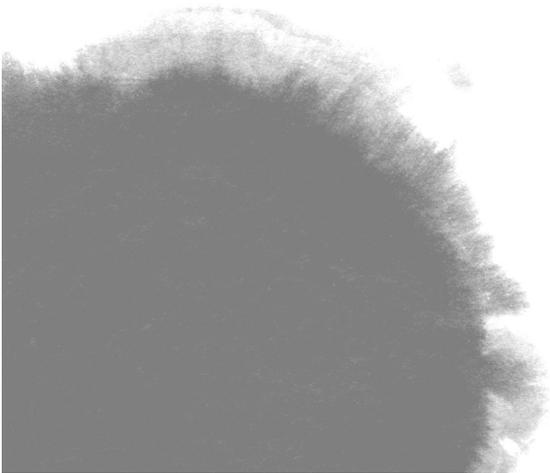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형평성 제고방안 :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적용
 - 보육료 신청가구에 대한 자산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업소득 정보를 소득과약률이 낮다는 이유로 보정계수를 활용하여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또 다른 민원을 유발할 수 있으며, 현행 소득세 체계의 소득과약 결과를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부적절함
 - 따라서,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조사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소득 관련 자료에 의한 조사결과를 활용하되,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방식의 적용을 검토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결
 - 소득세 과세에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 고려 및 근로유인 차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의 각종 복지제도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earnings disregard)를 적용하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규정이 있으며 2003년 이를 근거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현재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근로소득자에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자활소득공제 명목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보육료 지원제도와 유사한 준 보편적 제도로서, 전체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기초노령연금에서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월 39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이것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다면 우선적으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 대한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사업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
 - 이후 소득과약 여건의 개선 및 사업소득 과약률의 제고에 따라 모든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맞벌이가구에 대한 보육료 확대 지원, 근로유인 등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 이 때, 근로소득공제 적용방식(정액, 정률, 정액+정률 혼합방식,

자녀수에 따른 차등공제,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등공제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계할 수 있음

- 이때, 소득인정액 하위 50%에 대한 전액지원 및 50~70%까지의 부분지원이라는 목표와 예산제약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공제 시행을 전제로 하여 선정기준을 재조정해야 할 것임
 - 근로소득공제 적용대상,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방식과 공제수준을 우선적으로 확정한 이후, 이를 선정기준 도출 시 적용하여 재조정
- 또한, 최근 구축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소득인정액 개념 또는 소득항목에 대한 표준화 내용과 조화를 이루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시행방안



제5장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편 및 시행방안

제1절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개편 및 시행방안

□ 20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선정기준 개편 개요

- 2009년 7월부터 전체 영유아가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까지 차등보육료 전액지원(무상보육)이 확대됨에 따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영유아가구의 공적 행정자료를 기초로 정책 모의실험을 수행하여 소득인정액 기준의 가구규모 및 분위별 선정기준액을 산출
 - 그 동안 통계청의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을 사용하여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계층을 구분하였으나, 2009년 7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분위별 선정기준액에 따라 보육료 지원계층이 구분됨
 - 영유아가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50%까지는 전액을 지원받고, 소득인정액 하위 50~70% 계층은 차등적으로 보육료를 지원
- 한편, 선정기준 개편과 함께 그 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준용함에 따라 발생하였던 자산조사 업무부담 및 각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 및 재산항목에 대한 자산조사 방식을 공적 행정자료 중심으로 간소화 및 합리화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편의 주요 내용은 제2절에서 요약 제시함

□ 가구규모 및 지원계층별 선정기준

－ 전체 영유아가구의 소득 및 재산 관련 공적 행정자료를 기초로 모의 분석을 실시한 결과, 4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하위 50% 이하의 선정기준은 258만원, 소득인정액 하위 60%와 70%의 선정기준은 각각 339만원과 436만원으로 최종 결정함

- 보장단위는 영유아 및 그 부모와 영유아 기준 형제자매로, 이에 따라 가구원수가 결정됨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6인가구를 기준으로 1인 증가할 때마다 선정기준액을 30만원씩 상향 조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만원)	차등 보육료	소득하위 50%이하	224	258	289	316
		소득하위 60%이하	294	339	380	415
		소득하위 70%이하	378	436	488	534
		소득하위 70%초과	정부미지원시설이용 0~2세 아동 => 기본보육료 지원			
	만5세 (소득하위 70%이하)	378	436	488	534	
	두자녀 (소득하위 70%이하)	378	436	488	534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기준 연령

구분	기 준 일 자
만 0세	'08. 01. 01 이후 출생
만 1세	'07. 01. 01 ~ '07. 12. 31
만 2세	'06. 01. 01 ~ '06. 12. 31
만 3세	'05. 01. 01 ~ '05. 12. 31
만 4세	'04. 01. 01 ~ '04. 12. 31
만 5세	'03. 01. 01 ~ '03. 12. 31

□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선정기준 및 지원수준 변동

－ 4인가구를 기준으로 2009년 7월 개편 전후 지원계층별 선정기준액

및 지원수준을 비교하여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냄

	소득하위 50%		소득하위 60%		소득하위 70%	
지원규모 (90만명)	61만명 (만5세 전액지원 14만명 포함)		10만명	10만명	9만명	
개편 후 지원수준	100% 지원		60% 지원	30% 지원		
개편 전후 지원범위 변화	정부지원 1~2층 (100%) 3층 (80%)		4층 (60%)	부모 부담 5층 (30%)		
	기본보육료 (0~2세 정부 미지원시설 이용 영유아 지원)					
4인가구 선정기준 (만원) 변화	159	213	298	427		
	258		339	436		

- 개편 전후 보육료 지원계층은 5층에서 3층으로 조정되었음
 - 지원수준(전액 또는 부분지원 비율)은 개편 전 지원계층에 따라 '100% - 100% - 80% - 60% - 30%'에서 개편 후 '100% - 60% - 30%'로 조정
 - 정부 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영유아의 경우,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음
- 4인 가구 기준으로 전액지원(무상보육) 대상의 선정기준은 개편 전 차상위계층(약 159만원)에서 소득인정액 258만원으로 약 100만원 정도 상향 조정되었음
 - 선정방식 개편의 효과를 함께 고려하지 않을지라도, 이러한 선정 기준 확대는 기존 보육료 지원체계의 3층과 4층 사이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전액지원 대상의 대폭 확대를 의미함

- 부분지원 대상 선정기준 역시 크게 상향 조정됨
 - 기존 보육료 지원체계의 4층에 해당하는 60% 지원계층의 경우, 213~298만원에서 258~339만원으로 선정기준이 약 40만원 정도 상향 조정되었음
 - 정부의 차등보육료 지원 상한선으로 기존 보육료 지원체계 5층에 해당하는 30% 지원계층 선정기준은 298~427만원에서 339~436만원으로 상승함
- 이러한 선정기준의 상향 조정에 따라, 정부지원은 추가적으로 확대(하늘색 부분) 되었으며, 그만큼 영유아가구 부모의 부담은 감소함
-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가구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지원을 받게 되며, 실제 보육료 지원 영유아 규모는 보육시설 이용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009년 지원계층 및 연령별 차등보육료 지원수준

- 전액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정부 지원시설	정부 미지원시설
			지원금액(원)	지원금액(원)
소득인정액 하위 50% 이하	100%	만0세	383,000	733,000
		만1세	337,000	506,000
		만2세	278,000	390,000
		만3세	191,000	191,000
		만4세	172,000	172,000

- 정부 지원시설 :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국공립·법인, 장애아·영아·방과후 전담 시설),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보육시설
- 정부 미지원시설 :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시설(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등)

－ 부분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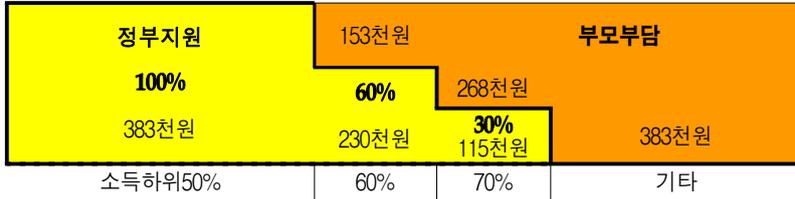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정부 지원시설	정부 미지원시설
			지원금액(원)	지원금액(원)
소득인정액 하위 50~60%	60%	만0세	229,800	579,800
		만1세	202,200	371,200
		만2세	166,800	278,800
		만3세	114,600	114,600
		만4세	103,200	103,200
소득인정액 하위 60~70%	30%	만0세	114,900	464,900
		만1세	101,100	270,100
		만2세	83,400	195,400
		만3세	57,300	57,300
		만4세	51,600	51,600
소득인정액 하위 70% 초과 (기본보육료)	연령별 정액	만0세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기본보육료 미지원	350,000
		만1세		169,000
		만2세		112,000

□ 2009년 지원계층 및 연령별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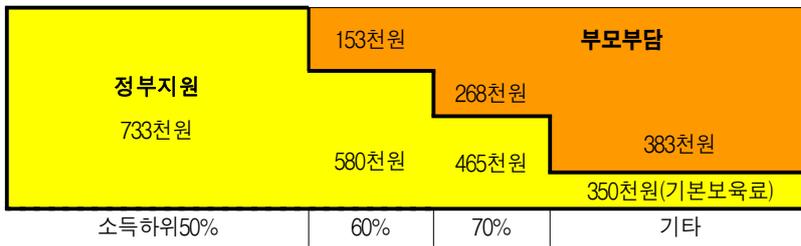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금액(원)
소득인정액 하위 50~60%	40% + 차등보육료 (60%)	만0세	153,200
		만1세	134,800
		만2세	111,200
		만3세	76,400
		만4세	68,800
소득인정액 하위 60~70%	50% + 차등보육료 (30%)	만0세	191,500
		만1세	168,500
		만2세	139,000
		만3세	95,500
		만4세	86,000

□ 2009년 7월 개편 이후 지원계층 및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수준 및 부모부담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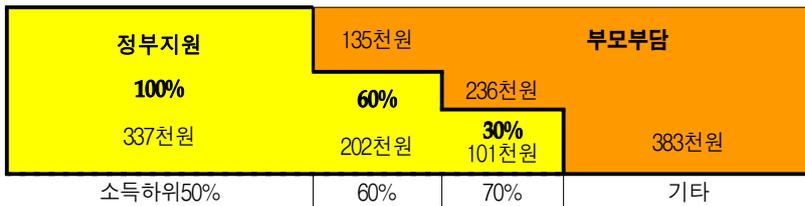
－ 정부 지원시설 이용 0세 영유아 : 38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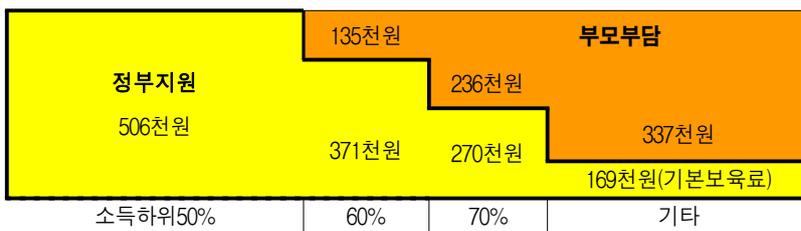
－ 정부 미지원시설 이용 0세 영유아 : 73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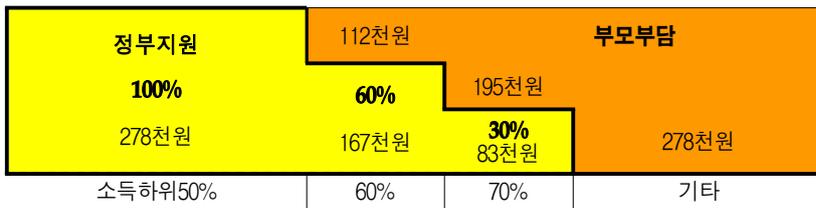
－ 정부 지원시설 이용 1세 영유아 : 337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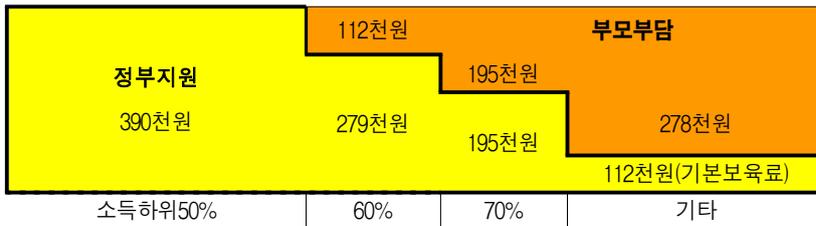
－ 정부 미지원시설 이용 1세 영유아 : 506천원



– 정부 지원시설 이용 2세 영유아 : 27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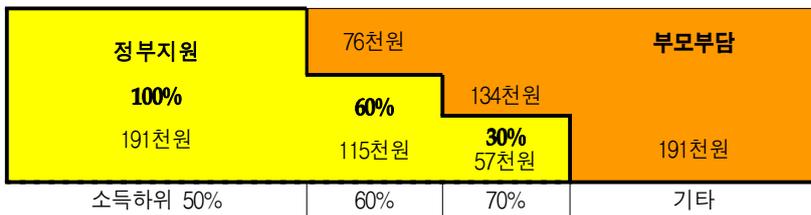


– 정부 미지원시설 이용 2세 영유아 : 390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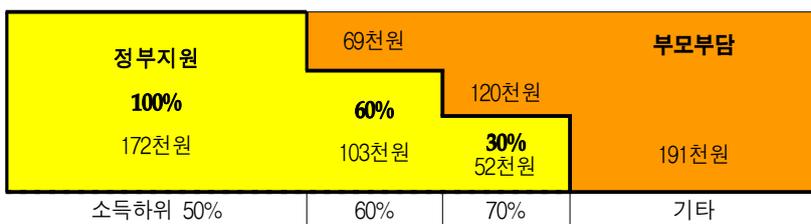


– 3~5세 영유아의 경우 기본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정부 지원시설과 정부 미지원시설 간에 지원수준에 차이가 없음

– 정부지원·미지원시설 이용 3세 영유아 : 191천원



– 정부지원·미지원시설 이용 4세 영유아 : 172천원



- 정부지원·미지원시설 이용 5세 영유아 : 172천원
 - 만 5세아 무상보육료(전액 지원) 제도로 인해 소득인정액 하위 50~70%에서 차등보육료가 적용되지 않음
 -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경계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거나 전혀 지원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음

<p>정부지원 100%</p> <p>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p> <p>172천원</p> <p>소득하위 70%</p>	<p>부모부담</p> <p>172천원</p> <p>기타</p>
---	------------------------------------

제2절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편 및 시행방안

1. 보육료 지원 신청 및 선정 프로세스

□ 보육료 지원 신청

-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보호자 등 양육자가 신청서를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
 -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가구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법정 저소득층 등 기존 1층 지원대상 아동, 차등보육료 지원아동 중 기본보육료 지원아동도 지원을 받을 경우 별도의 신청서 제출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신청자는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장애인 복지카드(필요시)·장애진단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동반아동은 시설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가능(신청 시 시설입소확인서 제출)

-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신청자는 첫째 아동의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 확인서 제출

□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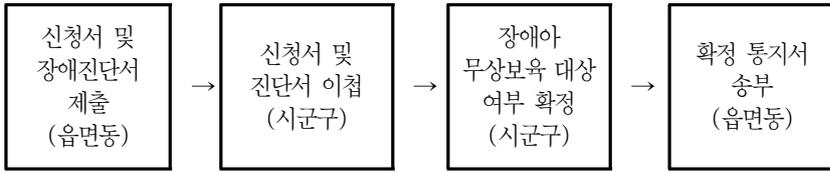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
- 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보육료 환급금 입금 계좌 용)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부
 - 소득 및 재산 조사가 필요 없는 신청자는 제출 생략
- 장애인 복지카드(필요시) 또는 장애진단서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 확인서(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신청)
- 기타 소득·재산조사 시 필요한 증빙서류

□ 보육료 지원대상 결정⁶⁾ 및 통지

- 조사결과는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를 활용하여 작성
- 읍·면·동 보육업무 담당자는 새울행정시스템(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
등록/확정)에 조사결과를 입력한 후 시군구에 보고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신청자, 기본보육료 신청자, 소득인정액
평가 제외 대상자는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는 작성하되 소득 및
재산 조사는 불필요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중 장애진단서 제출자는 시군구에서
진단서상 장애내용을 확인하고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여부 결정
- 시·군·구청장은 보고된 조사결과의 적정성을 검토,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 결정 (결정사항을 새울행정시스템에 즉시 입력)
 - 결정 결과는 해당 읍·면·동에 통보
- 읍·면·동에서는 결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통보

6) 2010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는, 새울행정시스템을 대체하여 최근 구축 중인
2010년 1월부터 개통될 예정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보육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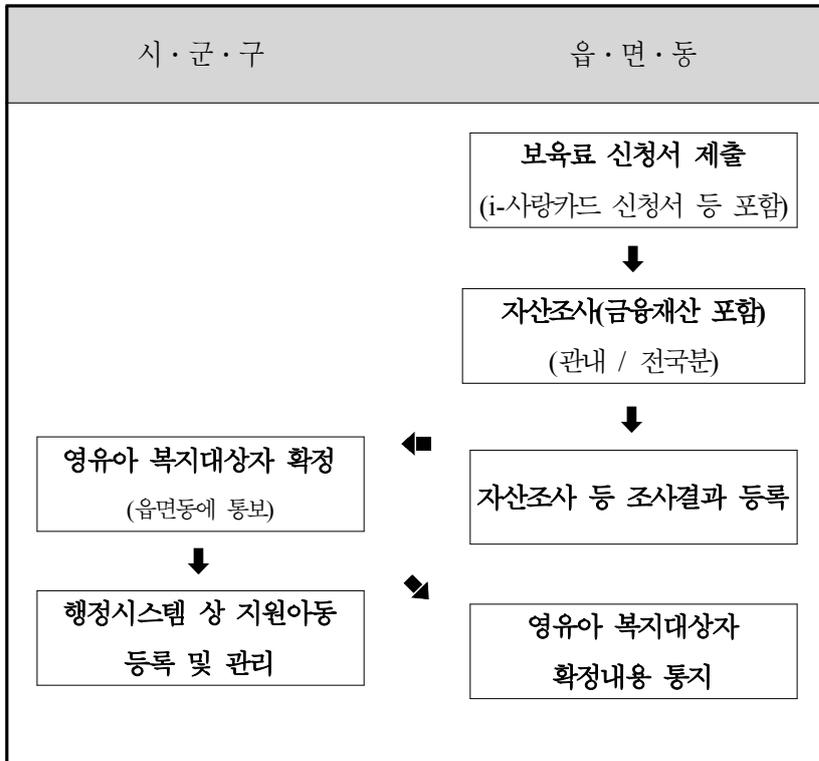
•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탈락자에 대해서도 서면 통지



□ 보육료 지원대상자 사후관리

- 보육료 지원대상자 결정 이후, 지원대상자의 신규 소득 발생, 자산의 취득 등 사실을 인지한 경우 소득인정액 재산정 후 결과 통지
- 보육료 지원신청 당시 실직·무직 등 소득과약이 곤란한 가구명단은 별도 관리하고 주기적인 전산조회를 통해 신규소득 발생여부 확인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 프로세스



2.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 체계

□ 보장단위 : 조사대상 가구원의 범위

범 위	가구원의 범위 해석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및 형제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과 아동의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여 독립세대로 되어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또는 모가 가출·실종 등으로 인해 실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의 소명자료(가출신고서 등)가 명백한 경우 가구원 수에서 제외함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별거하는 부 또는 모는 가구원에서 제외 (비동거 형제자매도 가구원에서 제외) ○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가구원의 범위에 포함 ○ 재혼가정의 경우 상대 배우자의 자녀를 가구원수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혼 관계의 경우 입증이 곤란하므로 가구원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 가정해체로 인해 아동이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부모를 가구원으로 봄(가정해체 사실 여부 확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없이 친인척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의 경우 해당 친인척은 가구원에서 제외

－ 보장단위(조사대상 가구원) 관련 유예기간 운영

- 보육료 지원제도 확대 개편에도 불구하고, 자산조사 대상 가구원 범위 축소(가구원에서 조부모 제외) 등 보장단위의 변경으로 인해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가 보육료 지원대상으로부터 탈락 또는 지원수준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
- 소득 및 재산의 보유수준이 낮은 조부모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가구원수 감소로 선정기준이 낮아져 탈락하거나 지원수준이 감소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2009년 7월 개편이후 2010년 2월까지 해당 조부모 (외조부모)를 포함하여 소득인정액 산정이 가능하도록 함

□ 자산조사 수행 원칙

－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된 자료를 원칙적으로 적용함

- 실사를 최소화하고 공적 행정자료 중심으로 소득 및 재산항목을 조사한 결과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전산자료 미정비나 기준시점 차이 등으로 전산조회 자료가 불확실하여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소득/재산 일부 항목, 생활실태, 동거가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입증자료 통하여 확인

□ 자산조사 제외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의 경우 별도 소득 및 재산조사(금융재산 조회 포함)없이 소득인정액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가구로 책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만 3~5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모·부재(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2호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구의 자녀

□ 소득인정액 개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의 개념
 - 소득인정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은 ‘실제소득’을 의미하며,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종류별 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월 평균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개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 부채 - 기초공제액) + 승용차가액) ×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 / 3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 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일반 사항	
보장단위	(조사대상 가구의 범위) 아동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 소득평가액	
①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보수월액→국세청 종합소득→기타자료 순) • 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금액/12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② 승용차	= 자동차 가액×환산율(100% / 3) (2500cc이상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지 않은 자동차)
일반재산	③ 토지 = 공시지가×지역별 적용율×환산율(4.17% / 3) ④ 주택·건축물 = 공시가격(국토해양부 제공)×시가 보정율(0.9)×환산율(4.17% / 3) ⑤ 전월세보증금 = 보증금×환산율(4.17% / 3) ⑥ 2500cc미만 일반재산 = 자동차가액×환산율(4.17% / 3) ※ 차령6년초과차량·승합차·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분류하여 환산
⑦ 금융재산	= 금융재산 총액 × 환산율(6.26% / 3)
■ 공제	
⑧ 기초공제	대도시 5400만원 / 중소도시 3400만원 / 농어촌 2900만원
⑨ 부채	금융권 부채 전액
■ 소득인정액 산출식	
$= ① +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②$ <p>※ ③~⑦ 재산유형별 합산 후 ⑧과 ⑨를 순차적으로 공제한 후 각 재산유형별 환산율 적용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 ※ 공제는 일반재산→금융재산 순으로 이루어지며, 공제금액>재산가액인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p>	

가. 소득조사

□ 소득항목별 자산조사

-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에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상시근로자 : 전산자료의 우선 활용
 - 전산조회 결과 복수의 공적 행정자료에서 소득이 확인된 경우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②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보수월액 → ③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자료 → ④ 기타 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순으로 적용
- 임시·일용직 근로자
 - 전산조회를 통해 파악이 가능한 경우 상시근로자에 준하여 처리
 - 전산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소득확인서」를 청구하고, 고용주로부터 「고용·임금확인서」를 청구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자영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작물별 경작면적과 해당등급지의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곱하여 계산한 총 수확량에 농산물 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되, 비료대·종묘대·농약비·농기구수리비 등 농업생산에 소요되는 경비 공제
 - 농업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 월소득에 합산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터 등 해당지역 임산물 유통기관 판매기록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소득자료를 파악
 - 어업소득 : 어가가 어업경영의 결과로서 얻은 총수입(수산물의 판매 수입, 자가소비 평가액, 현물지출분 평가액, 재고액 등)에서 동 수입을 획득하는데 소요된 소모적 비용을 차감한 금액
 - 수협이 어기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을 통하여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을 우선적으로 파악
 - 기타 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의 종합소득 자료가 있는 경우 전산조회 결과를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인의 신고소득을 소득으로 반영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부동산 임대소득이 확인된 경우 전산자료 적용
 - 토지, 주택, 건물, 기계 등의 임대로 인해 발생한 월수입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한 신청인 신고를 통해 파악
 - 월세로 임대한 경우 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동시에 부채로도 산정)하고, 월세를 임대소득으로 산정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이자소득이 확인된 경우 전산자료 적용
 - 만기 일괄지급 시 이자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금융재산으로 산정
- 공적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 ①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연금급여 등
 - ②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등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 ④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연금
 - 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연금
 - 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금 및 생계보조금(유자녀 장학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⑦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당
 - ⑧ 국민체육진흥법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체육연금
 - 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보훈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급여의 경우 서울행정시스템을 통해 조회 실시
 - 이외의 각종 급여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의 전직 등을 고려하여 조회대상자를 선별한 후 해당 기관에 직접 조회하거나 본인 확인
- 사적이전소득 및 추정소득 : 2009년 7월 선정방식 개편에 따라 폐지

나. 재산조사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 부채 - 기초공제액) + 승용차가액] ×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 / 3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 부채 공제

- 신청기구에 임대보증금 또는 금융부채가 있는 경우 공제 처리
- 일반재산→금융재산 순으로 적용
-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공제 결과 기초공제액이 남는 경우에도 승용차 재산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 부채의 용도, 목적과 관계없이 금융재산 조회를 통해 조사된 금융기관 부채는 전액 부채로 인정하되, 사채는 불인정
- 신용카드 미납금액,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부채로 인정하지 않음

－ 기초공제액 (공제대상 기본재산액)

- 신청 기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
-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공제 결과 기초공제액이 남는 경우에도 승용차 재산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 가구규모,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지역별로 동일하게 적용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5,400	3,400	2,900

주.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중소도시 : 도의 “시”, 농어촌 : 도의 “군”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기초생활보장제도 환산율의 1/3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소득환산액	월 4.17% / 3	월 6.26% / 3	월100% / 3

□ 재산가액 산정원칙

- 조사일 현재 시점의 공시가격 적용을 원칙으로 함
 - 공시가격이 확인되지 않는 재산은 과세표준액 적용
- 공동소유 형태 중 ‘공유’인 경우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으로 산정, 소유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유자 모두 동일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 재산의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경매 진행 중에 있으므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 가압류,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중증명의 재산을 명의신탁 한 경우
 - 개인명의로의 재산은 명의인의 재산으로 산입
 - 다수인 명의의 재산 중 지분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지분에 따라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나, 지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
 - 중증재산의 매매처분 등을 제한할 목적으로 지분 없이 등기되어 있다고 보아, 중증대표의 확인, 중증회의록 등 입증자료 확인

□ 재산항목별 자산조사

- 일반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로 된 다음 유형의 재산
 - 지방세법에 의한 건축물(제180조제2호) 및 토지(제234조의8)
- 토지(전답·임야), 건축물(주택·건물) 등의 부동산
 - 보유여부 및 소재지의 확인
 - 토지·주택·건물에 관한 전산자료를 우선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각종 토지대장·등기부등본·농지세 부과대장 등 관계공부를 활용
 - 가격산정
 - 토지 :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액을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기’로 나누어 산정

7) 토지가격 적용율(실거래가격 대비 공시지가의 비율)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행정자료

- 주택 :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주택공시가격 적용
 - 건축물 : 시가표준액 적용(가액이 제공되지 않는 재산가액은 물건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 과세표준 담당을 통해 확인)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항공기(제180조제4호 및 제5호)
- 보유여부 확인
 - 전국분 자산조사를 통해 보유여부 확인
 - 시군구의 선적자료(어선원부) 등을 통해서도 소유내역 확인 가능
 - 가격산정
 - 재산세 과표인 시가표준액 적용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등 보증금을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
 -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계약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확인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분실한 경우 통상 시세 기준으로 산정
 - 무상 임차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건축물 소유주에게 확인
-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 가축·종묘·입목 등의 동산은 개별 재산평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만을 조사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
- 보유여부 확인
 - 전국분 자산조사를 통해 보유여부 조사
 - 가격산정
 - ① 「보험개발원」 제공 중고차 시세 → ② 「보험계약서상 차량가액」 → ③ 지방세 과세표준액 순으로 적용
 - 자동차가액 산정의 예외 : 2,000cc 미만 1~3급 장애인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 자동차의 재산종류 구분

일반재산	승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기량 2,500cc미만 차량 ○ 승합차로써 11인승 이상 자동차 ○ 이륜자동차 중 50cc이상 260cc 미만 차량 ○ 화물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 신고된 12톤이상 덤프트럭 포함), 콘크리트 믹서트럭 ○ 특수자동차(견인, 군난용 등) ○ 차령 6년 초과 모든 차량 ○ 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기량 2,500cc이상 차량으로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지 않은 차량 ○ 이륜자동차 중 260cc 이상

○ 골프장·콘도 등 각종 회원권

－ 보유여부 확인 및 가격산정

-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취득세 시가 표준액 적용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

－ 보유여부 확인 및 가격산정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 기존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으로 함(일명 분양가액)
- 분양권 : 신청일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 불입한 금액
- 제출서류 : 분양회사 또는 재건축조합 등과 작성한 계약서 사본,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분양가액 확인서 등

○ 금융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

－ 조사대상 : 신청자와 가구원 명의의 금융재산과 부채⁸⁾

－ 적용기준

- 타인 소유를 주장하더라도 명의인 기준으로 판단하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로 판결받은 경우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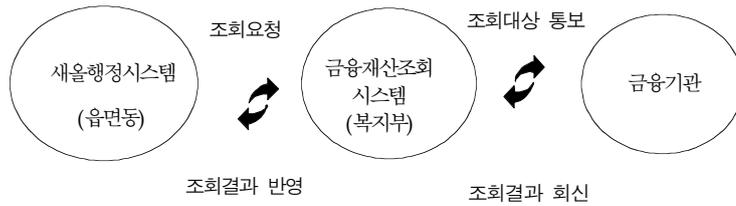
8) 2010년 이후 금융재산은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 시와 연간 2회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조사 실시

－ 명의인 처리의 예외

- 공동명의로 개설 또는 개인 명의로 개설되었으나, 계모임·종친회·마을공동경비·동창회 등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3개월 이상의 거래 내역서, 임원증명서, 회원 확인서, 종친회 회의록, 규정(회칙), 의사록 등을 징구하여 확인

－ 금융재산조회 절차

- 시스템 구성도



- 신청조사 업무 흐름도

단계	업 무 처 리 내 용
1단계 동의서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및 가구원 동의서 등록(읍·면·동) 【신청자→지자체→복지부(DB)】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스캔 등록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금융재산조회 대상자 명단과 스캔 자료 추출
2단계 금융정보제공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제공 요청 - 금융정보 등 제공요구서, 조회대상자 명단, 금융정보제공동의서(전자과일)를 금융재산조회시스템 홈페이지에 수록 【복지부(DB)→금융재산조회시스템→금융기관(금융업협회)】
3단계 금융정보 회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대상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정보통신망으로 통보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금융정보제공 자료 오류 검증 작업 ○ 금융기관은 통보대상자인 경우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 【금융기관→금융재산조회시스템→복지부(DB)】
4단계 금융정보 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대상자 금융정보를 새울행정시스템으로 시군구, 읍면동에 배부 - 시군구, 읍면동에서 금융재산 확인 및 반영 【복지부(DB)→주민행정시스템→복지부(DB)→시군구, 읍면동】

－ 조사범위 및 산정기준

- 요구불예금(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 저축성 예금(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 잔액 또는 총 불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연금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기타 연금으로 수령 가능한 신탁상품(퇴직연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연금지급 개시 전에는 잔액을 금융재산으로 산정하고, 연금지급 개시 후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산정
-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각종 보험상품(「보험업법」 제4조제1항)

－ 금융부채(신용정보)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등 조회 시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대출내역 확인 가능, 개인명의로 받은 ‘개인대출’만 인정, 기업대출은 인정되지 않음
- 담보대출, 신용대출, 약관대출 등은 부채로 산정
- 저당권이나 질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3.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주요 개편사항

- 기본방향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 체계 간소화·합리화
- －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산조사 체계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그대로 준용함에 따라 발생했던 신청 영유아 가구의 제출서류 과다,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산조사 업무부담 증가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산조사 대상 가구원의 범위를 의미하는 보장단위와 소득인정액 개념을 구성하는 다양한 소득 및 재산항목별 포함여부, 조사원칙 및 프로세스 개선

□ 선정방식 개편의 기대효과

－ 영유아 가구

- 기존에 제출하던 급여명세서, 매출액 자료, 자동차 보험증서 등 각종 소득·재산 증명을 자료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신청률 제고
- 단,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과약 인프라 상, 공적 행정자료가 없는 임대차계약서, 일용근로자 소득신고서 등의 경우 제출 필요

－ 일선 보육업무 담당 사회복지직공무원

-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적용원칙으로 소득 및 재산조사 표준화 및 자동화를 통한 자산조사 업무 부담 최소화
- 자동차 배기량 기준 완화, 사적이전소득과 추정소득 폐지 등으로 그 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어 민원을 발생시켰던 선정기준의 합리화로 민원 감소 및 관련 업무부담 완화

□ 주요 개편사항

- － 보장단위(자산조사 대상 가구원의 범위) 개편
- －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 －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소득 및 재산항목별 조사
- － 금융재산 및 부채에 대한 공적 행정자료 조회 실시
- － 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재산유형 분류기준 완화
- － 사적이전소득 및 추정소득 폐지

□ 보장단위 개편 : 조사대상 가구원의 범위에서 조부모 제외

- － (기존) 조사대상 가구원의 범위를 지원대상 영유아 기준 2촌 이내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로 규정함으로써, 조부모가 포함되어 소득 및 재산 보유사항이 반영됨
- － (문제점) 조부모의 동거사실 확인이 불가능함에 따라 조부모의 자산 보유 현황과 가구원수 증감 시 유·불리에 따라 편법으로 가구원의 범위를 설정하여 보육료 지원대상으로 선정
- － 보장단위로 인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 및 탈락 관련 불합리한 사례

- ① 조부모의 주민등록 이전으로 가구원수를 증가시켜 보다 높은 선정기준을 적용 받는 가구
 - ②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거주 시 동일주택에 거주하나 자산을 보유한 조부모를 별도 세대로 구성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
 - ③ 실직, 폐업 등으로 조부모와 동거 시 조부모가 보유한 소득 및 재산에 의해 보육료 지원대상 탈락되는 경우 발생
- (개선) 보장단위에서 조부모 제외
- 소득 및 재산조사 대상에서 조부모를 제외하여 영유아와 부모를 중심으로 보장단위를 축소하고, 이를 통한 자산조사 대상 감소로 자산조사 업무 간소화 및 보편적 보육료 지원제도 지향
 - 조부모의 자산조사 대상 제외로 인한 가구원수 감소(선정기준의 하향)의 요인으로 탈락되는 가구 대상으로 유예기간 적용('10.2월)
-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가구는 최소 3~4종부터 많은 경우 7~8종에 이르는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음
- (개선) 전산으로 조회 가능한 공적 행정자료를 중심으로 자산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영유아 가구의 제출서류를 최소화
-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소득 및 재산항목별 조사 실시
- 근로소득
- (기존)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자료 등 제출
 - (개선) ① 건강보험 표준보수월액 → ② 국민연금 보수월액 → ③ 국세청 종합소득 순서로 공적 행정자료 중심으로 적용
 - 일용근로자 중 공적 행정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현행과 같이 고용·임금확인서 등으로 사용
- 사업소득
- (기존) 매출액 자료 등 증빙서류 제출 및 반영
 - (개선) 국세청 종합소득 중심의 공적 행정자료 반영
- 주택·건물 재산가액 : (기존) 시가 적용 ⇒ (개선) 공시가격 적용

－ 자동차

- (기존) 보험계약서 제출 및 보험계약서 상 자동차가액 적용
- (개선) 보험개발원 공적 행정자료 중심으로 적용

□ 금융재산 및 부채에 대한 조회 실시

- － (기존) 금융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지 않고 신청기구의 신고자료에 의존
- － (개선) 보육료 지원 신청기구로부터 금융재산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금융기관에 조회함으로써 정확한 금융재산 및 부채 반영
 - 영유아보육법 개정('08.12)을 통해 근거 마련

□ 자동차 배기량 기준 완화 및 환산방식 개선

- － (기존) 자동차의 일반재산 및 승용차 분류기준인 배기량 2000cc를 경계로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에 있어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하여 각종 민원과 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보편적 보육료 지원제도를 지향한다는 정책의 취지를 훼손

- 배기량 2000cc 이상 : 차량가액 × 100% / 3
- 배기량 2000cc 미만 : 차량가액 × 4.17% / 3

- － (개선) 배기량 기준을 2500cc로 완화하고, 다자녀(자녀수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배기량 기준 미적용

- 보편적 보육료 지원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동차 기준 완화
- 전체 영유아 가구 중 자동차 보유비율 : 85%
- 전체 영유아 가구 중 2500cc이상 자동차 보유비율 : 13%

□ 사적이전소득 및 추정소득 폐지

- － 사실확인 곤란으로 적용의 실효성이 미흡했던 사적이전소득 및 추정소득은 소득평가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
- － 특히, 전업주부가 포함된 소득과약 곤란자에 대하여 추정소득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했던 민원 및 자산조사 부담 개선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주요 개편사항 (요약)

항 목	현 행	변 경	사 유
조사대상 가구원 범위 (보장단위)	영유아 기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영유아 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 조부모 동거사실 확인불가에 따른 편법 성행 - 아동양육의 책임을 부모로 한정
소득 및 재산조사 원칙 및 조사방법	· 근로소득 : 소득증명서류 제출 · 사업소득 : 매출액 증명자료 제출	· 근로소득 : 건강보험보수월액 → 국민연금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 → 기타자료 순으로 적용 · 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사용	- 소득증명서류 제출 없이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조사수행 - 복수의 행정자료 존재 시 적용 우선순위 사전 설정으로 혼란 해소
사적이전 소득	적용	폐지(제외)	- 실질적인 확인 곤란으로 자산조사 항목에서 제외
추정소득	적용	폐지(제외)	- 전업주부 등 추정소득에 대한 각종 민원 발생 - 정확한 추정소득 계산 근거 미흡
자동차 재산유형 분류기준 및 소득환산 방식	- 2000cc미만 환산율 : 4.17%/3 - 2000cc이상 환산율 : 100%/3	- 2500cc미만 환산율 : 4.17%/3 - 2500cc이상 환산율 : 100%/3 - 3자녀 이상가구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분류	- 자동차의 일반재산 /승용차 분류기준인 배기량 2000cc를 경계로 적용되는 소득환산율 관련 각종 민원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보편적 보육료 지원제도 지향의 정책취지와 목표를 반영하여 기준 완화
부동산 재산가액 산정방식	주택·건축물 => 시가 파악 후 적용	주택·건축물 =>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적용	- 재산가액 평가기준 및 확인절차 간소화
금융재산 및 부채 조회 실시여부	금융재산 및 부채 조회 미실시 신고자료 반영	실시	- 정확한 금융재산 및 부채 조회결과의 반영으로 대상 선정의 형평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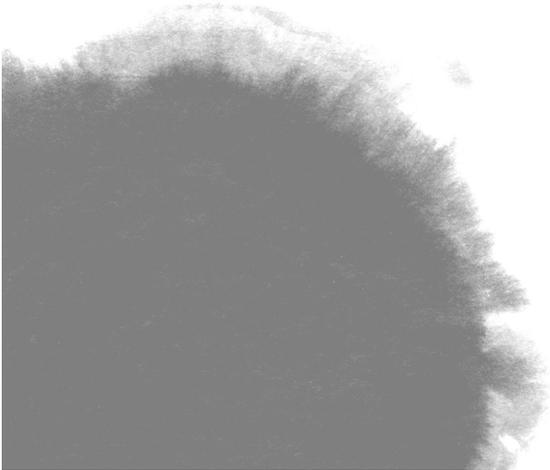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편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일반 사항	
보장단위	(조사대상 가구의 범위) 아동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①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보수월액 → 국세청 종합소득 → 기타자료 순) • 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금액/12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② 승용차	= 자동차 가액×환산율(100% / 3) (2500cc이상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지 않은 자동차)
일반재산	③ 토지 = 공시지가×지역별 적용율×환산율(4.17% / 3) ④ 주택·건축물 = 공시가격(국토해양부 제공)×시가 보정율(0.9)×환산율(4.17% / 3) ⑤ 전월세보증금 = 보증금×환산율(4.17% / 3) ⑥ 2500cc미만 일반재산 = 자동차가액×환산율(4.17% / 3) ※ 차령6년초과차량·승합차·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분류하여 환산
⑦ 금융재산	= 금융재산 총액 × 환산율(6.26% / 3)
■ 공제	
⑧ 기초공제	대도시 5400만원 / 중소도시 3400만원 / 농어촌 2900만원
⑨ 부채	금융권 부채 전액
■ 소득인정액 산출식	
$= ① +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②$ <p>※ ③~⑦ 재산유형별 환산 후 ⑧과 ⑨를 순차적으로 공제한 후 각 재산유형별 환산율 적용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 ※ 공제는 일반재산→금융재산 순으로 이루어지며, 공제금액>재산가액인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p>	

□ 향후 추진과제

- 매년 2월경 반복되는 기존 및 신규 보육료 지원대상의 집중 신청에 따른 일시적인 자산조사 및 선정 관련 업무 급증의 문제는, 그 동안 구축되어 2010년 초 개통될 예정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하여 구조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보육료 지원체계 관련 정책과제 : 보육료 지원체계 통합 및 맞벌이가구 등 보육료 지원 확대



제6장

보육료 지원체계 관련 정책과제

: 보육료 지원체계 통합 및 맞벌이가구 등 보육료 지원 확대

1. 보육료 지원체계 통합 조정 및 선정기준 재조정

- 현행 차등보육료 지원,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 등으로 구성된 복잡한 보육료 지원체계를 단일 보육료 지원체계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0~4세 영유아에 해당하는 차등보육료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 출생 순서에 상관없이 본 연구에서 도출한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계층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음
 -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70%가 지원대상 선정기준 상한이며, 전액 지원대상인 하위 50% 이하 가구의 영유아는 정부지원 기준단가 전액을, 하위 50~60%에 해당하는 가구의 영유아는 60%, 하위 60~70% 가구의 영유아는 30% 지원
 - 또한, 0~2세이면서 정부 미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 정부 지원시설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기본보육료 부분을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받고 있음
- 둘째 이상 영유아에 대해서는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체계에 의해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하나의 틀에서 통합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두 가지 제도로 운영함에 따라 정책 수요자인 영유아 가구가 이해하기 어렵고 운영 상 불편함 존재

- 차등보육료에 의해 부분 지원을 받는 소득인정액 하위 50~70%인 영유아 가구의 출생 순서에 따라 두 번째 이상 아동이 지원대상임
 - 그러나, 두 번째 이상 영유아가 무조건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제한 조건으로 인해, 보육료 지원 신청과정에서 증빙서류 제출로 인한 불편함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존재
 - 특히,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제도는 차등보육료를 고려하여 지원 수준이 결정되므로 사실상 두 제도로부터 각각 지원받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적인 지원수준을 판단해야 하므로, 개별 제도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
 - 소득인정액 하위 50~60% 이하로 차등보육료 60%를 지원받는 가구의 영유아는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으로부터 40%를 추가지원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액 지원을 받게 되며, 차등보육료에서 30%를 지원받는 하위 60~70%의 영유아는 50%를 추가지원 받아 결과적으로 80%의 지원을 받는 것과 동일함
- 한편, 만 5세 영유아의 경우에는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제도에 의해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인 가구의 모든 영유아가 전액 지원대상임
- 만 5세인 경우 차등보육료 지원제도와 상관없이 하위 70%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정부로부터 전액 지원을 받거나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이미 각 제도가 소득인정액 분위에 따라 가구규모별로 동일한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만 명목과 유형을 구분함
- 차등보육료 지원과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제도의 경우 지원수준에 있어 분리 구성되어 있어, 두 자녀 보육료 지원제도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살펴볼 경우, 소득인정액 수준이 높은 하위 60~70% 계층에 대해서 오히려 지원수준이 더 높은 역진적 구조(하위 50~60% 가구 : 보육료의 40% 지원 / 하위 60~70% 가구 : 보육료의 50% 지원)로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수요자의 이해와 신청 등 편의성 제고, 제도 운영 및 예산구조 간소화 등을 위해 현행 차등보육료, 기본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만 5세 무상보육료 등 개별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제도를 하나의 통합 보육료 지원체제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통합 보육료 지원체제로의 개선방향

- 각 지원유형에 따른 지원계층별 최종적인 지원수준을 기준으로 단일 보육료 지원체제로 통합 필요
 - 세 가지 전혀 다른 보육료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보육료 지원체계를 단일 체계로 통합하여 수요자인 영유아 부모의 이해를 제고하고 연령 및 출생순위에 따라 정부 보육료 지원수준과 부모의 부담비율을 각각 구성하여 체계화해야 함
 - 하나의 보육료 지원체계로부터 외국의 아동수당 등에서 활용되는 연령 및 출생순위 또는 장애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보육시설의 유형(정부 지원시설, 정부 미지원시설)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 분위에 따라 몇 %의 보육료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 몇 %를 부모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지 간단명료하게 재구조화하여 운영해야 함
- ‘차등보육료’란 용어 대신 ‘영유아 보육료 지원제도’로 통합 사용
- 운영방식
 - 현행 차등보육료 지원을 위한 가구규모별 선정기준액과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지원계층을 우선 구분
 - 자녀의 연령 또는 출생 순위, 장애여부 등에 따라 전액 지원 및 이용시설 유형에 따른 정부 지원비율 등 지원수준 최종 결정

- 이를 통해, 보육료 지원체계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고, 정부의 보육료 지원정책 확대 기조에 대한 체감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러한 과정에서 두 자녀 보육료 지원제도의 경우,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폐지하고, 지원수준도 만 5세 무상보육료 지원제도와 같이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인 영유아가구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는 방향을 확대해야 함

- 이를 통해,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모든 만 5세 영유아’와 ‘연령에 상관없이 출생순위가 두 번째 이상인 모든 영유아’는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일 경우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게 되는 지원체계로 구조화가 가능함

- 한편, 출생순위가 첫 번째인 0~4세의 영유아만이 현행과 같이 소득인정액 하위 50%, 50~60%, 60~70%의 구조로 지원계층에 따라 보육료를 일정한 비율로 지원받는 구조가 됨

- 향후, 보육료 지원대상의 단계적 확대 추진 시, 우선적으로 0~4세 영유아의 전액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소득인정액 하위 70%까지 확대하여 연령별, 출생순위별 무상보육료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이를 다시 하위 80% 또는 80% 이상의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 이후에는 이미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영유아는 기존과 같이 매년 2월경 다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지 않도록 신청 및 선정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해야 함

- 기 신청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새로운 선정기준과 업데이트 된 소득 및 재산 변동 상황을 사전에 적용하여 보육료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까지 자동 판정하여 영유아 부모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함

2. 2010년 이후 선정기준 조정 및 보정 관련 필요성

□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편 이후 보완해야 할 사항

- 2009년 7월 개편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방식을 준용했던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의 소득인정액 개념 및 선정방식을 공적 행정자료 중심으로 전환
- 선정기준 도출 과정에서 이와 같은 소득인정액 개념 및 선정방식의 개편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DB로부터 공적 행정자료를 중심으로 전체 영유아 가구 DB를 구축하였음
- 그러나, 사전에 DB에 구축 가능한 소득 및 재산항목 중심으로 구성되어, 실제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 및 소득인정액 산정 시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소득 및 재산항목 중 DB에서 고려될 수 없음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편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에 따른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출 시 포함 예정인 소득 및 재산항목 중,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외한 공적이전소득(산재보험급여, 보훈연금 등)과 신청 시 동의서 제출이 필요한 금융재산, 임차보증금, 회원권 등 기타 재산, 자동차가액, 부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향후 선정기준 조정을 위한 모의분석 시 누락된 소득 및 재산항목(각종 공적이전소득, 금융재산, 부채, 전월세보증금 등)에 대한 보정여부 및 방법이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며,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선정기준을 조정해야 함
- 예를 들면, 주요 항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정여부 및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음
 - 향후, 금융재산 및 부채, 공적이전소득, 전월세 보증금 등 각종 누락 항목에 대해서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및 가계동향조사,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복지패널조사 등을 활용하거나, 향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내에서 관리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수급가구의 정

보를 활용하여 영유아 가구의 금융재산 평균 또는 중위 수준을 반영하여 보장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 보장방법으로는 전체 영유아 가구의 평균(중위값), 전체 영유아 가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50~70% 또는 70% 전후의 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평균(중위값) 등을 통해 보장하는 방을 적용하여 가구규모별 선정기준을 재조정 할 수 있음

3. 보육료 전액지원(무상보육료) 대상 단계적 확대

□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및 선정방식 개편에 따라, 보육료 지원체계는 보건복지부 내에서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보편적 제도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위상을 제고함

- 그러나, 현행 전액 지원대상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하위 50%는 2010년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80% 수준까지 확대되어야 함
- 이를 통해, 소득인정액 상위 20%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제외한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해당하는 모든 영유아는 정부 지원시설 또는 정부 미지원시설 중 어떠한 유형의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더라도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보육료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 추진

- (2010년) 보육료 지원체계 통합 검토 및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 하위 70%까지 확대(영유아 두 명 이상 보육시설 이용 조건을 폐지하고, 출생순위 두 번째 이상 영유아가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 지원)
 -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 선정기준(소득인정액 하위 50%)과 동일한 수준으로 0~2세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확대
- (2011년) 보육료 지원체계 통합 실시, 0~4세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 하위 60%로 확대 및 부분 지원대상(하위 60~70%)에 대

한 보육료 지원비율 60%로 확대

-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 선정기준(소득인정액 하위 60%)과 동일한 수준으로 0~3세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확대
- (2012년) 0~4세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 하위 70% 확대
 - 연령 및 출생순위에 따른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수준 차이 없이 모든 0~5세 영유아 대상 단일한 체계로 전환 완료
 -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 선정기준(소득인정액 하위 70%)과 동일한 수준으로 0~4세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확대
- (2013년) 0~5세 전액 지원대상 80% 확대
 -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 선정기준(소득인정액 하위 80%)과 동일한 수준으로 0~5세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확대
 - 출생순위 두 번째 이상인 경우 소득인정액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에 대하여 무상보육 실시
- 2009년 7월 개편 기준에 따른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관련 소득인정액 하위 80% 선정기준

50%	3	4	5	6
소득인정액	2,236,078	2,582,000	2,886,764	3,162,291
60%	3	4	5	6
소득인정액	2,937,558	3,392,000	3,792,371	4,154,335
70%	3	4	5	6
소득인정액	3,777,603	4,362,000	4,876,864	5,342,337
80%	3	4	5	6
소득인정액	4,967,522	5,736,000	6,413,043	7,025,137
90%	3	4	5	6
소득인정액	7,080,624	8,176,000	9,141,046	10,013,514

- 선정기준(안) 도출 시 RT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등 동일 방식으로 도출한 소득인정액 하위 80%의 선정기준은 4인 가구의 경우 약 574만원에 이릅니다

□ 다음으로, 2010년 이후 보육료 지원대상의 단계적 확대에 따른 보육료 지원 영유아 및 예산규모 변화에 대한 모의분석 결과를 살펴봄

– 2010년 보육료 지원단가는 2009년 대비 3% 증가하고, 보육시설 이용률은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함

○ RT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한 최종 선정기준에 따른 모의적용 결과

구분		보육료 전액지원 영유아	보육료 전액 및 부분지원 영유아	연간 소요예산 국고기준(48%) (6개월)
2009년 7월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편(안) 적용		52만 4천명	83만 5천명	1조 2,222억원 (6,111억원)
자동차 배기량 기준 완화	'09 지원단가 기준	59만 3천명	92만 2천명	1조 3,275억원 (6,638억원)
	'10 지원단가 기준	59만 3천명	92만 2천명	1조 3,730억원 (6,865억원)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0~60% 60~70% 70~80% & '10 지원단가 기준	70만 6천명	103만명	1조 5,352억원 (7,676억원)
	0~80% 전액지원 & '10 지원단가 기준	89만명	103만명	1조 6,903억원 (8,456억원)

– 자동차 배기량 기준 완화

- 2009년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편 시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였다면, 전액 지원대상 영유아 약 6만 9천명을 포함하여 총 8만 7천명의 영유아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른 2009년 하반기 추가 소요예산은 약 527

- 억원(당초 6,111억원에서 6,638억원으로 8.6% 증가)으로 나타남
- 그러나,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2010년부터 폐지한다면, 2010년 보육료 지원단가를 적용하게 되므로 6개월 기준 약 6,865억으로 약 754억원(12.3%) 증가되어야 함
- － 보육료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 및 전액 지원대상 80% 확대 시 모의 분석 결과
- 다음으로, 2010년 지원단가 기준으로 앞서 자동차 배기량이 완전 폐지된 상황에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추가 확대되어 전액 지원대상을 하위 60% 이하로, 부분 지원대상을 각각 하위 70%와 80% 수준으로 10%p만 조정되었을 경우와 전액 지원대상을 하위 80%까지 확대할 경우를 각각 모의분석함
 - 그 결과, 전액 지원대상은 약 70만 6천명으로 11만 3천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부분 지원대상자를 포함할 경우 10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연간 기준으로 전체 소요예산은 약 11.8%(1,622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전액지원 대상을 소득인정액 하위 80% 이하로 확대할 경우에는 2009년 7월 개편 이후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체계를 기준으로 약 23.1%(3,173억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모의분석 결과는 보육시설 이용률의 증감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록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 증가 폭은 더욱 커질 수 있음

4.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체계 확대

- 2009년 개편 이후 지속적으로 검토 및 추진되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보육서비스 및 보육료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가 큰 맞벌이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임

-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방안으로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부부의 근로소득 중 다양한 방식으로 일정비율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했을 때 해당 가구의 소득 분위가 하향 이동하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게 됨
 - 이를 통해, 가구규모에 따른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실질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와 보육료 지원이 더욱 필요한 맞벌이가구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의 EITC와 같이 근로소득공제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맞벌이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선정기준 등 보육료 지원체계를 별도로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 부모의 근로활동 형태(홀벌이/맞벌이)에 따라 별도 도출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 보육료 지원대상 계층별 맞벌이가구 현황 (근로 및 사업소득 기준)

보육료 지원계층 구분	근로소득 없음	홀벌이 (배우자)	홀벌이 (세대주)	맞벌이	합계 (N=2,006,234)
전체	27.4%	6.4%	49.5%	16.7%	100.0%
하위 80~100%	1.8%	3.1%	50.5%	44.5%	100.0%
하위 70~80%	1.8%	4.2%	66.0%	28.0%	100.0%
하위 60~70%	2.3%	5.8%	71.9%	20.0%	100.0%
하위 50~60%	3.1%	7.6%	75.1%	14.3%	100.0%
하위 0~50%	52.3%	8.0%	36.3%	3.4%	100.0%

- 영유아 및 부모를 중심으로 구축된 분석 DB 기준으로 전체 영유아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약 33만 가구(약 16.7%)로 나타남
 - 세대주를 중심으로 한 홑벌이 가구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홑벌이 가구는 6.4%로 나타났음
- 특히,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소득인정액 분위가 높아져 상위층으로 갈수록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음
 - 이미 전액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하위 50% 이하 가구의 경우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3.4%에 불과한 반면, 소득인정액 수준이 높고 맞벌이 가구 확대 지원의 주요 정책대상이 될 수 있는 하위 80~100%, 하위 70~80%, 하위 60~70%의 영유아 가구의 경우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각각 44.5%, 28.0%, 20%로 높았음

□ 공제대상의 근로소득의 범위

- 맞벌이가구 해당여부 및 근로소득공제 적용대상 근로소득의 범위를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맞벌이가구 여부 및 근로소득공제 대상으로 설정함
 - 그러나, 사업소득 관련 소득과약 정도 및 공적 행정자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소득을 배제하고 (임금)근로소득만을 근로소득공제의 대상으로 적용할 수도 있음

□ 근로소득공제 적용을 통한 맞벌이가구 확대 지원방안

- (1안)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맞벌이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출 시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 중에 소득이 낮은 사람(2차 소득자)의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안
 - 맞벌이가구 내에서도 부부의 소득구성에 따라 공제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2차 소득자의 소득수준이 높은 비중을 차지할수록 유리함

- 2차 소득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에서 30~70%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모의분석함
- (2안) 맞벌이 부부의 합산 근로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안
 - 부부의 근로소득 합산 총액에 따라 공제수준이 결정됨
- 부부합산 근로 및 사업소득의 12.5%~25%까지 공제하는 방안에 대
한 모의분석을 실시함

□ 맞벌이가구 대상 근로소득공제 도입에 의한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보육료 지원 영유아 및 예산규모 변화 모의분석

구분		보육료 전액지원 영유아	보육료 전액 및 부분지원 영유아	연간 소요예산 국고기준(48%)
2009년 7월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편(안)		52만 4천명	83만 5천명	1조 2,222억원
자동차 배가량 기준 완화 (10 자원년까 기준)		59만 3천명	92만 2천명	1조 3,730억원
(1안) 2차 소득자의 근로소득 일정비율 공제방식	30% 공제	59만 7천명	93만 1천명	1조 3,825억원 (+95억원)
	40% 공제	59만 9천명	93만 5천명	1조 3,864억원 (+134억원)
	50% 공제	60만 1천명	93만 9천명	1조 3,907억원 (+177억원)
	60% 공제	60만 3천명	94만 3천명	1조 3,956억원 (+226억원)
	70% 공제	60만 6천명	94만 8천명	1조 4,011억원 (+281억원)
(2안) 부부합산 근로소득 일정비율 공제방식	12.5% 공제	59만 9천명	93만 4천명	1조 3,861억원 (+131억원)
	25% 공제	60만 8천명	94만 8천명	1조 4,031억원 (+301억원)

- 앞서, 2010년 이후 보육료 지원대상의 단계적 확대에 따른 보육료 지원 영유아 및 예산규모 변화에 대한 모의분석과 동일하게 2010년 보육료 지원단가는 2009년 대비 3% 증가하고, 보육시설 이용률은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RT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한 선정기준에 따라 모의분석을 실시함
- 먼저, 2차 소득자(낮은 소득)의 근로 및 사업소득을 대상으로 30~70%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모의분석한 결과를 살펴봄
- 2010년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앞서 자동차 배기량이 완화된 상황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 근로소득공제로 인한 지원대상 영유아 규모 및 예산규모 변화를 살펴봄
 - 먼저, 2차 소득자를 대상으로 최소 30% ~ 최대 70%까지 공제한 경우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액 지원대상의 규모는 59만 7천명 ~ 60만 6천명으로 공제율에 따라 최소 3천명 ~ 최대 1만 3천명까지 추가로 지원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분지원 대상으로 포함한 전체 보육료 지원대상 규모 역시 맞벌이가구 근로소득공제 적용에 따라 모형별로 최소 93만 1천명 ~ 94만 8천명까지 약 9천명 ~ 2만 6천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보육료 지원예산은 근로소득공제 수준 30~70%에 따라 국고를 기준으로 연간 최소 95억원 ~ 최대 281억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음으로, 부부합산 근로 및 사업소득의 12.5% ~ 25%까지 공제하는 방안에 대한 모의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부부합산 근로소득에 대하여 12.5%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경우, 맞벌이가구의 부부합산 근로 및 사업소득 평균은 5,262천원이었으며, 이로 인한 근로소득공제액 평균은 658천원임
 - 근로소득공제 적용 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의 규모는 약 6천명 정도 증가하고, 부분지원 대상을 포함할 경우 1만 2천명의 맞벌이가구 영유아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른 예산규모는 근로소득공제 적용 전에 비해 약 131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부부합산 근로소득공제 12.5% 적용은 앞서 살펴본 2차 소득자에 대해 40%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옴
- 다음으로 부부합산 근로소득공제 25%를 적용할 경우, 맞벌이가구의 부부합산 근로 및 사업소득 평균은 동일하게 5,262천원이나, 근로소득공제액 평균은 1,315천원으로 2배로 증가하였음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의 규모는 적용 전보다 약 1만 5천명 정도 증가하였으며, 부분지원 대상을 포함한 전체 지원대상 영유아의 규모는 약 2만 6천명 증가함
-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로 인한 예산규모는 근로소득공제 적용 전에 비해 약 301억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됨
- 부부합산 근로소득 25% 공제모형은 앞서 살펴본 2차 소득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70% 공제를 적용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 대상 영유아 및 예산규모 증가를 가져옴

□ 결론적으로, 부부합산 근로소득공제 방식이 2차 소득자에 대한 공제방식보다 맞벌이가구 지원 확대에 있어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 2차 소득자(부부 중 낮은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더라도 영유아의 부모 간의 소득구성 상태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근로소득공제의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임
- 다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과약, 일시적인 근로활동에 의한 맞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편법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도입 초기 2차 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방식을 시행한 후 부부합산 근로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 또한, 공적 행정자료에 의한 선정과정에서 사업소득 자료의 신뢰성 및 수용성, 이로 인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시행 초기에 근로소득공제의 범위를 근로 및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제한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 및 근로소득공제 대상 소득을 향후 개통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상의 공적 행정자료를 기준으로 영유아의 부모 모두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와 2차 소득자(낮은 소득)의 근로소득으로 제한할 수 있음

참고문헌

김환준, 「국제비교연구를 위한 빈곤측정상 쟁점과 이에 따른 국가간 빈곤의 편차」, 『사회복지연구』, 제19호 봄, 2002, pp.71~102.

Anthony B. Atkinson, Lee Rainwater, Timothy M. Smeeding, 1996,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OECD.

Jean-Marc Burniaux, Michael F. Foster, Howard Oxley 외, 1998,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selected OECD Country,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 No.189, OECD.

Michael F. Foster, 2000, Trends and Driving Factors in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the OECD Area, Labo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 No.42, OECD.